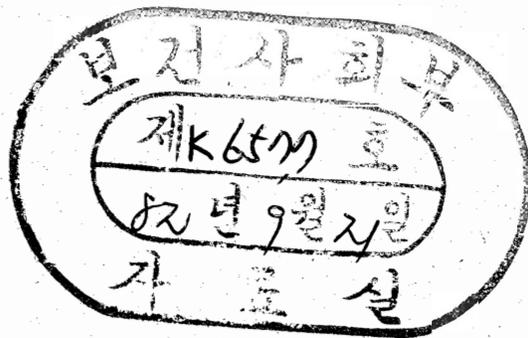


MA
3rd. / P
W
1971

養老年金基礎調查研究

1973



730
2018
바우어
2121330

社会保障審議 委員長 貴下

1972年 6月 1일부터 同年 12月 31일까지 100人以上

常備事業場 및 勤勞者를 対象으로 無作為로 標本推出된 100個

事業場과 2,000名의 勤勞者를 中心으로 調査研究한 「養老年金

基礎 調査研究」 結果를 別添과 같이 報告 하나이다。

1973年 月 日

社会保障審議委員會

研究委員 閱 載 成

参 事 李 晚 求

不請一鳴驚人

這是一篇關於...

...

...

...

...

...

...

머 리 말

아무리 強忍한 意志를 가지고 있는 人間이라도 個人의 社会生活에는 予期치 못하는 여러가지 危險 (Risk) 에 恒常 直面하게 된다.

젊은 勤勞者가 自身과 家族을 爲한 充分한 貯蓄을 하기도 前에 어떤 災害로 因하여 完全 永久的인 勤勞不能이 될 수도 있으며 어떤 勤勞者는 生活中 浪費로 因하여 老齡이나 其他의 危險에 対処할 수 없는 困窮을 自招할 수도 있다.

1942年 英國의 William Beveridge는 그의 報告書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 Report」를 發表하면서 社会保障이란 失業 疾病 災害에 依한 所得中斷時 그리고 老齡 退職이나 勤勞者의 死亡으로 因한 永久的 所得喪失時 또는 出產, 葬祭等 其他의 例外的 支出이 必要로 할 때를 對備한 「一定所得의 保障」을 意味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一定所得의 保障」이란 實質的으로는 「國民生活의 最低生活」을 意味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最低生活은 그 나라의 社会·經濟的인 最少限의 「所得保障」을 指稱하게 되며 이 目的을 爲하여는 制度的인 社会保障制度 樹立이 先行 되어야 한다.

社会保障의 領域은 그 나라의 歷史的 文化的 或은 政治 經濟

社会的 諸特徵에 따라서 各기다른 形態로 發展하게 되나 大部分의 國家는 制度的으로 社會保障 (Social Insurance) 과 公的扶助 (Social Assistance) 그리고 社會福祉 (Social Service) 로 区分하며, 長期的 預防的 政策의 一環으로의 社會保險은 그 中에서도 主要한 位置를 占하고 있다.

이 調查研究報告書는 社會保障의 主要 9個危險 (老齡, 廢疾, 死亡, 疾病, 負傷, 出生, 産業災害, 失業, 扶養家族) 의 大部分을 包括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年金保險 (Pension Insurance) 制度를 導入하는데 있어서 過去 數年間의 散發的 研究를 總結集하여 整理하는데 焦點을 두었으며 特히 末年부터 實施될 國民福祉年金制度 樹立過程에 많은 政策的인 뒷받침이 되리라 思料된다.

이 分野에 關心있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參考가 되기를 바라며 이 調查研究에 參與한 本 委員會 여러분의 勞苦에 致賀드리는 바입니다.

1972. 12. 31.

保健社會部 次官
社會保障審議委員會 委員長

洪 鍾 寬

차 례

第 1 章 調查研究의 概要	15
1. 調查目的	15
2. 調查項目	17
3. 調查 및 集計方法	19
4. 調查研究期間 및 基準日	19
5. 調查研究日程	19
6. 用語의 定義	20
第 2 章 事業場 現況分析	25
第 1 節 事業場 및 勤勞者	25
第 2 節 賃金水準	39
第 3 節 離就業動向	49
第 4 節 退職金制度	57
第 3 章 勤勞者 現況分析	68
第 1 節 勤勞者의 基礎的 背景	68
第 2 節 勤勞者의 勤統年限	73
第 3 節 勤勞者의 賃金現況	79

第 4 節 勤勞者의 轉職 및 障害狀況	87
第 5 節 勤勞者의 家計收支 現況	92
第 6 節 退職後 生計對策에 關한 意識動向	101
第 4 章 各國의 年金保險制度	108
第 1 節 各國의 年金保險 發展動向	108
第 2 節 英國의 年金保險制度	115
第 3 節 美國의 年金保險制度	118
第 4 節 西獨의 年金保險制度	122
第 5 節 日本의 年金保險制度	125
第 6 節 印度의 準備金 制度	132
第 5 章 우리나라의 社會保險分析	139
第 1 節 우리나라의 社會保障	139
第 2 節 公務員年金制度	143
第 3 節 軍人年金制度	147
第 4 節 産災保險制度	149
第 5 節 醫療保險制度	155
第 6 章 老齡 廢疾 遺族을 爲한 年金 保險制度의 試圖	157

第 1 節	年金保險對象者	推計	157
第 2 節	年金保險基金	推計	168
第 3 節	年金保險制度	의 考慮要素	171

〈 表 次 列 〉

〈表 1 - 1〉	世界各国의 養老年金 保有国数	15
〈表 1 - 2〉	各国의 年度別 社会 保障制度 導入趨勢	16
〈表 2 - 1〉	設立年度別 産業大分類	26
〈表 2 - 2〉	地域別 設立年度別 事業場分布	27
〈表 2 - 3〉	設立年度別 規模別 事業場分布	28
〈表 2 - 4〉	年度別 事業場規模 推移	29
〈表 2 - 5〉	地域別 規模別 事業場分布	30
〈表 2 - 6〉	規模別 事業場數	31
〈表 2 - 7〉	規模別 男女別 勤勞者分布	32
〈表 2 - 8〉	職種別 勤勞者分布	33
〈表 2 - 9〉	技能程度別 勤勞者分布	34
〈表 2 - 10〉	年齡階層別 勤勞者分布	35
〈表 2 - 11〉	年齡階層別 勤勞者分布	36
〈表 2 - 12〉	勤続年數別 勤勞者分布	37
〈表 2 - 13〉	教育程度別 勤勞者分布	38
〈表 2 - 14〉	給与制度別 事業場分布	40
〈表 2 - 15〉	鉱業, 製造業 賃金水準 및 指數	45
〈表 2 - 16〉	地域別 男女別 月平均賃金 水準	47
〈表 2 - 17〉	月別 入職 对比表	50

<表 2 - 18>	月別 離職率 對比表	52
<表 2 - 19>	離職率	55
<表 2 - 20>	退職金으로 인한 紛糾內容	58
<表 2 - 21>	利益剩餘金 処分分布	59
<表 2 - 22>	年度別 公務員數	61
<表 2 - 23>	退職金給與의 種類 및 給與額	63
<表 2 - 24>	勤続 年數別 退職者分布	64
<表 2 - 25>	年度別 平均壽命	65
<表 2 - 26>	停年退職 年齡別 事業場分布	66
<表 2 - 27>	地域別 養老年齡制度 樹立에 關한 經營者態度別 事業場分布	67
<表 3 - 1>	地域別 男女別 勤勞者分布	68
<表 3 - 2>	年齡別 階層別 勤勞者分布	69
<表 3 - 3>	教育程度別 男女別 勤勞者分布	71
<表 3 - 4>	職種別 男女別 勤勞者分布	72
<表 3 - 5>	혼인 關係別 男女別 勤勞者分布	73
<表 3 - 6>	男女別 最初就業年齡別 分布	74
<表 3 - 7>	男女別 職場生活 繼續年數 分布	75
<表 3 - 8>	男女別 現職場勤続 年數別 分布	76
<表 3 - 9>	男女別 轉職有無別 勤勞者 分布	77
<表 3 - 10>	前職場 勤続年數別 分布	78

<表 3 - 11>	男女別 賃金階層別 分布	80
<表 3 - 12>	教育程度別 賃金階層別 勤勞者 分布	81
<表 3 - 13>	男女別 最初就業 賃金階層別 分布	82
<表 3 - 14>	教育程度別 最初就業 賃金階層別 勤勞者 分布	83
<表 3 - 15>	男女別 前職場 退職最終 月賃金 分布	84
<表 3 - 16>	教育程度別 前職場 最終月賃金 階層別 分布	85
<表 3 - 17>	男女別 未払賃金別 分布	86
<表 3 - 18>	年齢階層別 転職有無別 分布	87
<表 3 - 19>	教育程度別 転職有無別 分布	88
<表 3 - 20>	男女別 転職理由別 分布	89
<表 3 - 21>	教育程度別 転職理由別 分布	90
<表 3 - 22>	障害休職発生件数別 勤勞者 分布	91
<表 3 - 23>	障害休職総日数別 勤勞者 分布	92
<表 3 - 24>	家口当 月平均 家計収支	93
<表 3 - 26>	全都市 勤勞者家口当 消費支出 構成比	94
<表 3 - 27>	全都市 勤勞者家口, 家口員数別 月平均 家計収支	95
<表 3 - 28>	家口員数別 勤勞者 分布	96
<表 3 - 29>	就業勤勞者 分布	97

〈表 3 - 30〉	家計收入別 勤勞者分布	98
〈表 3 - 31〉	家計支出別 勤勞者分布	99
〈表 3 - 32〉	家計貯蓄別 勤勞者分布	100
〈表 3 - 33〉	男女別 貯蓄方法別 勤勞者分布	101
〈表 3 - 34〉	平均壽命	102
〈表 3 - 35〉	老齡人口의 推定	103
〈表 3 - 36〉	男女別 扶養責任에 關한 見解	104
〈表 3 - 37〉	男女別 退職後 生計에 關한 見解	105
〈表 3 - 38〉	男女別 養老年金 制度樹立에 關한 見解	106
〈表 3 - 39〉	男女別 養老年金 制度樹立의 反對理由別 分布	107
〈表 4 - 1〉	社會保障制度 保有 國家數 現況	108
〈表 4 - 2〉	大陸別 社會保險制度 保有 國 現況	109
〈表 4 - 3〉	1960年代 制度 導入 國 現況	110
〈表 4 - 4〉	年金保險 未導入 國 現況	111
〈表 4 - 5〉	各國의 國民所得 對比 社會保障費	112
〈表 4 - 6〉	社會保障費의 中進國 對比	114
〈表 4 - 7〉	日本 年金保險制度 一覽	126
〈表 4 - 8〉	日本 社會保險制度의 種類와 行政機構	129
〈表 4 - 9〉	社會保障費 收入의 財源別 構成	135

<表 5 - 1>	우리나라 社會保障制度 現況	140
<表 5 - 2>	우리나라 社會保險 現況	142
<表 5 - 3>	職種別 公務員 現況	143
<表 5 - 4>	公務員年金 運營現況	145
<表 5 - 5>	給與의 種類과 會計管理	146
<表 5 - 6>	軍人年金 基金展望	147
<表 5 - 7>	軍人年金 歲出現況	148
<表 5 - 8>	年度別 罹災 予算規模 및 積立金	151
<表 5 - 9>	機構編制 및 業務体系	154
<表 5 - 10>	醫療保險 適用者 現況	155
<表 5 - 11>	醫療保險 財政	156
<表 6 - 1>	20 - 59才 人口推計 (1973 - 81)	158
<表 6 - 2>	公務員 推計 (1973 - 81)	158
<表 6 - 3>	職業軍人 (下士以上 准士官 및 將校) (1973 - 81)	159
<表 6 - 4>	公務員 및 軍人總合計 (1973 - 81)	159
<表 6 - 5>	有配偶者 推計 (1973 - 81)	160
<表 6 - 6>	學生數推計 (1973 - 81)	161
<表 6 - 7>	年金保險對象 人口中 除外되는 人口 推計	162

〈表 6 - 8〉	10人 以上 事業場 勤労者 推計 (1973-81)	163
〈表 6 - 9〉	10人 以上 事業場所 推計 (1973-81)	164
〈表 6 - 10〉	適用対象 勤労者推計 (1973-81)	167
〈表 6 - 11〉	年金保険 基金推計 (1973-81)	169
〈表 6 - 12〉	政府 負担金 推計 (1973-81)	170

〈 圖 表 目 次 〉

〈 圖 2 - 1 〉	産業別 賃金水準	41
〈 圖 2 - 2 〉	産業別 月平均賃金	44
〈 圖 2 - 3 〉	鉱業・製造業 賃金水準	46
〈 圖 2 - 5 〉	職種別 月平均賃金水準	48
〈 圖 2 - 6 〉	入職率 対比図	51
〈 圖 2 - 7 〉	離職率 対比図	53
〈 圖 2 - 8 〉	月別 入離職率の推移	54
〈 圖 2 - 9 〉	離職 理由別 分布	56
〈 圖 2 - 10 〉	利益剰餘金 処分状況	60
〈 圖 2 - 11 〉	在職期間別 退職現況	62
〈 圖 3 - 1 〉	男女別 年齢階層別 分布図	70
〈 図表 5 - 1 〉	産災保険 適用状況	150
〈 図表 5 - 2 〉	保険料 徴収状況	152
〈 図表 5 - 3 〉	保険給与 支給状況	153

第 1 章 調查研究의 概要

1. 調查目的 및 必要性

養老年金制度는 勤勞者의 所得이 隱退후에도 年金 또는 隱退手当의 方法으로 持續됨으로서 産業社會活動人口의 最大多數를 이루는 賃金所得 階層의 生活安定을 기하려는 社會保障制度의 일환으로서 1971年末 現 世界 132 個國中 101 個국이 實施하여 75.9%의 國家가 養老年金制度를 運用하고 있다. <表 1-1> 및 <表 1-2>

<表 1-1> 世界各地域別 養老年金 保有國數

地域別	項目	國家數	保有國數	保有率 (%)
總計		133	101	75.9
西歐		19	19	100.0
東歐		9	9	100.0
北美		3	3	100.0
南美		23	22	95.7
中東		12	9	75.0
아프리카		41	27	65.9
아시아및오세아니아		26	12	46.2

資料: 世界各國의 社會保障制度 1971年 美國 保健教育 및 厚生
省 刊

<表 1 - 2> 各國의 年度別 社會保障制度 導入趨勢

體制別	年度別				
	1940	1949	1958	1969	1971
總	57	58	80	123	125
老齡・廢疾・遺族年金	33	44	58	97	101
疾病保險	24	36	59	68	68
產災保險	57	57	77	120	122
失業	21	22	26	34	34
家族手当	7	27	38	62	63

資料: 世界各國의 社會保障制度 1971年. 美國 保健教育 厚生
省 刊.

우리 나라에서는 初步的 段階로 公務員年金(受惠人口 約 415,393名)과 軍人年金(受惠人口 約 119,000名)이 實施되어 總人口에 對한 受惠率은 겨우 1.7%에 不過하며 給與의 質(內容)도 先進外國에 比하여 低水準에 있는 實情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人口 趨勢가 少産少死型으로 轉換됨과 同時에 醫藥技術의 發達과 保健醫療施策의 強化로 老齡人口 比率이 5% 以上으로 增加 一路에 있으며 本制度 樹立 初創期는 被保險者期間 동안 被保險對象勤勞者와 事業主가 繼續 寄與金을 払入하고 給與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年金 給與를 除外한 退職

廢疾 遺族 給与를 行함으로 基金蓄積이 可能하며 그 一部를 國家 戰略産業 部門에 投資하는데 動員할 수 있다.

現在 勤勞基準法 第 28 條의 適用으로 實施되고 있는 退職金制度는 事業主 一方 負擔으로 退職積立金を 蓄積하고 있으나 本制度가 實施되면 勤勞者와 事業主의 共同負擔과 政府의 補助金으로 事業主의 負擔을 經減시키는 한편 各 事業場別로 獨立 實施됨으로 基金의 轉用支払金 計算의 變則 支払方法의 非正常 等으로 實質的으로 勤勞者에게 滿足할만한 利度였다고 볼 수 없었다.

이를 制度的으로 改善하여 退職勤勞者 및 遺族의 安定된 生活 保障과 事業主 負擔能力을 分散시키고, 老齡後의 安定된 未來를 予測시킴으로서 勤勞者의 勞動生産性을 높여 国力培養에 寄與시킴과 社會連帶責任下에 福祉國家를 실현시키려는데 本 調查研究의 目的이 있다.

2 . 調 查 項 目

가. 事業체에 關한 事項

- | | |
|---------|----------------|
| 1) 事業体名 | 2) 組織形態 |
| 3) 設立年度 | 4) 資本金 |
| 5) 業種名 | 6) 主要製品 |
| 7) 從業員數 | 8) 總給与額 |
| 9) 給与制度 | 10) 年齡階層別 從業員數 |

- 11) 勤続年数別 従業員数
- 12) 教育程度別 従業員数
- 13) 離就業 事項
- 14) 退職金 制度에 関한 事項
- 15) 共済組合에 関한 事項
- 16) 甲種勤勞所得稅에 関한 事項
- 17) 福祉施設에 関한 事項
- 18) 養老年金制度 樹立에 関한 經營者の 態度

나. 従業員에 関한 事項

- | | |
|------------------|-------------|
| 1) 性 別 | 2) 年 齡 |
| 3) 혼인關係 | 4) 教育程度 |
| 5) 職 種 | 6) 家口主와의 關係 |
| 7) 最初就業 年齡 | 8) 職場勤続年数 |
| 9) 現職場에 関한 事項 | |
| 10) 転職에 関한 事項 | |
| 11) 障害休職에 関한 事項 | |
| 12) 家口員에 関한 事項 | |
| 13) 家計収支에 関한 事項 | |
| 14) 未支払賃金에 関한 事項 | |
| 15) 退職後 扶養責任 問題 | |
| 16) 退職後 生計維持 問題 | |

17) 養老年金 樹立에 關한 態度

18) 最終勤勞 可能年齡

3. 調查 및 集計方法

調查員이 標本事業체를 直接訪問하여 調查表를 記入하는 他計式 調查方法에 依하였으며 回收된 調查表는 本委員會 担当 研究委員 이 內容檢査 및 妥當度 檢査後에 手集計하였다.

4. 調查研究 期間 및 基準日

ㄱ. 調查研究期間

가. 準備 (標本設計 調查表作成 調查員 選定 및 訓練 予備調查 實施) : 1 個月

나. 本調查 實施 : 1 個月

다. 調查資料의 整理 및 製表 : 2 個月

라. 報告書作成 및 報告 : 2 個月

總 6 個月

ㄴ. 調查基準日

1972 年 6 月 30 日 現在로 調查하였다.

5. 調查研究 日程

調查研究 日程은 다음과 같다.

2) 其他法人: 商法에 의하여 設立된 合名会社·合資会社 有限会社와 民法 및 特殊法에 의하여 設立된 共同企業과 公企業을 뜻한다.

3) 個人: 法人이 아닌 家族 또는 個人 所有의 事業場을 말한다.

다. 設立年度: 法人인 경우에는 法的 設立年을 말하며 個人事業體인 경우에는 現在의 場所에서 事業을 始作한 해를 뜻한다.

라. 資本金: 1972年 6월 30日 現在 払入이 完了된 資本金 出資金額을 뜻한다.

마. 業種名: 産業中分類에 의하여 分類하였다.

바. 從業員: 該当事業體에서 一定한 期間동안 精神的 肉體的 勞務를 提供하고 그 反對給付로서 一定한 基準에 의하여 算出된 賃金·俸給을 받는 자를 뜻한다.

1) 管理職: 企業經營에 直接 參與하여 事業體 全般에 걸쳐 運營 및 監督의 位置에 있는 者를 뜻하며 直接的인 勞動으로 生産 및 販賣에 참여하지 않는 者를 뜻하며 即 重役部長 工場長 課長 級以上을 뜻한다.

2) 事務職: 庶務·人事 經理 營業 打字 福利 厚生 販賣 實驗 研究等에 從事하는 者를 뜻한다.

3) 技術職: 現在 職接的으로 生産工程에 參與하는 者를 말하며 即 技術者 技術工 熟鍊工 半熟鍊工 見習工等을 말한다.

4) 其 他: 管理職 事務職 技術職 以外の 勤勞者 即 雇員
使喚 食堂管理者等을 말한다.

마. 給与制度

1) 給与計算基準: 給与의 算出하는 基準을 말한다.

① 時間給: 作業의 成果에는 關係없이 實際로 從事한 時間을 基準으로 賃金이나 俸給을 算出하는 制度를 말한다 即 日給制 週給制 月給制 및 年俸制等을 뜻한다.

② 能率給: 作業한 時間에 關係없이 從業員이 수행한 作業量에 따라 賃金이나 俸給을 算出하는 給与制度를 뜻한다.

2) 給与策定基準

① 生活給: 從業員이 最低生活을 維持할 수 있는 基를 두고 算出한 給与制度를 뜻한다.

② 能力 및 職務給: 從業員의 學歷經驗 勤続年數 및 職務의 功獻度에 따라 給与를 하는 制度를 뜻한다.

바. 年齡階層別 從業員數: 1972年 6月 30日 滿年齡으로 計算하여 記入함을 뜻한다.

사. 勤続年數別 從業員數: 1972年 6月 30日 現在에 在職年數別로 記入함을 뜻한다.

아. 教育程度別 從業員數

1) 大卒: 大學·初級大學 旧制 專門學校 大學院 卒業者 中退者를 말한다.

2) 高卒: 高等学校 卒業 및 中退者를 말한다.

3) 中卒: 中学校 高等公民学校 卒業 및 中退者

4) 国卒: 国民学校 公民学校 卒業 및 中退者를 뜻한다.

5) 未就学: 国民学校에 就学한 일이 없는者の 漢字, 無學者를 뜻한다.

자. 離就業狀況

1) 在職者: 現在職場에 在職하고 있는者를 뜻한다.

2) 離職: 退職 死亡 解雇 其他의 事由로 因하여 職場을 그만둔者를 뜻한다.

① 退職: 從業員이 個人意思에 따라 退職하거나 停年退職한者를 뜻한다.

② 死亡: 從業員이 死亡 障害死亡으로 因하여 離職된 者를 뜻한다.

③ 解雇: 從業員이 該當事業場의 事情으로 減員되거나 從業員의 帰責事由로 또는 勤勞契約 滿了等 從業員의 意思에 反하여 離職된者를 뜻한다.

④ 障害者: 公傷에 依한 廢疾 傷病으로 因하여 離職한者와 死亡者를 뜻한다.

차. 退職金制度: 勤勞基準法 第 28 條 規定에 依한 適用狀況을 뜻한다.

카. 共濟組合: 從業員의 相互扶助를 爲하여 組織된 組合을 뜻한다.

다. 納稅実績 : 甲種勤勞所得稅 및 對象者를 뜻한다.

파. 福祉施設 : 從業員을 爲하여 設置된 施設을 뜻한다.

ㄴ. 個別調查

가. 最初就業年齡 : 從業員이 肉體的 精神的 勞動의 對価로 賃金이나 俸給을 目的으로 最初로 就業한 年齡을 뜻한다.

나. 現職場在職年數 : 現職場에 勤続한 年數를 뜻한다.

다. 最初就業賃金 : 現職場에 就業最初로 受領한 賃金を 뜻한다.

第2章 事業場 現況分析

第1節 事業場 및 勤勞者

韓國의 企業의 歷史는 짧은 便이어서 6.25 動亂以後부터 生成 發達하기 始作하여 5.16 革命을 기점으로 하여 第一次經濟開發 五個年計劃의 樹立과 더불어 政府의 工業 장려策에 힘입어 더욱 박차를 加하게 되었다.

특히 자본의 形成도 차차 大規模化되어 重工業的 性格의 各種 企業의 出現과 貿易도 차차 活氣를 띄게 되었다.

이를 더욱 具體的으로 分析하여 보면 <表2-1>에서 보는바 와 같이 5人以上 事業體 25,816 個所中 解放前에는 4.8%에 不過하였으나, 6.25以後 점점 增加되어 1961-1965年의 5年 동안에는 27.9%로 年平均 5.6%의 높은 增加를 보였으며 每年 相當한 增加를 보여 1968年은 10.4%라는 증가를 보여 우리나라 産業의 歷史는 대체로 짧은 것이 立證되고 있으며 從 業員數 出荷額 生産額等에도 相當한 規模로 擴大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 - 1 >

設立年度別 産業大分類

(單位 1,000 圓)

創設年度	事業体数		従業員数		出荷額		生産額		附加価値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鋁業採石業及製造業	25,816	100.0	937,650	100.0	1,359,154,559	100.0	1,387,714,797	100.0	598,249,859	100.0
1945년 이전	1,245	4.8	76,048	8.1	182,375,590	13.4	184,649,906	13.3	89,929,557	15.3
1945 ~ 1950	1,333	5.2	74,740	8.0	81,291,238	6.0	83,514,168	6.0	37,215,209	6.3
1951 ~ 1955	2,120	8.2	126,900	13.5	213,681,078	15.7	219,519,485	15.8	89,710,759	15.3
1956 ~ 1960	3,769	14.6	117,533	12.5	161,873,539	11.9	165,481,440	11.9	66,594,490	11.3
1961 ~ 1965	7,210	27.9	215,928	23.0	350,364,711	25.8	356,664,979	25.7	148,357,667	25.2
1966	1,655	6.4	57,853	6.2	84,157,423	6.2	83,698,389	6.0	32,915,948	5.6
1967	2,136	8.3	78,936	8.4	106,369,714	7.8	109,197,768	7.9	47,654,905	8.1
1968	2,681	10.4	82,989	8.9	79,121,696	5.8	80,980,277	5.8	29,398,159	5.0
1969	2,293	8.9	68,395	7.3	73,639,391	5.4	76,076,088	5.5	35,818,299	6.1
1970	1,374	5.3	38,328	4.1	26,109,709	2.0	28,011,297	2.1	10,654,866	1.8

資料: 鋁工業 統計調査報告書 1970年 經濟企劃院刊

本調査 結果에서 企業의 歴史的 背景을 보면 <表 2 -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年の 歴史를 가진 事業場이 32%를 6~10年이 20%, 11~15年이 17%, 16~20年이 17%, 21年 以上이 10%로, 나타나 全体の 52%에 해당되는 企業이 10年 未滿이며 이를 地域的으로 볼때 蔚山工業地域은 10年 以内 設立된 事業場이 全体の 70%인 14個로 나타나 新興工業都市임이 立証되고 있다.

<表 2 - 2 > 地域別 設立年度別 事業場分布

蔚山	20	9	5	2	.	2	2
釜山	20	4	6	3	4	3	.
仁川	20	5	3	6	5	1	.
서울	40	14	6	6	8	4	2
	40						
	30						
	20						
	10						
	0						
100		32	20	17	17	10	4
計		1-5年	6-10	11-15	16-20	21年以上	無回答 (其他)

또한 規模別 設立年度別 事業場 分布를 보면 <表 2 - 3 >와 같다.

<表 2 - 3 > 設立年度別 規模別 事業場分布

設立年度別 規模別	計	1-5	6-10	11-15	16-20	21年 以上	其 他 (無回答)
計	100	32	20	17	17	10	4
① 100名未滿	4	2	1	.	.	1	.
② 100-199 名	31	12	4	6	3	4	2
③ 200-499 名	35	14	8	7	5	.	1
④ 500-999 名	17	2	3	2	7	2	1
⑤ 1,000 名以上	13	2	4	2	2	3	.

우리 나라 事業場 規模의 變動推移를 分析하여 보면 一般的으로 增加一路에 있으며 (1960年代의 急速한 經濟發展을 보여 주었음을 立證하고 있다.

〈表 2 -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般的인 規模別 事業体の 構成比率 變動 推移를 보면 零細企業 (10人~49人)은 1964年의 79.3%에서 1970年 70.4%로 相對的인 減少를 보이고 있으나 中小企業 (50人~199人)은 1964年의 16.7%에서 1970年에는 23.1%로, 200人以上の 大企業도 1964年의 4%에서 1970年은 6.5%로 增加하여 中小企業과 大企業은 各各 構成比率이 增加하고 있다.

〈表 2 - 4〉 年度別 事業場規模 推移

産業別 年度	計	零細企業 (10-49人)		中小企業 (50人-199人)		大企業 (200人以上)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1964	9,323	7,396	79.3	1,553	16.7	374	4.0
1965	10,184	8,008	78.5	1,826	17.9	350	3.4
1966	10,433	8,104	77.6	1,897	18.2	432	4.2
1969	10,910	7,821	71.7	2,372	21.8	717	6.5
1970	15,469	10,872	70.4	3,528	23.1	1,009	6.5
1971	25,367	20,722	81.7	3,557	14.0	1,088	4.3

資料： 事業体労働 実態調査報告書・1971・労働庁刊

그러나 1971년에는 10人以上 事業場이 前年에 比하여 무려 9,898個所라는 엄청난 増加를 보여 中小企業과 大企業 構成比率 보다 零細企業의 數가 相當히 앞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本 調査 結果에 依하면 標本設定은 100人 以上 常備勤勞者 事業場을 中心으로 調査設計되어 있었으나 調査過程中 100人未滿 事業場 4個所가 包含되었다.

이를 地域別 規模別 分布 狀況을 보면 <表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人 未滿의 事業場이 4個所로 4%, 100~199人 이 31個所로 31%, 200~499人이 35個所로 35% 500~999人이 17個所로 17% 1,000人 以上 常備事業이 13個所로 13%로 나타나고 있다.

<表2-5> 地域別 規模別 事業場分布

地域別 規模別	計		서울		仁川		釜山		蔚山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計	100	100.0	40	100.0	20	100.0	20	100.0	20	100.0
① 100名 未滿	4	4.0	3	7.5	.	0.0	1	5.0	.	0.0
② 100-199	31	31.0	15	37.5	5	25.0	4	20.0	7	35.0
③ 200-499	35	35.0	11	27.5	6	30.0	10	50.0	8	40.0
④ 500-999	17	17.0	8	20.0	6	30.0	1	5.0	2	10.0
⑤ 1,000名以上	13	13.0	3	7.5	3	15.0	4	20.0	3	15.0

労働庁 事業体 労働実態調査 報告書에 依하면 1971年末 現在 全国에 10人以上 事業場이 25,367 個로 나타나며 規模別 事業場 數는 <表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人~15人 規模가 全 體의 51.0%인 12,943 個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人以上 事業 場은 8.4%에 不過하며 1,000人以上의 業體는 0.4%인 95 個 에 不過하여 現在 우리나라의 企業規模는 勤勞者數를 볼때 소규 모임을 알 수 있다.

<表 2-6> 規模別 事業場數

規模 項目	계	10-15	16-29	30-49	50-99	100-199	200-499	500-999	1,000이상
事業場數	25,367	12,943	4,884	2,895	2,510	1,047	787	206	95
構成比	100.0%	51.0	19.3	11.4	9.9	4.1	3.1	0.8	0.4

資料： 事業体労働実態 調査報告書 1971 . 労働庁刊

또한 10人以上 規模의 事業場에 從事한 男女 勤勞者分布를 보면 <表 2 -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人以上 規模의 事業場에 從事하는 勤勞者의 男女의 構成比는 67.1:32.9로 (約 7:3) 나타나고 있으며 規模別 企業체數는 規模가 작은 事業場數가 많고 規模가 커 갈수록 數에 있어서 상당히 적은 比率을 나타내나 勤勞者數에 있어서는 各規模別로 大同小異함을 알수 있다.

이는 事業場數가 많은 代身 勤勞者가 적고, 事業場數가 적은 代身 雇傭된 勤勞者가 많기 때문이다.

<表 2 - 7> 規模別 男女別 勤勞者分布

	計		10-15	16-29	30-49	50-99	100-199	200-499	500-999	1,000
	실 수	비								
計	1,251,053	100.0	150,155	103,883	110,762	171,762	147,653	238,887	144,764	163,187
男	839,535	67.1	115,810	72,814	80,564	129,111	99,728	147,099	99,022	95,387
女	411,518	32.9	34,345	31,069	30,198	42,651	47,925	91,788	45,742	87,800

資料： 事業場 勞動實態調查報告書 1971. 勞動庁刊

職種別 勤勞者分布를 本調査結果에서 보면 100 個事業場에 從事하는 57,660 名중 管理職이 3.2% 事務職 7.9%, 技術職이 全體의 80.3%인 46,377 名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事業場을 中心으로 調査한 結果로 因한 것으로 理解되며 其他도 8.6%인 4,843 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2 - 8 参照>

<表 2 - 8> 職種別 勤勞者 分布

	총 계	管理職	事務職	技術職	其他
實 數	57,660	1,854	4,586	46,377	4,843
比 率 (%)	100.0%	3.2	7.9	80.3	8.6

이를 技能程度別 勤勞者分布를 分析하여 보면 <表 2 - 9 >에서 보는 바와같이 技術職(技術者, 技術工, 熟練工, 半熟練工, 見習工, 其他 常備勤勞者)에 從事하는 勤勞者 比率이 73.0% 事務系(管理職 事務職)가 14.8%로 其他(日傭 勤勞者)가 7.2%를 보여 本 調査 結果의 分類는 약간의 差異를 보일 뿐이다.

<表 2 - 9 > 技能程度別 勤勞者分布

		계	技術者	技術工	熟練工	半熟練工	見習工	其他常備勤勞者	日傭勤勞者	事務系勤勞者
計	실수	1,251,503	19,589	42,758	252,676	201,871	141,164	317,703	89,824	185,918
	비율	100.0	1.6	3.4	20.2	16.1	11.3	25.4	7.2	14.8
男		839,985	19,388	41,334	140,962	104,041	67,296	245,181	74,029	147,754
女		411,518	201	1,424	111,714	97,830	73,868	72,522	15,795	38,164

資料: 事業体 労働実態調査報告書・1971年 労働庁刊

年齡階別 勤勞者分布를 보면 <表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세以下가 0.8% 15~19세 5.6% 20세~29세의 가장 활동적인 青年期가 52.6%로 다음이고 30세~39세 階層이 31.1%로 나타나 대체로 20代와 30代의 人口階層이 80%가 넘고 있으며 年金保險 保險受給對象 階層인 60세以上の 勤勞者가 0.2%에 不過하다.

年金保險制度가 最初로 1974년부터 實施된다면 被保險者期間을 20年으로 假定할때 現在의 20代, 30代가 1990年代에 가서 年金受給權者가 될것으로 推定되어 이의 正確한 分析의 要素로 思料된다.

<表2-10> 年齡階層別 勤勞者分布

	計	14세以下	15-19	20-29	30-39	40-49	50-59	60세以上
實 數	57,660	469	3,224	30,323	17,960	5,039	552	93
比 率	100.0	0.8	5.6	52.6	31.1	8.7	1.0	0.2

이를 労働庁資料에 依하면 <表 2 - 11 参照> 18세에서 39세
階層이 8.6%에 相当하며 50세이상인 1.4%로 本調査結果의
1.2%와 비슷한 樣相을 보여 주고 있다.

企業의 安全性 堅固性을 생각할때 勤勞者가 계속 한職場에 오
래 勤務할 수 있는 企業風土의 造成만이 國家經濟安全과 産業發
展을 促進될 수 있다.

<表 2 - 11> 年 齡 階 層 別 勤 勞 者 分 布

		計	18세未滿	18-29	30-39	40-49	50세以上
計	실 수	1,251,508	40,940	712,034	362,449	118,721	17,359
	비	100.0	3.2	56.9	29.0	9.5	1.4
男		839,985	15,191	360,722	335,163	112,135	16,774
女		411,518	25,749	351,312	27,286	6,586	585

資料： 事業体労働実態調査報告書 1971年 労働庁刊

그러나 韓國은 企業의 歷史가 짧고 開發途上에 있는 實情이어서 比較的 勤統年數가 짧은 勤勞者가 많은 形便이다.

이를 더 正確히 分析하여 보면, <表 2 -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比較的 짧은 4年以下 勤務한 者가 88.0%에 해당하고, 5年以上이 겨우 12%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세분하여 보면 1年未滿 勤務者가 全體의 28.1%, 1年~4年이 約 60%, 5~9%이 比較的 높은 10.0%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年金保險實施를 爲해서는 勤勞者가 轉職 또는 轉業하는 率이 낮은 安定된 企業風土가 절대 必要하다.

<表 2 - 12> 勤統年數別 勤勞者分佈

	勤 勞 者 數	
	實 數	比 率
計	57,660	100.0
① 1年未滿	16,184	28.1
② 1年	11,964	20.8
③ 2年	8,396	14.6
④ 3年	9,831	17.0
⑤ 4年	4,297	7.5
⑥ 5~9年	5,767	10.0
⑦ 10~14年	1,001	1.7
⑧ 15~19年	196	0.3
⑨ 20年以上	24	0.04

教育程度別 勤勞者分布를 分析하여 보면 <表 2 - 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教育程度가 높은 便이어서 大卒者가 全体の 6.4 %로 나타나고 中卒教育者가 66.2 %로 나타나고 国卒出身勤勞者가 27.0 % , 未就學은 0.4 %에 不過하여 우리나라의 平均 教育水準이 相当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 新興工業地域일 수록 教育程度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表 2 - 13 > 教育程度別 勤勞者分布

	勤 勞 者 数	
	实 数	比 率 (%)
計	57,660	100.0
① 大 卒	3,695	6.4
② 高 卒	16,528	28.7
③ 中 卒	21,599	37.5
④ 国 卒	15,588	27.0
⑤ 未 就 学	250	0.4

第 2 節 賃 金 水 準

賃金 및 俸給管理 (Wage and Salary administration) 는 勤勞者 (從業員) 에게 얼마나 되는 額數의 報酬를 支給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로서 賃金은 勤勞者에게는 主要한 收入의 源泉이지만 經營主 (企業主) 에게는 費用의 主要한 要素가 됨으로 勤勞者는 보다 많은 賃金과 보다 安定된 賃金を 渴求하고 企業主는 能率에 따라 合理的으로 支払하려는 相反된 性格은 恒常 勞使間의 摩擦을 일으키는 要素이다.

勤勞者와 賃金과의 關係는 첫째로 勤勞者의 生計維持를 重要한 要求로 하는 經濟的 局面이고 , 둘째로 社会的局面으로 賃金の 過多가 社会的 身分을 規定하는 要素로 社会的 威信에 影響을 주는 것이다.

세째로 肉體的 勞動을 하느냐 精神的 勞動을 하느냐에 따라 心理的 滿足도가 다르듯이 生活의 安定, 人間關係 士氣等に 影響을 주는 心理的 局面도 重要한 要素로 分析되며 또한 企業과 賃金과의 關係의 則面에서는 첫째는 賃金과 企業은 勞務費의 主要한 構成要素가 되며 둘째로 賃金은 生産能率을 左右하는 要素이고 세째로 賃金은 企業의 收入의 源泉으로 重要性을 가지고 있어, 地域別 産業別, 男女別 規模別 年齡別의 賃金格差等に 면 밀히 研究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合理的 基準에 依한 賃金水準의 決定은 企業의 成敗가 달려

있다고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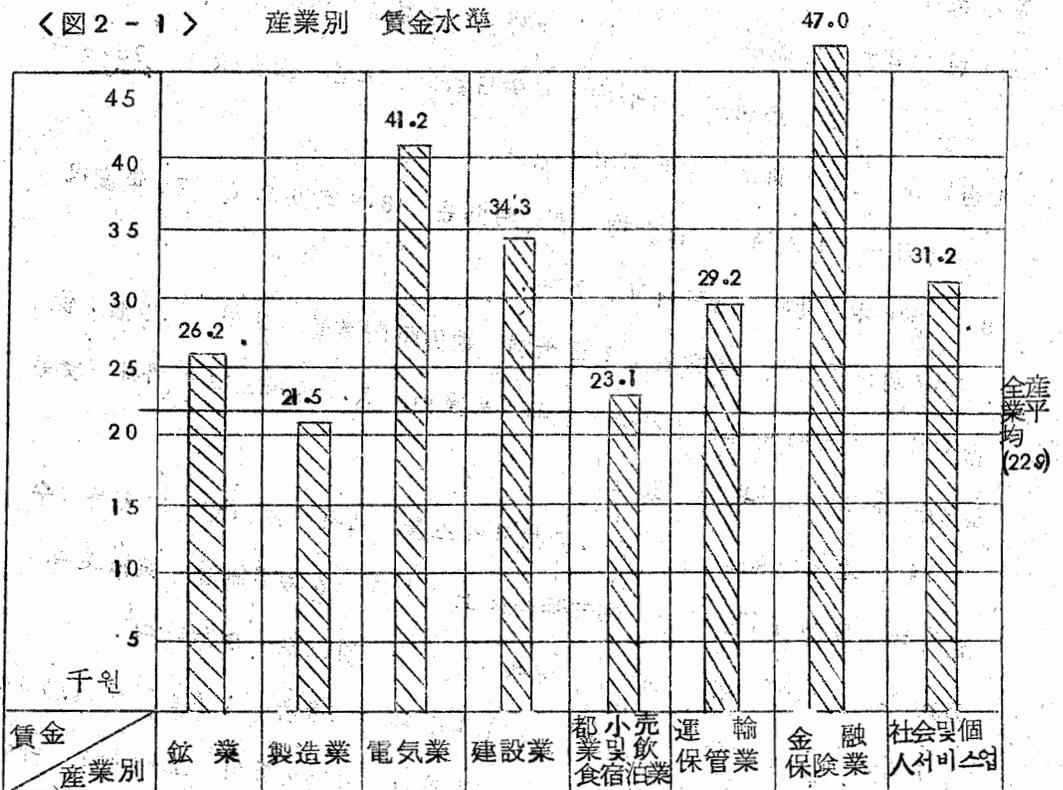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給与制度의 給与計等基準을 보면 <表 2 - 14 >에서는 보는 바와같이 대개의 경우 能率給을 加味한 時間給을 択하는 경향이 75%이고, 給与策定基準도 明確치는 않으나 대체로 能力 및 職務給制度를 択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82%를 보여주고 生計費 測定에 依한 生計給이 全体の 6%이나 이는 實際로 最低賃金制的 性格의 給与制度와는 거리가 먼 實情으로 解 釈된다.

<表 2 - 14 > 給与制度別事業場分布

1. 給与計算基準	事業場數	100
	時間給	75
	能率給	13
	其他	7
	無 応 答	5
2. 給与策定基準	事業場數	100
	生活給	6
	能力 및 職務給	82
	其他	7
	無 応 答	5

經濟企劃院과 USAID의 支援에 依한 韓國産業開發研究所의 調査에 依하면 1970年 6月 現在 우리나라의 平均賃金 水準을 鉞工業, 서비스業等 農水産을 除外한 從業員 1人当 月平均賃金은 22,900 원으로 나타 났으며 이의 자세한 分析을 하여 보면 <圖 2 -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金融 保險業이 47,000 원, 電氣業이 41,200 원, 建設業이 34,300 원 順으로 되어 있고 賃金水準이 낮은 産業은 製造業으로 月間給与額이 最高水準의 50% 에도 未達되는 21,500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圖 2 - 1 > 産業別 賃金水準



資料： 賃金實態調査報告書・1970年 韓國産業開發研究所刊

労働庁에서는 勤勞者の 賃金變動事項을 月別로 調査 賃金 政策에 反映하기 爲한 勤勞賃金實態 調査報告書를 年 四分期로 나누어 調査되고 있다.

이에 依하면 賃金水準 決定의 主要要因이 되는 勤勞者の 勤勞日數는 1971年度の 月平均 勤勞日數는 25.4日로서 1970年の 25.2日과 비슷한 日數를 나타내고 있으며 産業別 月平均日數는 建設業이 25.8日로서 가장 높고 運輸 保管業이 24.3日로 가장 낮으며 其他 産業은 平均値와 가까운 日數로 나타났다.

또한 勤勞者 技能別 月平均 勤勞日數를 보면 技術職이 25.6日 事務職이 25.2日로 나타나고 있다.

勤勞者の 1人당 1日平均 勤勞時間은 8.9時間으로 70年度の 8.9時間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産業別에 依한 勤勞者 1日平均 勤勞時間數를 보면 運輸・保管業이 9.9時間으로 가장 높고 釵業이 7.7時間으로 가장 낮은 勤勞時間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運輸保管業은 社会・公共서비스業으로서 操業을 短縮할 수 없는데 反하여 釵業은 勤勞基準法上 1日 6時間制를 実施토록 規定하고 있어 勤勞時間의 差異가 있는 것으로 解釈된다.

月平均 賃金水準을 보면 1971年度の 勤勞者 1人당 20,998원으로, 70年度の 17,362원에 比하여 20.9%의 上昇率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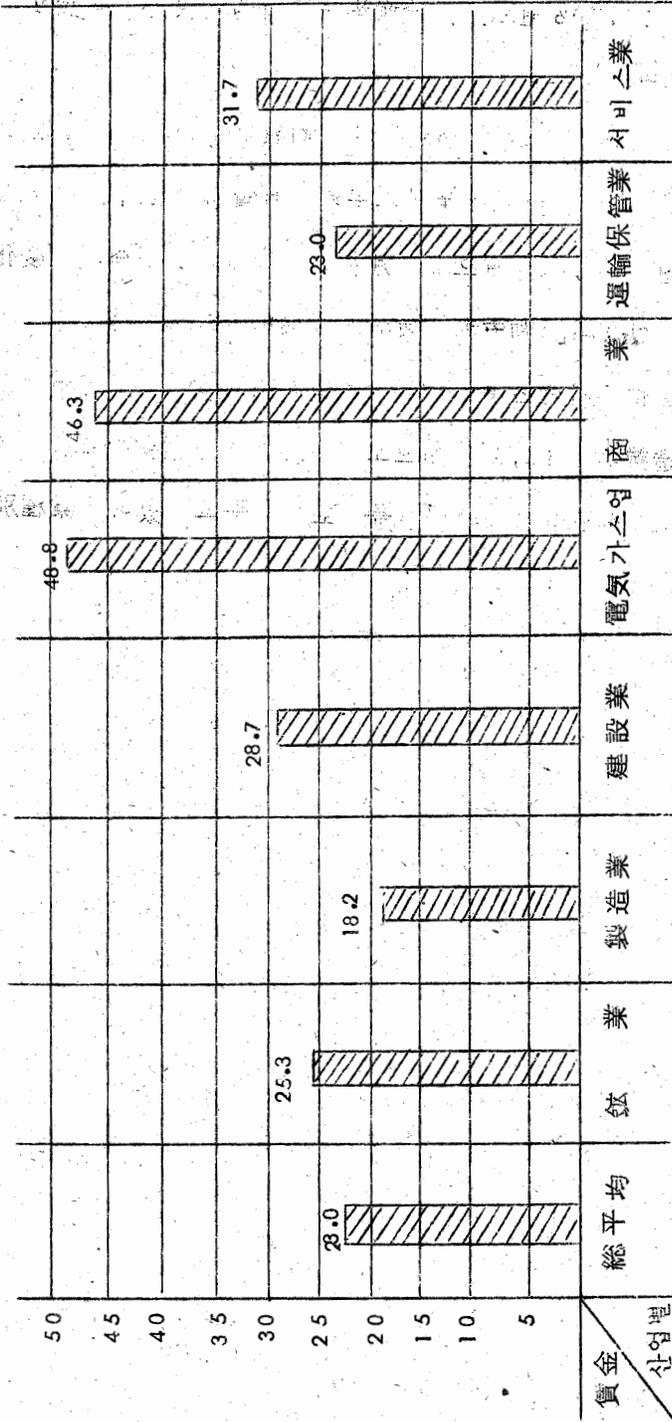
産業別 平均賃金を 보면 電氣가스業이 43,854 원으로 가장 높고

製造業이 16,706 원으로 全産業中 가장 낮은 賃金이 支給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971年 末 現在 産業別 月平均賃金を 보면 <圖 2 -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1年 年平均 月賃金 21,000 원보다 10.9%가 높아진 23,000 원으로 月別로 多少의 賃金의 變化가 있음을 暗示하고 있으며 勤勞者 賃金의 業種別 順位는 電氣가스業 1位 商業이 2位 서비스業이 3位 建設業 順으로 되어 있으며 最下位인 製造業은 18,200 원으로 最上位인 電氣가스業 48,800 원의 37.3%에 不過한 賃金分布를 보여 주고 있어 業種別 賃金格差가 甚함을 보여주고 있다.

〈圖 2 - 2〉 産業別 月平均賃金 (1971.12 末現在)

단위: 1,000 원



資料: 勤勞者 賃金實態調查報告書 1972年・勞勤行刊

韓國統計年鑑에 依하면 1965년부터 1971년까지의 鉦業 製造業의 賃金水準은 <表 2 - 15>에 보는 바와 같이, 勞働庁과 韓國 産業開發 研究所의 賃金水準보다 낮은 水準을 보이고 있다.

이는 全産業의 平均이 아니고 鉦業과 特히 가장 賃金水準이 낮은 製造業部分만이 包含되어 이러한 現象을 보이고 있다고 解釈된다.

1966年の 賃金を 100으로 본 各年度別 賃金 推移는 平均賃金은 1966年の 指數 100에서 1971년에는 273.1로 173.1의 上昇을 보였고 鉦業은 247.2으로 147.2의 上昇率을 보였고 製造業은 1966年 100에서 1971年은 313.2로서 213.2의 上昇率로 가장 높은 水準으로 上昇되었으나, 賃金水準은 相當히 낮은 便이다.

<表 2 - 15> 鉦業・製造業・賃金水準 및 指數

1966 = 100

年度 産業別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平均	賃金	5,866	6,915	8,815	10,320	13,185	16,045	18,885
	指數	84.8	100.0	127.5	149.2	190.7	232.0	273.1
鉦業	賃金	7,130	8,410	10,990	12,240	15,100	17,940	20,792
	指數	84.8	100.0	130.7	145.5	179.5	213.3	247.2
製造業	賃金	4,600	5,420	6,640	8,400	11,270	14,150	16,978
	指數	84.9	100.0	122.5	155.0	207.9	261.1	3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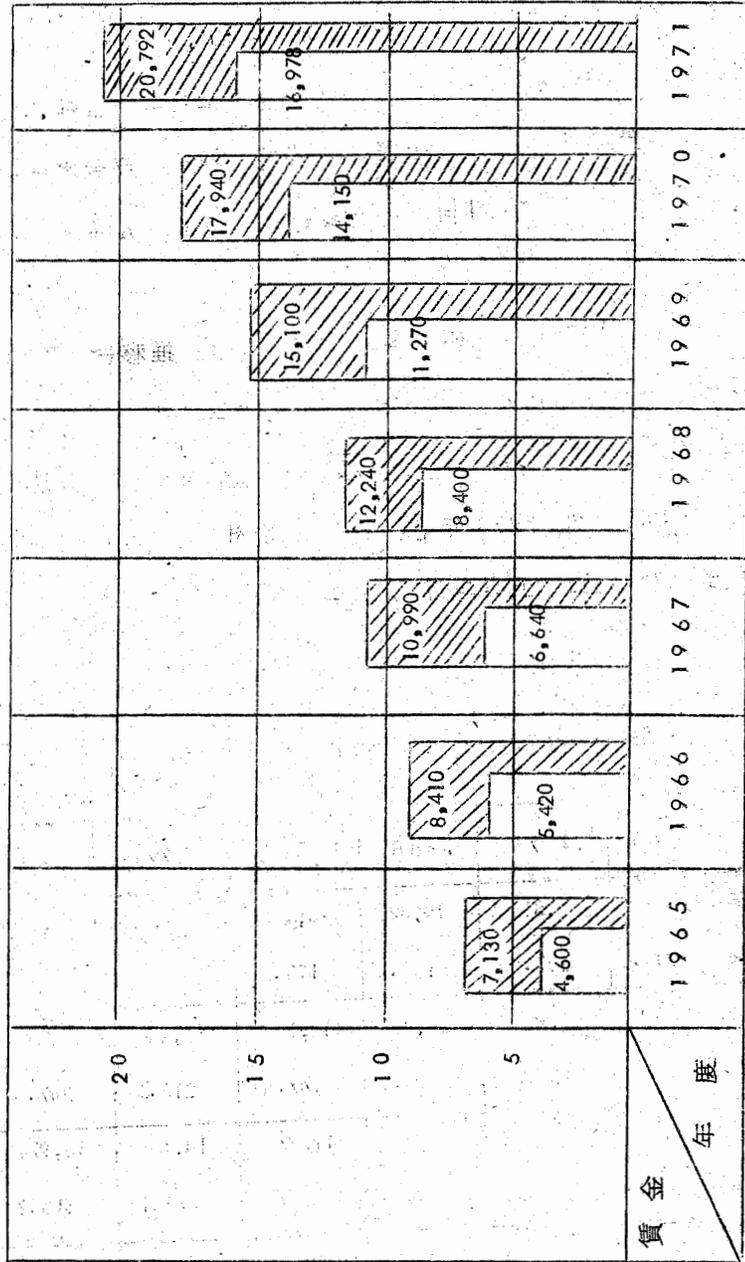
資料： 韓國統計年鑑 1972年 經濟企劃院

이의 比較檢討로 됨기 위하여 各年度別 賃金推移는 <圖 2-3>에서 보는바와 같다.

<圖 2-3> 鎔業 製造業의 賃金水準

製造業

鎔業 (단위 1,000 원)



資料: 韓國統計年鑑 1972年 經濟企劃院刊

本調査의 結果로 男女別 月平均 賃金水準을 보면 調査 対象企業이 比較的 安定되고 収益性이 높은 100人以上 事業場을 中心으로 分析하였던 關係로 比較的 賃金水準이 높음이 認定된다.

〈表 2 -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2年 6月末 現在 月平均賃金은 23,239 원이고 男子 勤勞者는 27,599 원, 女子는 15,533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男子를 100으로 보았을때 女子는 56으로 男性勤勞者가 女性勤勞者보다 相當히 높은 待遇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2 - 16〉 地域別 男女別 月平均賃金水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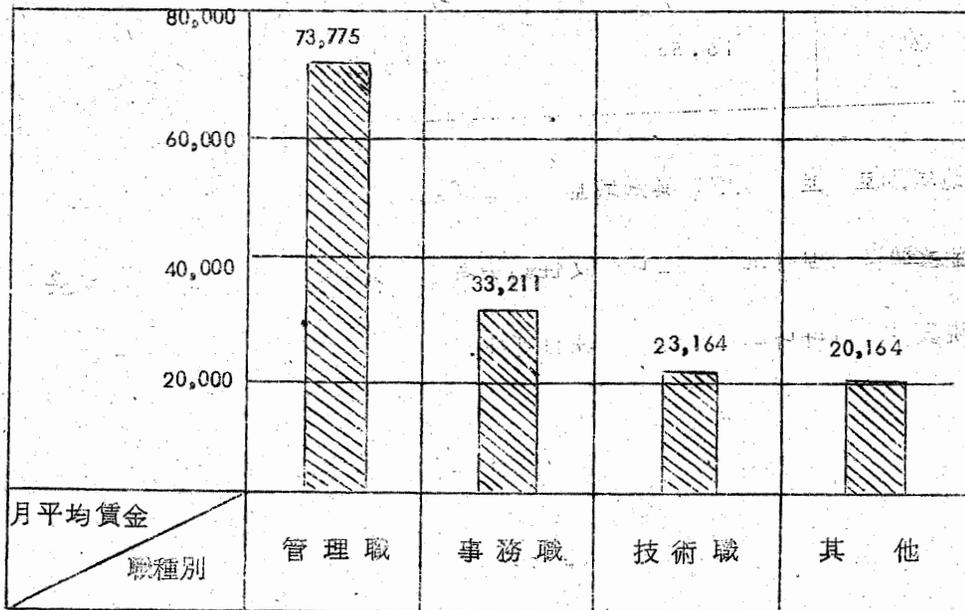
地域別 月平均賃金	月平均賃金 (원)	京仁地域 (원)	嶺南 蔚山地域 (원)
全体平均	23,239	21,880	26,137
男	27,599	26,298	29,612
女	15,533	15,756	15,218

地域別로 보면 旧工業地域보다는 新興工業地域이 相當히 높은 賃金水準을 보이고 있으나 女性勤勞者의 賃金은 新興地域이 낮은 逆現象이 나타나고 있음이 注目된다.

職種別 賃金水準은 相當한 格差가 있다. 이의 正確한 分析을 하여보면 <圖 2 - 5>에서 보는 바와같이, 管理職이 73,775 원으로 가장 높고 事務職이 33,211 원, 技術職이 23,706 원으로 나타나고 其他가 20,164 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技術係보다는 事務係를 우대하는 傾向이 있으며 특히 技術係에는 女性勤勞者가 相當數가 勤務하고 있어, 相對的으로 賃金水準이 낮아진 것으로 解釋된다.

따라서 賃金은 企業主나 勤勞者가 모두 觀心을 가지고 있는 主要要素임과 同時에 研究分析하는 方向과 對象에 따라 賃金水準의 差異를 보여주게 된다.

<圖 2 - 5> 職種別 月平均賃金水準



第 3 節 離 就 業 動 向

오늘날 經營活動에는 3 M이 크게 作用한다고 본다.

어떤 組織체가 營利事業이던 公益事業이던 間에 그 形態如何에
는 關係없이 經營함에 있어서 Money (資金) Material (物資)
및 Man Power (人力)의 三要素가 主要한 구실을 하고 있으며
특히 人的要因은 企業經營에 必需的인 要件이 되는 것이다.

人的資源의 安定은 企業의 安定을 뜻하고 나아가서는 國民經濟
의 安定을 뜻하는 尺度가 되는 것이다.

人事異動은 昇進, 轉職, 離職 등으로 区分되며 企業이 恒常 變化
하는 企業内外의 諸條件에 対応해서 그 作業集團의 規模를 調節
하는 技能을 가지게 된다.

即 첫째로 特定規模를 가진 企業内部에서 일어나는 正常的인
變動이고, 둘째는 企業의 規模上의 變化 企業의 擴張縮少로 일
어나는變動으로, 國民經濟, 法規 및 各種要因으로 인한 離職
轉職 解雇 또는 雇傭擴大 등이 發生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離職 (Separation)은 辭職 (Resignation) 休職
(Layoff); 解雇 (Discharge), 停年退職 (Retirement)
区分할 수 있다.

勞働庁에서 勤勞者의 入職 離職이 變動事項을 調査하여 勞働移
動의 構造 및 變動實態를 把握하여 勞動力 需給調節의 基礎資料
를 提供하기 爲한 勞働移動調査 報告書의 入職動向은 1970年度의

年入職率이 43.5%, 1971年度는 47.3%로 71年度가 약간
 上昇率을 보이고 있다.

(入職率公式은 入職率= $\frac{\text{今月中 入職者数}}{\text{前月末 現在勤勞者数}} \times 100$) 이다.

이를 産業別로 보면 <圖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鎡業이
 61.9%로 가장 높고 商業이 26.8%로 比較的 가장 낮으며 年
 度別 變化가 가장 심한것은 建設業으로 1970年의 8.0%에서
 1971年度에는 5倍 以上으로 上昇을 보였으며 製造業 部分은
 53.8%로 變化가 없다.

또한 入職率은 季節的인 變動 推移를 보면 鎡業 製造業이 3/4
 分期에 약간의 上昇率을 나타내는 反面에 電氣가스業 2.1%,
 商業(1.2%) 및 서비스業(1.4%)은 冬節期에 變動이 없음을
 알 수 있고 建設業은 겨울철에는 事業이 不進한 것을 알 수
 있다. <表 2-17> 참조

<表 2-17> 月別 入職率 對比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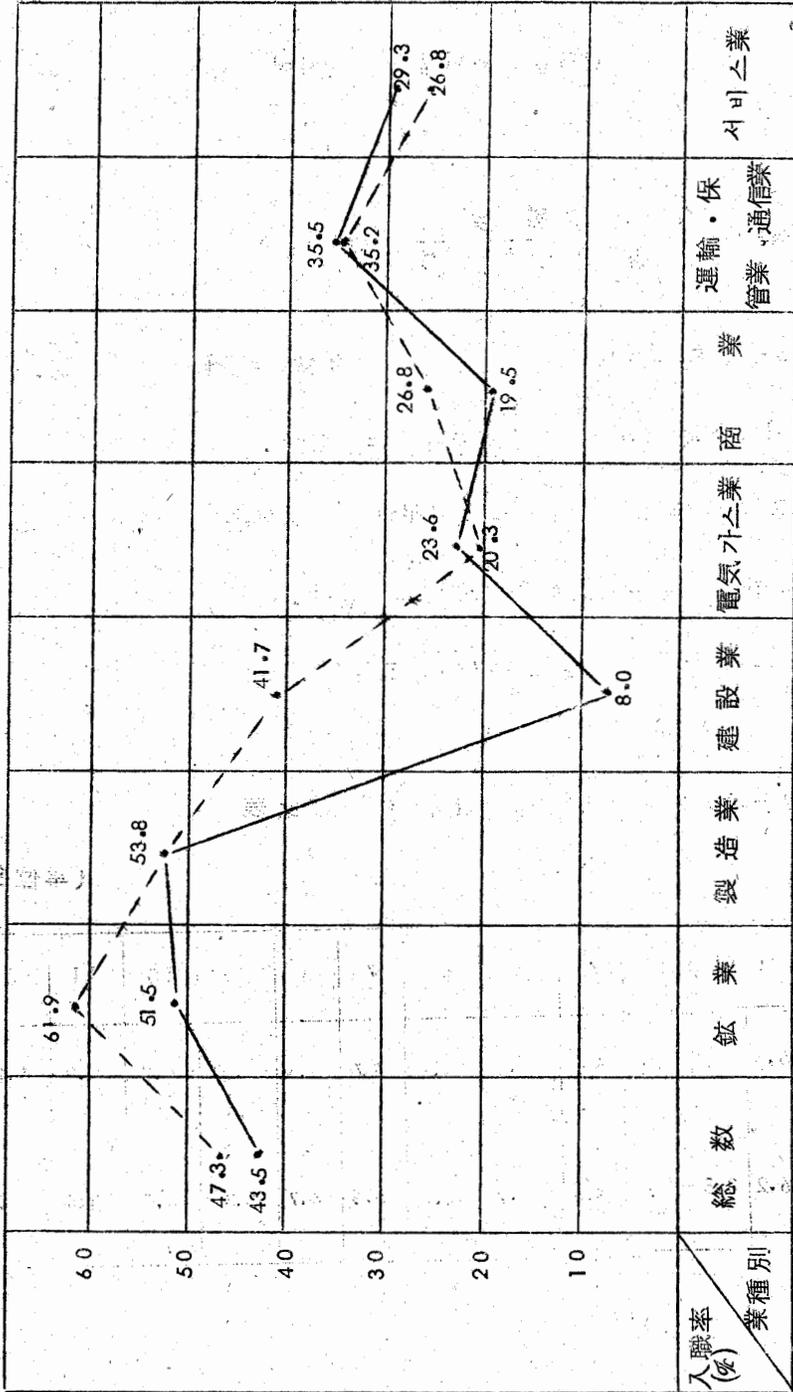
年月別 年度	1	2	3	4	5	6	7	8	9	10	11	12	總計
1970	4.7	5.1	7.7	6.7	4.9	4.2	5.3	3.6	3.6	4.8	3.3	3.0	43.5
1971	4.6	4.2	4.6	4.5	3.5	3.2	5.4	4.8	3.0	3.7	2.7	2.6	47.3

資料: 勞動移動調查報告書 1971. 勞働庁刊

〈圖 2 - 6〉 入職率 対比圖

1970

1971



資料： 労働移動調査報告書 1971・労働庁刊。

여기서의 離職은 休職, 解雇, 은퇴, 死亡 辭退等으로 雇傭人名簿에서 除外되어 職場을 떠난者를 말하며 離職率 公式은 다음과 같다.

$$\text{(離職率} = \frac{\text{今月中 離職者數}}{\text{前月末 現在勤勞者數}} \times 100)$$

離職率을 前年度와 71年度가 70年度 年離職率의 46.7%보다 9.3%가 높은 56.0%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71年度 4/4分期 月平均 離職率은 4.8%로 3/4分期보다 약간의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다.

<表 2 - 18 및 圖 2 - 7 참조>

<表 2 - 18> 月別 離職率 對比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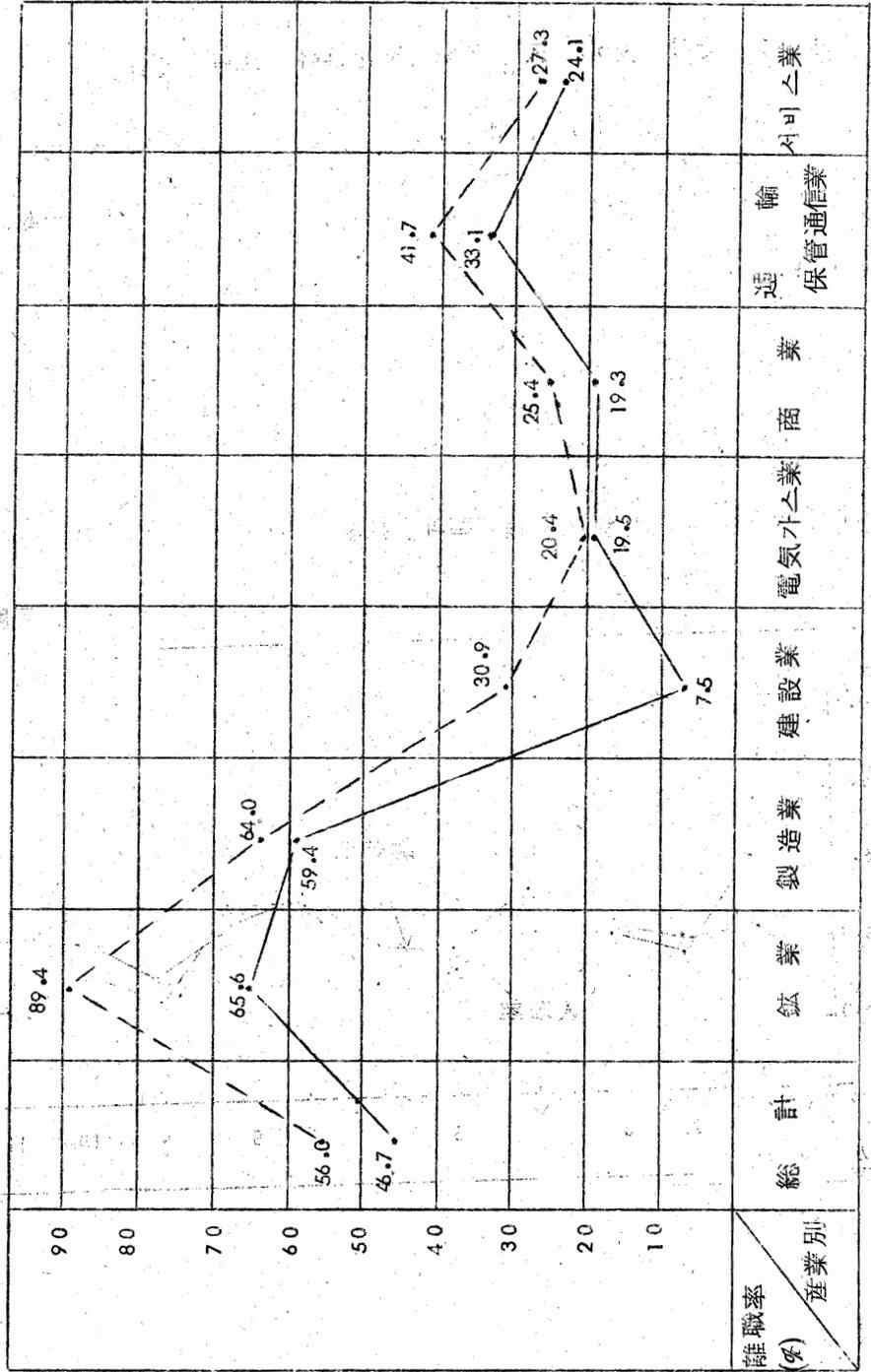
(單位: %)

月別 年度別	1	2	3	4	5	6	7	8	9	10	11	12	總計
1970	5.5	4.9	5.1	5.5	5.6	4.9	5.7	4.3	4.9	5.3	4.9	4.4	46.7
1971	6.2	3.8	4.3	5.6	3.9	4.0	5.5	4.7	3.3	4.5	4.4	5.5	56.0

< 図 2 - 7 > 離職率 対比図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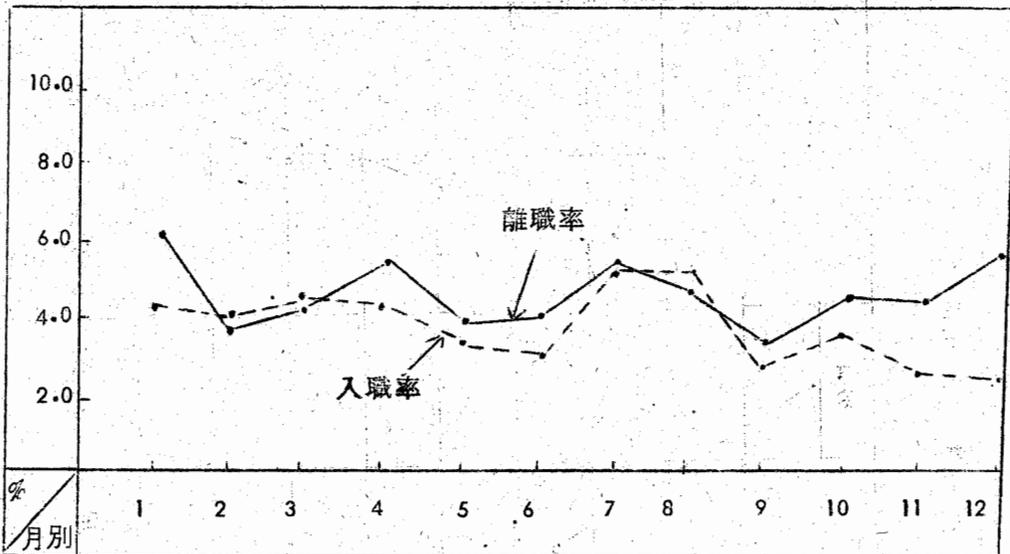
1971



1971年度の 月別 入離職을 對比하여 보면 <圖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7.8月頃이 入離職動向이 비슷한 便이고 그外에는 入職率보다 離職率이 大體的으로 약간 높은 것이 一般的 趨勢이다.

<圖2-8> 月別 入離職率의 推移

(1971年度)



本調査 結果를 보면 總 在職者數 57,660 名에 對하여 離職者數가 14,718 名으로 25.5%의 離職率을 보였다. <表 2 - 19 >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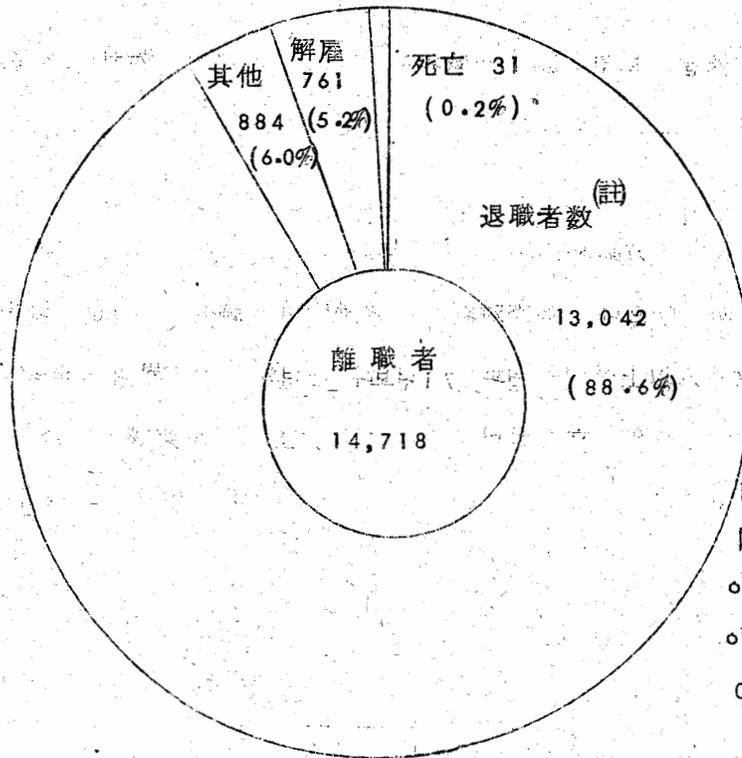
이는 勞働厅의 勞働移動率의 71年度의 56.0%보다 相當히 낮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調査對象이 勞働厅의 調査는 10人以上이고 本調査는 100人以上이라는 점과 71년보다 72년의 産業界의 全般的 動向이 活潑하였음을 立証하며 100人 以上の 事業場은 韓國에서는 比較的 健全하고 安定된 企業임을 볼때 當연하다고 하겠다.

<表 2 - 19 >

離 職 率

区 分	在 職 者 數	離 職 者 數	離 職 率 (%)
實數 및 比率	57,660	14,718	25.5

<圖2-9> 離職理由別 分布



註：退職者数中
障害退職 60 名
이 包含되었으며
이는 退職者の
0.5%에 해당됨.

離職理由別 分布를 보면 <圖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体 離職者中 退職者数가 88.6%로 가장 높은 比重을 보이고
이중에 障害로 因한 退職者 60명 程度가 包含되어 있다.

또한 其他가 6.0%인 884名 解雇가 5.2%이고 死亡으로
因한 離職 0.2%에 不過한 分布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障害者数는 在職者数 57,660名의 0.15%에 不過한
91名이고 91名중 障害로 因한 退職이 60名으로 65.9%, 休
職이 34.1%로 31名의 分布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의 分析結果 우리나라는 아직 勞動移動率이 甚하고 企業의 健全한 發展을 爲해서는 合理的 人事政策과 安全管理의 徹底한 對備가 必要하리라 思料된다.

第 4 節 退 職 金 制 度

退職金制度는 賃金 및 賞與金 다음으로 重要的 性格을 가지며 이의 概念에 對한 理論이 많으나 대체로 다음 세가지로 要約된다.

첫째로 退職金은 給料의 一部가 蓄積된 것으로 退職할 때 費用으로 되어 支給된다는 給料後払說이고,

둘째는 老後의 勞働力의 減退와 転職의 可能性 減少에 對한 補償金으로 支給되는 것이라는 補償說과,

셋째는 多年의 功勞에 對한 報答하는 贈與金이라는 功勞金說 등이다.

우리나라의 勤勞基準法 第 28 條에 依하면 使用者는 繼續勤勞年數 1 年에 對하여 30 日分 以上の 月平均賃金을 退職金으로서 退職하는 勤勞者에게 支給할 수 있는 制度를 設定해야 한다. 또 明示되었으며 但書로 勤勞年數 1 年 未滿인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고 規定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企業의 安全性과 泡沫會社의 出現, 또는 企業主의 不成實로 因한 退職金制度의 完全한 確立이 欠해

있어 勤勞者에게 不利한 支払金の 計算, 支払方法의 非正常等으로 勞使雙方의 紛糾의 対象이 되기도 하는 問題이다.

1971年度 勞働庁 勤勞監督官室에서 集計한 退職으로 因한 紛糾 處理件數를 보면 <表 2 -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1年度의 한해동안에 1,743件에 延人員 5,116名으로 金額은 336百萬원 相當의 金額으로 件當 金額은 平均 193,000 원에 해당되며 行政處理로 調整된 것이 91.2%로 1,589件이며 立件送致된 것만 도 8.8%인 154件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金額으로 보면 送致立件된 金額만도 1억 38百만원으로 全體의 41.0%에 相當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件當金額은 694,317 원으로 높은 金額을 보여 주고 있다.

<表 2 - 20> 退職金으로 因한 紛糾內容

(1971年度)

区 分		件 數 及 金 額	
接 受		件 數	1,743
		人 員	5,116
		金 額	366,130,033
處 理	行政處理	件 數	1,589
		人 員	4,829
		金 額	198,405,091
	立件送致	件 數	154
		人 員	287
		金 額	137,724,942

各企業에서 退職金 積立事項을 分析하기 위하여 利益剩餘金 処分 内識別로 分析해 보면 <表 2 -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体를 100 으로 볼때 社内留保中 利益準備金이 12.2%, 任意積立金이 16.2%, 退職準備金이 不過 0.5%밖에 되지 않는 実情이다.

<表 2 - 21>

利益剩餘金 処分分布

單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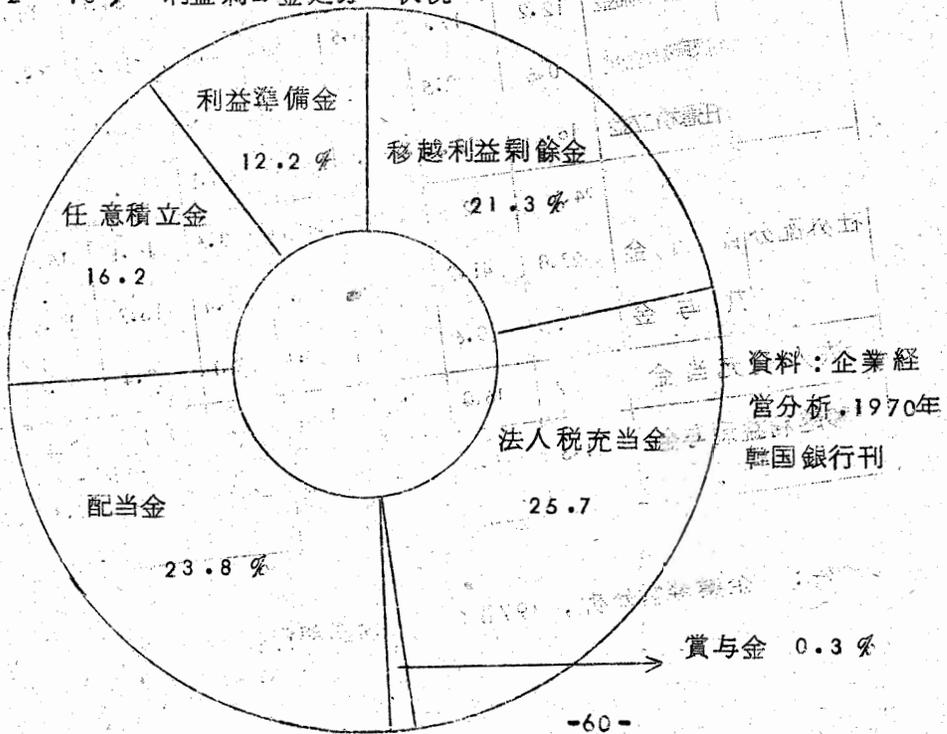
産業別 剩餘金 処分		平均	鎭業	製造業	電氣業	建設業	都小売 및 宿泊業	運輸 倉庫業	不動 産業	서비 스業
社内留保	計	28.9	30.3	34.5	9.5	36.8	34.1	14.8	43.3	27.9
	利益準備金	12.2	17.4	13.5	9.4	11.4	12.9	5.8	9.7	17.1
	退職積立金	0.5	0.5	0.6	0.1	0.3	0.7	1.6	0.0	0.2
	任意積立金	16.2	12.4	20.4	0.0	25.1	20.5	7.4	33.6	10.6
社外配分	計	24.1	42.5	20.8	65.3	3.5	16.1	15.5	7.1	21.7
	配当金	23.8	41.9	20.6	65.2	3.4	15.7	14.8	7.1	21.6
	賞与金	0.3	0.6	0.2	0.1	0.1	0.4	0.7	0.0	0.1
法人税充当金		25.7	16.0	27.5	18.1	35.0	22.5	27.4	28.9	30.2
移越利益剩与金		21.3	11.2	17.2	7.2	24.7	27.2	42.3	20.8	20.3

資料： 企業經營分析，1970年 韓國銀行刊

産業別로 退職積立金 積立実態를 보면 運輸·倉庫業이 1.6%로 가장 높고 다음이 都小売業이 0.7%, 그다음이 製造 0.6% 鉱業 0.5% 順으로 되어있고 不動産業은 積立금이 전혀 없는 形便에 있다.

1970年度の 年中 利益剩餘金処分 狀況을 보면 <圖2-10> 보는 바와 같이 法人税 充当금이 25.7%로 가장 높고 다음이 配当금이 23.8%, 移越利益剩餘金 21.3%, 實際로 勤勞者에 配分되는 項目인 退職積立金과 賞与금이 利益中 各各 0.5% 0.3%로 利益剩餘金の 0.8%에 不過한 것이며 退職積立金制度가 法的 強制規定이 없어 退職發生時에만 수시로 주게 되어 있어 심한 경우는 企業의 存廢에 까지 影響을 주는 境遇가 많다.

<圖2-10> 利益剩餘金処分 狀況



우리나라의 年金保險制度의 最初의 対象이었던 公務員의 總數
 增員率 退職率을 보면 <表 2 - 22> 에서 보는바와 같이 勤勞者
 의 離職率 56.0 에 比하여 1960年부터 1972年 9月 30日
 現在까지의 13年間の 平均 退職率은 7.2%로 8倍나 낮은 實
 情이다.

따라서 公務員이 實선 職業으로서의 安定을 뜻하고 있음이 立
 証된다.

<表 2 - 22> 年度別 公務員數 (退職率, 增員率包含)

年度	區分	公務員總數	增員人員	增員率(%)	退職人員	退職率(%)
1960		237,476			4,391	1.8
1961		237,500	24	0.01	55,678	23.4
1962		250,685	13,185	5.6	20,577	8.2
1963		271,725	21,040	8.4	12,379	4.6
1964		288,234	16,509	6.1	15,228	5.3
1965		305,316	17,082	5.9	13,690	4.5
1966		332,688	27,372	9.0	15,046	4.5
1967		358,382	25,694	7.7	22,964	6.4
1968		374,870	16,488	4.6	28,697	7.7
1969		392,110	17,240	4.6	31,357	8.0
1970		415,393	23,283	5.9	32,401	7.9
1971		449,923	34,530	8.3	30,853	6.8
1972 (9.30)		455,899	5,976	1.3	23,235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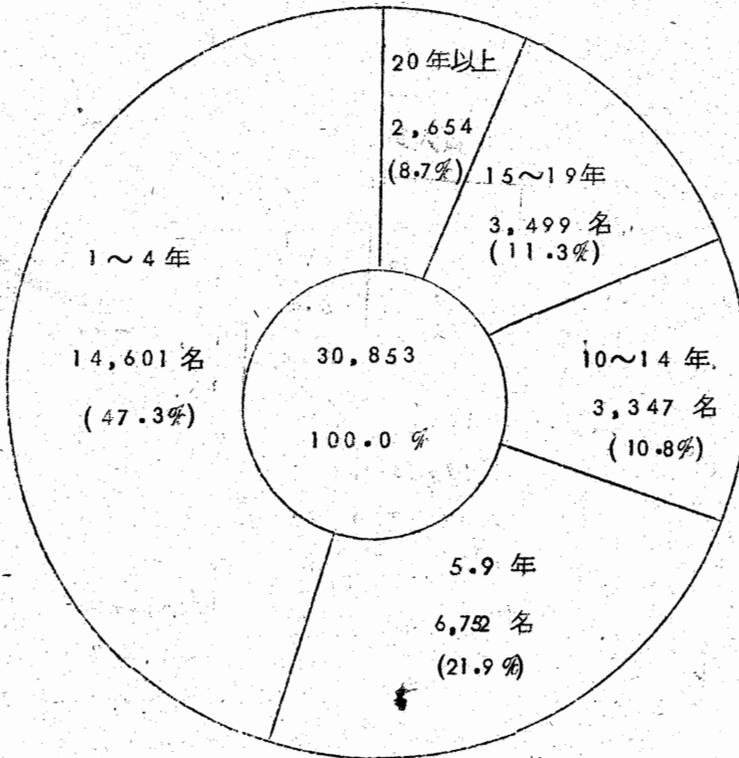
平均退職率: 7.2

資料: 公務員年金制度現況 1972, 總務処刊

公務員의 在職期間別 退職現況을 보면 <圖 2 -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年을 在職하고 退職者數가 47.3%, 5~9年이 21.9%, 10~14年이 10.8%, 15~19年이, 11.3%, 年金給與의 対象者인 20年以上 在職하고 退職한 者가 2,654名으로 8.7%로 보이고 있어 短期勤続者가 높은 退職率을 보이고 있다.

<圖 2 - 11 > 在職期間別 退職現況

1971年末 現在



資料 : 公務員年金制度現況 1972 . 總務処刊

本調査 結果에 依하면 退職金 給与狀況은 <表 2 - 23 >에서 보
 는 바와같이 總退職 件數 30,839 件中 其他 部分이 29,862 件
 으로 96.8%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처럼 転職·離職率이
 높은 關係로 因한 退職 解雇等이 項目에 記錄되어 相對的으로
 比率이 높아진 것으로 解釈되며, 다음이 傷病으로 1.5% 停年
 退職이 1.1%, 廢疾, 死亡이 各各 0.3%의 比率로 나타났
 으며, 退職金 給与 金額으로 보면 其他가 件數比率 96.8%보다는
 낮은 91.5%, 停年退職이 件數比率 1.1%의 5배가 上廻하는
 5.7%, 이고 傷病 死亡 廢疾順으로 보이고 있으며, 件当平均
 給与額을 보면 總平均은 件当 30,905원으로 勤勞者의 1972.
 6.30 現在 月平均賃金 23,239 원보다 약간 上廻하는 程度이며,

<表 2 - 23 > 退職金 給与의 種類 및 給与額

項目 給与別	件 數		金 額		一件当平均 給 与 額
	実數 (名)	比率 (%)	実數 (1,000원)	比率 (%)	
計	30,839	100.0	953,087	100.0	30,905
① 停年退職	352	1.1	53,892	5.7	153,102
② 死 亡	78	0.3	6,582	0.7	84,384
③ 傷 病	454	1.5	18,152	1.9	39,982
④ 廢 疾	93	0.3	2,003	0.2	21,537
⑤ 其 他	29,862	96.8	872,458	91.5	29,216

※ 設立當時부터 소급 기입토록함.

停年退職이 역시 높은 153,102 원, 死亡이 84,384 원으로 다음
 이고, 傷病이 39,982 원 廢疾이 21,537 원, 其他가 29,216
 원이다. 그리고 傷病, 死亡 廢疾은 이미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依한 相當한 部分이 補償되고 있는 實情임으로 停年退職金과
 其他部分이 實際로는 退職金制度의 性格을 갖는 部分이나 給与
 의 額數와 給与件數가 낮은 現實을 보여주고 있다.

勤続年數別 退職狀況을 分析하여보면 <表 2 - 2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前章에서 言及한 韓國企業의 歴史的 背景이 짧은 한
 便 勞動移動率이 相對的으로 높고 또한 企業의 安全性의 欠如로
 因한 理由와 賃金水準때문에 短期 勤続者들이 通職率이 높다.

<表 2 - 24 > 勤続年數別 退職者分布

退職者數 勤続年數別	實 數 (名)	比 率 (%)
計	80,029	100.0
① 1年 미만	47,582	59.4
② 1	13,747	17.2
③ 2	8,378	10.5
④ 3	5,207	6.5
⑤ 4	2,571	3.2
⑥ 5 - 9	2,216	2.8
⑦ 10 - 14	294	0.3
⑧ 15 - 19	34	0.1
⑨ 20年 以上	.	.

※ 無回答 事業場數: 19 個所

即 1年未滿이 全体の 過半數를 上廻하는 59.4%에 達하고 1年以上이 5年 未滿이 37.4%, 5年以上 10年未滿이 2.8% 10~14年이 0.3% 15-19年이 0.1%, 로 年金保險制度의 運營上 短期勤続者의 退職率의 높음은 相當한 問題를 提示하는 部分이라고 思料된다.

이와 관련지어 分析해야 할 것은 各事業場에서 停年退職年齡을 얼마로 規定하고 있는 問題는 年金制度 樹立時 年金需給權 年齡을 定하는 主要한 要素인만큼 主要時된다.

經濟企劃院의 発表에 따르면 <表-25> 1971年度의 男女平均의 平均壽命은 65.9세, (男子 63.7세; 女子 64.1세)이며

<表 2 - 25> 年度別 平均壽命

年度別	平均壽命	平均 (男女)	男	女
1961		57.5	54.5	60.6
1966		61.9	59.7	64.1
1971		65.9	63.7	68.1
1976		68.4	66.2	70.6
1981		69.9	67.7	72.1

資料: 主要統計 1971. 經濟企劃院 刊

76년에는 68.4세(남 66.2, 여 70.6세)로 상당히 길어 지는 데 本調査結果에 依하면 <表 2 -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個 事業平均中 65세를 停年年齡으로 規定한 業체가 1.0%, 60세가 3.5% 55세가 40.0%로 50세가 20.0%로 50에서 55세를 停年年齡으로 規定한 業체가 60.0%를 上廻하고 있는 実情이며 1971年 平均壽命 65.9세에 比較하면 10~15年の 平均餘命을 보이고 있다.

이는 男女別로 相當한 差異가 있어, 男子는 比較的 높고 女子는 낮으며 特히 女子의 境遇는 結婚을 中心으로 退職하는 것이 라는 생각이 一般的 傾向이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체로 停年退職年齡이 낮아 早老現象의 世代交替의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表 2 - 26> 停年退職 年齡別 事業場分布

項目別 年齡別	計		男 子	女 子
	実 数	比率 (%)		
計	200	100.0	100	100
① 65 世	2	1.0	2	.
② 60	7	3.5	6	1
③ 55	80	40.0	58	22
④ 50	40	20.0	20	20
⑤ 45	16	8.0	2	14
⑥ 40	6	3.0	.	6
⑦ 40세미만	4	2.0	.	4
⑧ 無応答業体数	45	22.5	12	33

또한 年金保險制度 樹立에 對한 經營者의 態度를 보면 <表 2 - 2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贊成하는 便이 71%, 反對가 12%, 其他 및 無回答이 17%로 大體的으로 贊成하는 便이나 實際 實施될 境遇 企業主의 負擔等의 問題가 提起되면 多少 贊 反對의 差異가 變化되리라 分析된다.

<表 2 - 27 > 地域別養老年金制度樹立에關한

經營者 態度別事業場分布

	事業場數		서 울		仁 川		釜 山		蔚 山	
	實數	比率	實數	比率	實數	比率	實數	比率	實數	比率
計	100	100.0	40	100.0	20	100.0	20	100.0	20	100.0
① 必要하다	71	71.0	24	60.0	13	65.0	16	80.0	18	90.0
② 必要없다	12	12.0	9	22.5	1	5.0	1	5.0	1	5.0
③ 其 他	6	6.0	3	7.5	.	.	2	10.0	1	5.0
④ 無 回 答	11	11.0	4	10.0	6	30.0	1	5.0		

第 3 章 勤勞者 現況分析

第 1 節 勤勞者의 基礎的背景

年金保險의 主對象인 勤勞者의 意識構造와 一般的 現況分析은 年金保險制度 樹立을 위한 基礎的 研究領域이다.

本調査에서 100개 事業場에 從事하고 있는 總 57,660 名의 勤勞者중 任意로 抽出한 2,000 名에 對한 質問紙調査에 依하여 集計分析하였다.

地域別 男女別 勤勞者 分布를 보면 <表 3 - 1>와 같이 2,000 名의 勤勞者中 男子가 1,559 名으로 77.9%, 女子가 441 名으로 22.1%로 一般的 勤勞者의 男子:女子의 7:3 보다 男子 抽出率이 높았다.

<表 3 - 1> 地域別 男女別 勤勞者分布

地域 性別	計		서 울		仁 川		釜 山		蔚 山	
	실 수	비율	실수	비율	실수	비율	실수	비율	실수	비율
計	2,000	100.0	800	100.0	400	100.0	400	100.0	400	100.0
男	1,559	77.9	590	73.8	342	85.5	300	75.0	327	81.8
女	441	22.1	210	26.2	58	14.5	100	25.0	73	18.2

年齡階層別 勤勞者分布를 보면 <表 3 -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名의 勤勞者中 20代, 30代가 가장 높은 비율로 각각 42.4%, 41.4%로 全體의 8割以上을 차지하고 있으며, 20세未滿이 3.2%, 40~49세가 11.0% 50代가 1.8%, 60代 年齡階層은 不過 0.2%밖에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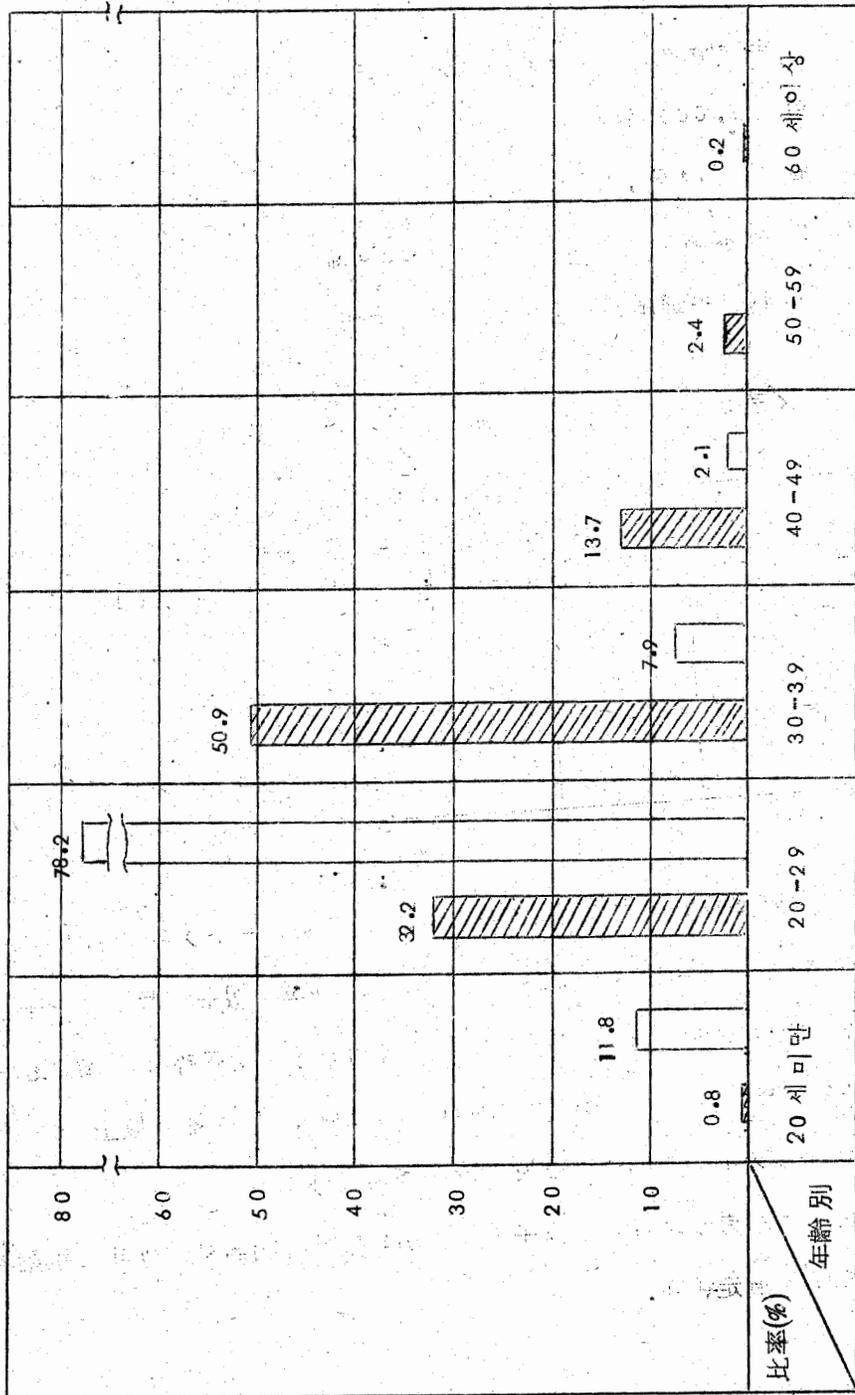
<表 3 - 2> 年 齡 別 階 層 別 勤 勞 者 分 布

	計	20세미만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實 數	2,000	64	847	828	221	37	3
비율(%)	100.0	3.2	42.4	41.4	11.0	1.8	0.2

年齡階層別 男女別 分布를 보면 <圖 3 - 1>과 같이 女子는 20代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反面 男子는 30代가 50.9%를 보이고 있고 20세미만은 女子측의 構成比가 15倍가량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으며, 50세 以上 階層에는 女子 勤勞者는 없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따라서 男子보다는 女子가 勤勞年齡이 相當히 빨리 短縮되는 것으로 推定된다.

〈圖 3 - 1〉 男女別・年齡層別 分布圖



教育程度別 男女勤勞者分布는 <表 3 - 3 >에서와 같이 大卒이 292名으로 14.6%, 高卒이 44.1%로 883名 中卒이 525名으로 26.3% 国卒이 14.6% 未就學이 8名으로 0.4%에 不過하고 男女別 教育程度 水準은 男子쪽이 훨씬 높은 學歷의 分布를 보여 주고 있다.

즉 大卒을 보면 男子가 18.1%를 보여주는 代身 女子는 2.3%에 不過하고 高卒은 47.7% 對 31.7% 等으로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낮은 學歷인 中卒 国卒 未就學은 男子보다 女子측이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表 3 - 3 > 教育程度別·男女別勤勞者分布

學歷別		計	大卒	高卒	中卒	国卒	未就學
性別							
計	實 數	2,000	292	883	525	292	8
	비율(%)	100.0	14.6	44.1	26.3	14.6	0.4
男	實 數	1,559	282	743	354	175	5
	비율(%)	100.0	18.1	47.7	22.7	11.2	0.3
女	實 數	441	10	140	171	117	3
	비율(%)	100.0	2.3	31.7	38.8	26.5	0.7

職種別 勤勞者分布는 <表 3 - 4 >와 같이 管理職이 100名으로 5.0%, 事務職이 32.4%, 技術職이 56.1%, 其他가 8.6%를 보여주고 있으며 男女別로 比較하여 보면 남자가 管理職에서는 女子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事務職은 男子가 33.9% · 女子가 26.8%로 나타나며 技術職은 男子가 54.3% 女子가 62.5%로 아직도 短純 技術職에 女工이 많이 就業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3 - 4 > 職種別 · 男女別勤勞者分布

性 別 \ 職 種		計	管理職	事務職	技術職	其 他
計	実数	2,000	100	647	1,122	131
	比率	100.0	5.0	32.4	56.1	6.6
男	実数	1,559	97	529	846	87
	比率	100.0	6.2	33.9	54.3	5.6
女	実数	441	3	118	276	44
	比率	100.0	0.7	26.8	62.5	10.0

혼인關係別 勤勞者 分布를 보면 <表 3 - 5>에서 보는바와 같이 全体標本 2,000名中 未婚이 696名으로 34.8%, 既婚이 1,269名으로 63.5%, 離婚이 13名으로 0.6% 死別 18名으로 0.9%, 其他가 0.2%로 나타나고 있다.

<表 3 - 5> 혼인關係別·男女別勤勞者分布

性 別 \ 혼인關係		計	未 婚	既 婚	離 婚	死 別	其 他
計	實 數	2,000	696	1,269	13	18	4
	比率(%)	100.0	34.8	63.5	0.6	0.9	0.2
男	實 數	1,559	592	953	4	7	3
	比率(%)	100.0	38.0	61.2	0.2	0.4	0.2
女	實 數	441	104	316	9	11	1
	比率(%)	100.0	23.6	71.7	2.0	2.5	0.2

第 2 節 勤勞者의 勤統年限

勤統年限의 研究는 勤勞者의 就業의 安定度와 企業의 安全性의 測定의 重要한 要素이며 年金保險制度의 被保險者 期間, 保險料 払入期間, 給与支給時期等の 算定에 必要 不可欠한 것이다.

우선 被保險對象 勤勞者를 몇 세부터 잡아야 할 것인가를 研究하기 爲하여 最初就業年齡을 보면 <表 3 - 6>과 같이 19세 未滿에 就業한 勤勞者數가 339名으로 16.9%, 19~20세가 416名으로 20.8% 21~22세가 195名으로 9.8% 23~24세 271名으로 13.5%, 25~26세가 349名으로 17.5%이며 27~28세 224名으로 11.2%, 29~30세가 105名으로 5.3%, 31세以上이 101名으로 5.0%로 나타나있다.

이를 男女別로 살펴보면 教育程度의 差異, 兵役義務, 結婚適齡期 等の 理由로 女子가 比較的 就業年齡이 낮음을 보여 주고 있다.

即 男子는 20세以下에 就業된 勤勞者가 28.9%인데 比해 女子는 76.0%로 全體의 半以上을 보이고 있으며, 男子는 兵役 義務時期인 21 - 22세가 9.8%로 낮아지다가 23~26세 사이가

<表 3 - 6> 男女別 最初就業年齡別分布

性別 \ 年齡別		計	19세미만	19-20	21-22	23-24	25-26	27-28	29-30	31세이상
計	實數	2,000	339	416	195	271	349	224	105	101
	比率(%)	100.0	16.9	20.8	9.8	13.5	17.5	11.2	5.3	5.0
男	實數	1,559	187	233	148	254	344	216	97	80
	比率(%)	100.0	12.0	14.9	9.5	16.3	22.1	13.9	6.2	5.1
女	實數	441	152	183	47	17	5	8	8	21
	比率(%)	100.0	34.5	41.5	10.7	3.8	1.1	1.8	1.8	4.8

31%의 높은 比率을 보이고, 女子는 21~24 14.5%
 25세 以上은 不過 9.5%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의 教
 育制度의 年齡에도 相當한 影響을 받는것으로 思料된다.

男女別 職場生活勤続年數를 보면 <表3-7>과 같이 最初就業
 年齡에 따라 職場生活年數의 差異를 보이며 年齡에 따라 經濟活
 動期間이 左右하게 된다.

4年以下가 897명으로 44.8%를 보이고 5~9年이 29.3%,
 10年以上이 25.9%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5~9年이 가장 높고 短期勤務者가 많은 數를 보이고
 있다.

<表3-7> 男女別 職場生活勤続年數別分布

年數 性別		計	1年 未滿	1	2	3	4	5~9	10-14	15-19	20年이상
計	實數	2,000	51	160	251	240	195	587	277	117	122
	比率(%)	100.0	2.5	8.0	12.5	12.0	9.8	29.3	13.9	5.9	6.1
男	實數	1,559	22	85	149	160	138	501	268	115	121
	比率(%)	100.0	1.4	5.4	9.5	10.3	8.9	32.1	17.2	7.4	7.8
女	實數	441	29	75	102	80	57	86	9	2	1
	比率(%)	100.0	6.6	17.0	23.1	18.1	13.0	19.5	2.0	0.5	0.2

男女別로 現在 在職하고 職場의 勤統年數를 보면 <表 3 - 8 >과같이 2,000名中 4年以下가 1,439名으로 71.9%를 차지하고 있으며 5~9年이 416名으로 20.8%이고, 10年以上은 7.3%인 145名에 不過하다.

이는 우리나라 勤勞者의 離職率이 높고 企業의 歷史가 짧은 理由로 因한 것이 아닌가 解釋된다.

<表 3 - 8 > 男女別 現職場勤統年數別分布

勤統年數 性別		計	1年 未滿	1	2	3	4	5-9	10-14	15-19	20年 以上
計	實數	2,000	108	353	397	338	243	416	114	25	6
	比率(%)	100.0	5.4	17.6	19.9	16.8	12.2	20.8	5.7	1.3	0.3
男	實數	1,559	60	237	290	277	184	370	111	24	6
	比率(%)	100.0	3.8	15.2	18.6	17.8	11.8	23.7	7.2	1.5	0.4
女	實數	441	48	116	107	61	59	46	3	1	0
	比率(%)	100.0	10.9	26.3	24.3	13.8	13.4	10.4	0.7	0.2	

転職経験이 있는 勤勞者는 全体 勤勞者 2,000名中 1,054名
 으로 52.7%로 半以上을 보여주고 이를 男女別로 보면 男子
 1,559名中 58.6%인 913名이, 女子는 441名중 32.0%
 141名으로 男子보다 女子가 転職經驗率이 相当히 낮음을 알 수
 있다. <表 3 - 9 참조>

<表 3 - 9> 男女別 転職有無別 勤勞者分布

性 別 転職有無	計		男		女	
	実 数	比率(%)	実 数	比率 (%)	実 数	比率 (%)
計	2,000	100.0	1,559	100.0	441	100.0
1) 있다	1,054	52.7	913	58.6	141	32.0
2) 없다	946	47.3	646	41.4	300	68.0

転職経験이 있는 勤勞者 1,054名에 對하여 前職場에서 몇年 이나 勤統하고 離職하였나를 살펴보면 <表3-10>에서와 같이 4年以下가 1,054名中 58.6%로 617名이고, 5~9年이 24.3% 10年以上이 17.1%를 보이고 있어, 대체로 5年未滿에 退職하는 率이 높고 5年이 넘으면 普通 10年까지 勤務하는 것이 一般的 추세이다.

그리고 男子 보다는 女子가 婚期 身體的 條件 等으로 短期間 職場生活을 하고 退職하는 境遇가 많다.

이는 被保險者 期間算定에 主要要素로 參考하여야 할것이다.

<表3-10> 前職場勤統年數別分布

勤統年度 性別		計	1年 未滿	1	2	3	4	5-9	10-14	15-19	20年 以上
計	實數	1,054	15	183	188	139	92	256	92	49	40
	比率(%)	100.0	1.4	17.4	17.8	13.3	8.7	24.3	8.7	4.6	3.8
男	實數	913	4	127	154	126	78	243	92	49	40
	比率(%)	100.0	0.4	13.9	16.9	13.8	8.5	26.6	10.1	5.4	4.4
女	實數	141	11	56	34	13	14	13	.	.	.
	比率(%)	100.0	7.8	39.7	24.2	9.2	9.9	9.2	.	.	.

以上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企業의 歷史가 짧고 企業의 安全性과, 勞動市場의 流動性으로 勤勞者의 長期的 勤務의 与件의 欠乏等으로 比較的 短期職場 勤統率이 높고 特히 男子보다는 女子가 더욱 이런 現象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政府의 企業安全性의 促進 勞動行政의 強化 勞動組合의 活動과 企業人들이 企業의 社会性を 認識하고 自發的으로 勤勞條件의 改善, 福祉施設의 扩充과 適正賃金の 支払等으로 勤勞者들의 長期勤統 与件이 增進되리라 予測된다.

第3節 勤勞者의 賃金現況

賃金の 勤勞者 生活의 基本要素이며 또한 生産能率 및 轉職 離職에 重要 影響을 주는 要素이다.

特히 年金保險制度의 導入에 있어서 財政의 重要な 源泉이 되는 寄与金 料率과 年金給与 水準 決定의 要素로서 重要 意義를 갖는다.

따라서 勤勞者의 賃金階層別로 本調査에서 集計된 事項을 分析 하기로 한다.

男女別 賃金階層別分布를 보면 <表3-11>에서 보면,

10,000 원 未滿의 賃金を 받는 勤勞者가 79名으로 4.0%,

20,000 원 未滿이 27.6%, 平均賃金 未達者가 30~40%에

達하고 平均賃金 階層인 20,000 ~ 29,999 원 까지가 28.6%로 가장 높고 다음이 30,000 원이상 40,000 원 未滿이 18.4%이고 40,000 원 以上은 21.1%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男女別로 보면 男子는 30,000 원 未滿이 50.3%인 데 비해 女子는 95.5%에 達해 男女別 賃金格差는 甚한 差異가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表 3 - 11 > 男女別 賃金階層別 分布

賃金階層 性別		計	10,000	10,000	15,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원미만	14,999	19,999	29,999	39,999	49,999	59,999	69,999	원이상
計	實數	2,000	79	197	355	573	374	213	91	57	61
	比率(%)	100.0	4.0	9.9	17.7	28.6	18.7	10.6	4.6	2.8	3.1
男	實數	1,559	15	64	209	495	362	208	89	57	60
	比率(%)	100.0	1.0	4.1	13.4	31.8	23.2	13.3	5.7	3.7	3.8
女	實數	441	64	133	146	78	12	5	2	.	1
	比率(%)	100.0	14.5	30.2	33.1	17.7	2.7	1.1	0.5	.	0.2

教育程度別 賃金階層別 <表 3 - 12 > 分布를 보면 30,000 원 未滿을 보면, 大卒이 14.1%, 高卒이 59.3%, 中卒이 75.6%, 国卒이 81.5% 等으로 나타나 學歷이 높을 수록 賃金水準이 높음을 알수 있으며 學歷別 最頻度 分布를 보면 밑줄친 부분과 같이 나타나 大体로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賃金이 높은 대우를 받음을 알 수 있다.

<表 3 - 12 > 教育程度別 賃金階層別勤勞者分布

	計		大 卒		高 卒		中 卒		国 卒		未 就 学	
	实数	比率	实数	比率	实数	比率	实数	比率	实数	比率	实数	比率
계	2,000	100.0	292	100.0	883	100.0	525	100.0	292	100.0	(8)	100.0
① 10000 원以上	79	4.0	2	0.7	12	1.3	40	7.6	24	8.2	1	12.5
② 10,000 ~ 14,999	197	9.9	1	0.3	59	6.7	86	16.4	51	17.5	-	-
③ 15,000 ~ 19,999	355	17.7	4	1.4	147	16.6	115	21.9	87	29.8	2	25.0
④ 20,000 ~ 29,999	573	28.6	34	11.7	306	34.7	156	29.7	76	26.0	1	12.5
⑤ 30,000 ~ 39,999	374	18.7	71	24.3	200	22.7	73	13.7	28	9.6	2	25.0
⑥ 40,000 ~ 49,999	213	10.6	69	23.6	90	10.2	35	6.6	18	6.2	1	12.5
⑦ 50,000 ~ 59,999	91	4.6	46	15.8	29	3.3	12	2.3	3	1.0	1	12.5
⑧ 60,000 ~ 69,999	57	2.8	27	9.2	25	2.8	3	0.6	2	0.7	-	-
⑨ 70,000 원以上	61	3.1	38	13.0	15	1.7	5	1.0	3	1.0	-	-

最初就業當時의 賃金階層別 分布를 보면 <表 3 -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00 원 未滿이 全体の 92.7%를 보이고 있으며 男子는 91.8% 女子는 99.3%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就業 最初賃金은 相當히 낮으며 年功序列에 따라 점점 上昇됨을 알 수 있다. <表 3 - 11 比較>

<表 3 - 13> 男女別 最初就業 賃金階層別分布

	計		男		女	
	實 數	比率(%)	實 數	比率(%)	實 數	比率(%)
計	2,000		1,559		441	
① 10,000 미만	889	44.4	609	39.1	280	63.5
② 10,000~14,999	353	17.6	246	15.8	107	24.3
③ 15,000~19,999	288	14.4	250	16.8	38	8.6
④ 20,000~29,999	326	16.3	313	20.1	13	2.9
⑤ 30,000~39,999	98	4.9	96	6.2	2	0.5
⑥ 40,000~49,999	27	1.4	27	1.7	-	-
⑦ 50,000~59,999	11	0.6	11	0.7	-	-
⑧ 60,000~69,999	4	0.2	4	0.2	-	-
⑨ 70,000 원 以上	4	0.2	3	0.2	1	0.2

教育程度別 最初就業賃金階層別 分布를 보면 <表 3 -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00 원 未滿을 살펴보면 大卒이 71.9%, 高卒이 94.3%, 中卒이 97.5% 国卒이 97.6%로 修習期間 동안이라도 教育程度가 높을 수록 賃金 水準이 높게 策定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며 大卒以上과 高卒以下의 最初賃金水準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表 3 - 14> 教育程度別最初就業賃金階層別勤勞者分布

	計		大 卒		高 卒		中 卒		国 卒		未 就 学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計	2,000	100.0	292	100.0	883	100.0	525	100.0	292	100.0	(8)	100.0
① 10,000원미만	889	44.4	54	18.5	322	36.5	290	55.2	218	74.7	5	62.5
② 10,000~ 14,999	353	17.6	26	8.9	199	22.5	85	16.2	40	13.7	3	37.5
③ 15,000~ 19,999	288	14.4	29	9.9	168	19.1	75	14.3	16	5.5	-	-
④ 20,000~ 29,999	326	16.3	101	34.6	152	17.2	62	11.8	11	3.7	-	-
⑤ 30,000~ 39,999	98	4.9	59	20.2	30	3.4	5	1.0	4	1.4	-	-
⑥ 40,000~ 49,999	27	1.4	11	3.8	8	0.9	7	1.3	1	0.3	-	-
⑦ 50,000~ 59,999	11	0.6	5	1.7	3	0.3	1	0.2	2	0.7	-	-
⑧ 60,000~ 69,999	4	0.2	3	1.0	1	0.1	-	-	-	-	-	-
⑨ 70,000원 이상	4	0.2	4	1.4	-	-	-	-	-	-	-	-

다음은 転職經驗이 있는 勤勞者의 退職當時 最終月賃金階層別 分布를 보면 最初就業賃金水準과 相當한 格差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即 <表 3 -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00 원 未滿이 78.9 %이고 男女는 75.8 %, 女子는 99.3 %로 나타나고 있으며 <表 3 - 13. 比較>

<表 3 - 15> 男女別前職場退職最終月賃金別 分布

	計		總 計			
			男		女	
計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① 10,000 원未滿	1,054	100.0	913	100.0	141	100.0
② 10,000 ~ 14,999	170	16.1	106	11.6	64	45.4
③ 15,000 ~ 19,999	173	16.4	128	14.0	45	31.9
④ 20,000 ~ 29,999	198	18.8	179	19.6	19	13.5
⑤ 30,000 ~ 39,999	291	27.6	279	30.6	12	8.5
⑥ 40,000 ~ 49,999	132	12.5	131	14.4	1	0.7
⑦ 50,000 ~ 59,999	43	4.1	43	4.7	-	-
⑧ 60,000 ~ 69,999	26	2.5	26	2.8	-	-
⑨ 70,000 원 以上	13	1.2	13	1.4	-	-
	8	0.8	8	0.9	-	-

教育程度別 前職場 退職 最終月 賃金階層別 分布를 보면

<表 3 - 16 > 에서와 같이 30,000 원 未滿이 大卒은 48.3% 高卒이 82.6%, 中卒이 88.4%, 国卒이 86.1%로 나타나고 있다.

<表 3 - 16 > 教育程度別前職場退職最終月賃金階層別分布

	計		大卒		高卒		中卒		国卒		未就学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計	1,054	100.0	170	100.0	484	100.0	275	100.0	122	100.0	3	100.0
① 10,000 원 미만	170	16.1	11	6.5	70	14.4	54	19.6	35	28.7	-	-
② 10,000 ~ 14,999	173	16.4	9	5.3	88	18.2	59	21.5	17	13.9	-	-
③ 15,000 ~ 19,999	198	18.8	12	7.1	103	21.3	68	22.9	20	16.4	-	-
④ 20,000 ~ 29,999	291	27.6	50	29.4	139	28.7	67	24.4	33	27.1	2	66.7
⑤ 30,000 ~ 39,999	132	12.5	44	25.9	54	11.2	20	7.3	13	10.7	1	33.3
⑥ 40,000 ~ 49,999	43	4.1	18	10.6	15	3.1	8	2.9	2	1.6	-	-
⑦ 50,000 ~ 59,999	26	2.5	13	7.6	9	1.9	2	0.7	2	1.6	-	-
⑧ 60,000 ~ 69,999	13	1.2	7	4.1	4	0.8	2	0.7	.	-	-	-
⑨ 70,000 원 이상	8	0.8	6	3.5	2	0.4	0	-	.	-	-	-

以上에서의 分析 結果 30,000 원 未滿階層이 相当히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으며 男子보다는 女子가 賃金水準이 낮으며 最初 就業當時의 賃金は 転職當時의 最終月賃金에 比하여 엄청난 格差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男女別 未支払賃金別分布를 보면 <表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体·2,000名中 123名으로 6.2%가 賃金を 못받은 경우가 있으며 이들중 1개월치 못받은 勤勞者가 70名으로 가장 높음을 男女別로도 못받은者의 比率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勞働行政의 強化 事業所得水準의 向上等으로 현저히 좋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觀望된다.

<表3-17> 男女別 未払賃金別 分布

		計		男		女	
		實數	比率(%)	實數	比率(%)	實數	比率(%)
計		2,000	100.0	1,559	100.0	441	100.0
있 다	計	123	6.2	97	6.2	26	5.9
	1) 한달치	70	3.5	53	3.4	17	3.9
	2) 두달치	32	1.6	24	1.5	8	1.8
	3) 세달치	13	0.7	12	0.8	1	0.2
	4) 그이상	8	0.4	8	0.5	.	.
없 다		1,877	93.8	1,462	93.8	415	94.1

第 4 節 勤勞者の 轉職 및 障害狀況

本調査研究에서의 轉職은 前職場에서 離職, 退職 解雇等으로 因한 理由로 職場을 바꾼 事項을 中心으로 研究分析하였다.

現在 在職하고 있는 職場以前에 他職場에 있었던 勤勞者는 2,000名中 1,054名인 52.7%이며, 特히 男子가 女子보다 높으며 轉職率은 各各 58.6% 32.0%로 나타난다.

年齡階層別 轉職有無를 보면 <表 3 -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年齡이 많을수록 轉職經驗이 높은 것을 알수 있다.

<表 3 - 18> 年齡階層別轉職有無別分布

		總 計	合 計					
			20才未滿	20-29	30-39	40-49	50-59	60才以上
計	実数	2,000	64	847	828	221	37	3
	比率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① 있다	実数	1,054	14	333	499	174	32	2
	比率	52.7	21.9	39.3	60.3	78.7	86.3	66.7
② 없다	実数	946	50	514	329	47	5	1
	比率	47.3	78.1	60.7	39.7	21.3	13.5	33.3

即 30 세 未滿은 轉職經驗이 40 % 未滿을 보이나 30 代가 60.3 % 40 代가 78.7 % 50 代가 86.3 %를 보이고 있다.

이를 教育程度別 分布는 <表 3 - 1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体的으로 轉職關係에 教育程度와 關係가 없는듯 하나 그래도 教育程度가 높은 경우가 就業의 機會가 많고 또한 職場에 對한 滿足度 等に 心理的 影響을 받는 높은 便이다.

即 大卒이 58.2 % 高卒이 54.8 % 中卒이 52.4 % 国卒이 41.8 %를 보여 주고 있다.

<表 3 - 19 > 教育程度別・轉職有無別 分布

		計	大 卒	高 卒	中 卒	国 卒	未就学
計	実数	2,000	292	883	525	292	8
	比率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① 있다	実数	1,054	170	484	275	122	3
	比率	52.7	58.2	54.8	42.4	41.8	37.5
② 없다	実数	946	122	399	250	170	5
	比率	47.3	41.8	45.2	47.6	58.2	62.5

다음은 轉職者들의 轉職理由別分布를 보면 <表 3 - 20 > 과 같이 1,054 名의 轉職經驗者中 첫째로 賃金이 적어서 退職한 者가 317 名으로 30.1 %이고 둘째로 退職後 生活保障이 없어서가 9.8 %로 103 名이 셋째로 福祉施設의 未備로가 70 名으로 6.6 %에 해당하며 作業量 關係는 6.0 %로 63 名이고 其他가 상당히 높은 47.5 %인 501 名으로 나타났다.

<表 3 - 20 > 男女別 轉職理由別 分布

	計		男		女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計	1,054	100.0	913	100.0	141	100.0
① 賃金이 적어서	317	30.1	265	29.0	52	36.9
② 作業量이 過重해서	63	6.0	49	5.4	14	9.9
③ 退職後 生活保障이 없어서	103	9.8	86	9.4	17	12.1
④ 福祉施設의 不充分	70	6.6	58	6.4	12	8.5
⑤ 其他	501	47.5	455	49.8	46	32.6

이를 男女別로 分析하여 보면 賃金關係로 因한 転職은 男子가 29.0 女子가 36.9 %로 나와 있고 其他部分은 男子가 49.8 女子가 32.6 %로 되어 있어 男子가 높다.

教育程度別 転職理由를 보면 <表-21>과 같이 賃金を 理由로 삼는 경우 大卒은 20.0 % 高卒은 29.3 % 中卒은 35.7 % 国卒이 33.6 %로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높으며 相對的으로 其他部分이 減少卒을 보이고 있다.

<表 3 - 21> 教育程度別・転職理由別 分布

	計		大 卒		高 卒		中 卒		国 卒		未就学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実数	比率
計	1,054	100.0	170	100.0	484	100.0	275	100.0	122	100.0	3	100.0
① 賃金が 적어서	317	30.1	34	20.0	142	29.3	98	35.7	41	33.6	2	66.7
② 作業량이 過重하고 危險해서	63	6.0	9	5.3	25	5.2	21	7.6	8	6.6	-	-
③ 退職後 生活保障이 없어서	103	9.8	14	8.2	47	9.7	27	9.8	14	11.5	1	33.3
④ 福祉施設의 不充分	70	6.6	4	2.4	33	6.8	21	7.6	12	9.8	-	-
⑤ 其 他	501	47.5	109	64.1	237	49.0	108	39.3	47	38.5	-	-

다음은 障害로 인한 休職有無를 分析하여 보면 障害로 인해 1回以上 休職經驗이 있었던 勤勞者가 2,000名中 94名으로 不過 4.7%에 해당하며, 職種別 障害休職을 보면 管理職은 管理職 全体의 4%, 事務職이 2.8% 技術職이 5.7%, 其他가 6.1%를 보이고 있어 事務職보다는 技術職이 障害로 인한 休職率이 높음을 알 수 있다.

障害休職發生件數別 分布를 보면 <表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4名の 障害經驗이 있는 勤勞者中 1回の 經驗있는者가 64名으로 68.1%, 2회가 20名으로 21.3%, 3회가 4.3% 普通 1回 程度의 障害經驗이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表3-22> 障害休職發生件數別 勤勞者分布

	計	1回	2回	3回	4回	5回	6回	7回 以上	無応答
実数	94	64	20	4	2	2	.	.	2
比率	100.0	68.1	21.3	4.3	2.1	2.1	.	.	2.1

또한 이를 障害에 因한 休職日數別 分布를 보면 <表3 - 23> 에서와 같이 障害日數가 1個月以上인 境遇가 51名으로 半以上 이 되는 54.3%의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10日~19日이 15名으로 16.0%, 그다음이 20~29日로 12.8%를 보이고 있어 障害가 發生하면 休職期間이 長期임을 보여 주고 있다.

<表3 - 23> 障害休職總日數別 勤勞者分布

	計	1日 - 4日	5 - 9	10-19	20-29	1個月 以 上	無 応 答
実 數	94	4	8	15	12	51	4
比率(%)	100.0	4.2	8.5	16.0	12.8	54.3	4.2

第 5 節 勤勞者의 家計収支 現況

勤勞者의 家計収支는 勤勞者의 生活程度 所得水準 消費水準 및 年金保險制度 樹立上에 따르는 各種 Data를 얻는데 重要한 要素가 된다.

經濟企劃院의 都市家計調査 報告書에 依하면 全都市 勤勞者 家口의 1971年의 年平均 所得은 37,660 원으로 前年에 比하여

5,890 원, 5年前인 66년에 比해서는 24,210 원이 각각 增加되었다.

<表 3 - 24 >에 依하면 勤勞者 家口当人員도 1966년에 5.47 人에 比해 1971年은 5.28 로 줄어든 대신 家口当 就業人員은 上昇하였다.

이는 家族制度의 核家族化와 就業率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相對的으로 勤勞者의 所得水準의 向上으로 生活이 점점 나아지고 있음을 証明하는 것으로 解釈된다.

<表 3 - 24 > 家口当 月平均家計收支

年度別	家口当人員	家口当就業人員	所 得	支 出
1966	5.47	1.25	13,460	13,100
1967	5.46	1.29	20,720	19,980
1968	5.44	1.31	23,830	23,310
1969	5.42	1.31	27,800	27,020
1970	5.34	1.33	31,770	30,300
1971	5.28	1.33	37,660	34,810

資料: 韓國統計年鑑, 1972年 經濟企劃院刊

全都市 勤勞者家口의 消費支出 構成比를 年度別로 보면 <表 3 - 26>와 같이 食料品費가 가장높아 1966年 49.5%이고 1971年은 41.4%로 나타나 점점 食料品費가 차지하는 比率이 낮아지고 있으며 反對로 雜費가 높아져 保健, 文化費 娛樂費等의 比率이 높아져 生活水準의 相當한 向上이 있었음이 엿 보인다.

<表 3 - 26> 全都市 勤勞者家口의 消費支出構成比

	1966		1969		1970		1971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金額	比率(%)
消費支出	12,660	100.0	25,260	100.0	28,290	100.0	32,520	100.0
食料品費	6,270	49.5	10,320	40.9	11,480	40.6	13,460	41.4
住居費	2,110	16.7	4,570	18.1	5,150	18.2	5,950	18.3
光熱費	780	6.2	1,270	5.0	1,630	5.8	1,810	5.5
被服費	1,010	8.0	2,830	11.4	2,980	10.5	3,240	10.0
雜費	2,490	19.6	6,220	24.6	7,050	24.9	8,060	24.8

資料： 韓國統計年鑑 1972年 . 經濟企劃院刊

全都市 勤勞者 家口当家口員數別 月平均 家計收支는 <表 3 - 27 >

과 같이 平均인 37,660 원이고 이를 100 으로 본 指數는
所得과 支出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趨勢이고 家口員數가 많을수
록 所得과 支出이 많음을 알 수 있다.

<表 3 - 27 > 全都市勤勞者家口当家口員數別月平均家計收支

1971年현재

	所 得		支 出	
	金 額	指 數	金 額	指 數
平 均	37,660	100.0	34,810	100.0
2 人	24,980	66.3	22,300	64.1
3	29,620	78.7	26,920	77.3
4	31,760	84.3	29,450	84.6
5	36,410	96.7	33,530	96.3
6	40,830	108.4	38,720	111.2
7	46,320	123.0	42,180	121.2
8	47,950	127.3	44,000	126.4
9人以上	54,580	144.9	50,160	144.1

資料: 韓國統計年鑑, 1972年, 經濟企劃院刊

本調査 結果에서는 家口員数別 勤勞者分布를 보면 <表3 - 28 >에 依하면 5人家口가 405名으로 全体의 20.2%로 가장 높고 다음이 4人家口로 17.4%이고 세째가 6人家口로 15.9%이고 8人家口가 14.9% 상당히 높은 比率을 보여주고 있다.

<表3 - 28 > 家口員数別 勤勞者分布

	計		總		計	
	実 数	比率	男		女	
			実 数	比率	実 数	比率
計	2,000	100.0	559	100.0	441	100.0
① 1 名	38	1.9	29	1.9	9	2.1
② 2 "	102	5.1	86	5.5	16	3.6
③ 3 "	242	12.1	207	13.3	35	7.9
④ 4 "	347	17.4	295	18.9	52	11.8
⑤ 5 "	405	20.2	327	21.0	78	17.7
⑥ 6 "	317	15.9	232	14.9	85	19.3
⑦ 7 "	251	12.5	172	11.0	79	17.9
⑧ 8名以上	298	14.9	211	13.5	87	19.7

家口員數中 就業勤勞者分布를 보면 <表3 - 29>에서 보는 바
 와 같이 1人就業家口가 60.4%인 1,208名이고, 2人이 566
 名으로 28.3%로 나타나고 그 以上の 就業家口는 少数인 것이
 다. 男子는 1人이 71.3%, 2人이 20.3%, 가장 높고
 女子는 特히 2人就業 家口가 가장높아 56.5%로 男女의 差異
 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男子 就業者가 主所得源으로 解釈된다.

<表3 - 29> 就業勤勞者 分布

	計		男		女	
	實 數	比率	實 數	比率	實 數	比率
計	2,000	100.0	1,559	100.0	441	100.0
① 1 人	1,208	60.4	1,111	71.3	97	22.0
② 2	566	28.3	317	20.3	249	56.5
③ 3	157	7.8	91	5.8	66	14.9
④ 4	48	2.4	30	1.9	18	4.1
⑤ 5	12	0.6	6	0.4	6	1.4
⑥ 6人以上	9	0.5	4	0.3	5	1.1

다음은 家計收入別 勤勞者分布를 보면 <表3 - 30>에서와 같이 都市家計調査報告書에서 言及한 것과 같이 月平均 家計收支 37,660 원의 階層에 屬하는 30,000 원 階層이 22.1%의 最頻度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20,000 원 階層으로 19.3%를 보이고 세째번이 40,000 원 階層으로 17.9%를 보이고 있다.

<表3 - 30> 家計收入別勤勞者分布

	計	10,000 원미만	10,000 ~ 19,999	20,000 ~ 29,999	30,000 ~ 39,999	40,000 ~ 49,999	50,000 ~ 59,999	60,000 ~ 69,999	70,000 ~ 79,999	80,000 ~ 89,999
實數	2,000	8	147	385	442	357	227	156	77	201
比率(%)	100.0	0.4	7.3	19.3	22.1	17.9	11.3	7.8	3.8	10.1

家計支出別 勤勞者分布를 보면 <表 3 -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00 원에서 39,000 원 階層이 26.1%로 가장 많고, 20,000 ~ 29,000 원이 25.9%로 다음이 40,000 ~ 49,000 원線이 15.6%로 나타나고 그외는 10% 以内의 頻度를 보이고 있다.

<表 3 - 31> 家計支出別 勤勞者分布

	計	10,000 원미만	10,000 ~ 19,999	20,000 ~ 29,999	30,000 ~ 39,999	40,000 ~ 49,999	50,000 ~ 59,999	60,000 ~ 69,999	70,000 ~ 79,999	80,000 ~ 이상
實 數	2,000	20	201	518	523	312	172	80	58	116
比率(%)	100.0	1.0	10.1	25.9	26.1	15.6	8.6	4.0	2.9	5.8

또한 年金保險制度의 實施를 前提로한 國民貯蓄 能力을 分析하
 여 보면 勤勞者 貯蓄額別 分布는 2,000名의 勤勞者中 709名
 인 35.4%가 無貯蓄勤勞者로 나타나고 있으며 貯蓄을 하고 있
 는 勤勞者 1,291名의 貯蓄額別 分布를 보면 <表3-32>에서
 와 같이 10,000원 未滿이 622名으로 48.2%로 最頻度를 보
 이고 다음이 10,000원 階層으로 31.1% 20,000원 階層이
 12.4%로 12.4%이고 그外는 5% 未滿을 보이고 있다.

<表3-32> 家計 貯蓄別 勤勞者分布

	計	10,000 원미만	10,000 ~ 19,999	20,000 ~ 29,999	30,000 ~ 39,999	40,000 ~ 49,999	50,000 ~ 59,999	60,000 ~ 69,999	70,000 ~ 79,999	80,000 원이상
實數	1,291	622	402	160	50	22	29	2	1	3
比率(%)	100.0	48.2	31.1	12.4	3.9	1.7	2.2	0.2	0.1	0.2

貯蓄方法別 分布를 보면 <表 3 - 3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銀行利用率이 가장높은 50.2% 契가 29.0%, 其他 保險 順序로 나타 나며 男女別勤勞者 分布도 方法의 順位는 大同小異 한 便이나 女子가 男子보다 契의 利用率이 높은 便이다.

이를 보면 安全性에 貯蓄方法을 依存하는 傾向이다.

<表 3 - 33 > 男女別 貯蓄方法別 勤勞者分布

		計	銀行	保險	契	其他
總計	實數	1,291	648	119	374	150
	比率	100.0	50.2	9.2	29.0	11.6
男	實數	975	498	99	269	109
	比率	100.0	51.1	10.1	27.6	11.2
女	實數	316	150	20	105	41
	比率	100.0	47.5	6.3	33.2	13.0

第 6 節 退職後 生計對策에 關한 意識動向

停年退職年齡의 規定은 時間的 年齡과 生物學的 年齡의 測面에서 決定하는 것이 一般的 傾向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4~60세 階層을 經濟活動年齡으로 보고 있어 實質적으로 60세 以上은 經濟活動停年 年齡으로 간주되고 있다.

本調査의 結果에 依하면 一般企業에서는 普通 55세를 停年退職 年齡으로 規定되어 있으며 公務員停年退職年齡은 一般的으로 60세 線에 이르고 있다.

특히 現在는 科學的인 醫藥技術의 發達과 環境衛生 및 營養水準의 質的向上과 改善으로 國民의 平均壽命은 急激한 上昇을 보이고 있다.

<表 3 - 34 >에 依하면 平均壽命이 1940年代에 46.8세 1961년에는 57.5세로, 1971년에는 65.9세, 1981년에는 69.9세가 될 것으로 推定되어, 60年代에 比해서 約 20세나 연장될 것으로 思料된다.

<表 3 - 34 > 平 均 壽 命

年 度	平 均	男 子	女 子
1938 ~ 1948	46.8	44.5	49.0
1955 ~ 1960	52.6	51.1	53.7
1961	57.5	54.5	60.6
1966	61.9	59.7	64.1
1971	65.9	63.7	68.1
1976	68.4	66.2	70.6
1981	69.9	67.2	72.1

資料 : 主要統計 1971 . 經濟企劃院刊.

따라서 老後의 生計問題는 人口의 都市集中과 大家族制度에서 核家族制度의 發達等으로 老後의 安定된 生活을 維持하기 爲한 各種 施策이 要求되고 있다.

年度別 老齡人口의 增加趨勢를 보면 <表 3 -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2年에 60세以上 老齡人口는 183만으로 總人口에 對한 構成比率이 5.5%이던 것이 1981年은 243만명으로 人口數로 40만명이 增加되어 老齡人口의 構成比率은 6.1%로 約 0.6%의 上昇을 보이고 있다.

<表 3 - 35> 老齡人口의 推定

年度別	總人口	老齡人口 (60세以上)	總人口에對한 構成比率 (%)	指 數
1972	33,167,144	1,830,460	5.5	100.0
73	33,863,640	1,885,426	5.6	103.0
74	34,560,136	1,940,389	5.6	106.0
75	35,256,632	1,995,355	5.7	109.0
76	35,953,128	2,050,318	5.7	112.0
77	36,719,491	2,126,533	5.8	116.2
78	37,485,852	2,202,749	5.9	120.3
79	38,252,212	2,278,962	6.0	124.5
80	39,018,572	2,355,178	6.0	128.7
81	39,784,935	2,431,393	6.1	132.8

資料： 韓國統計年鑑 . 1971 . 經濟企劃院刊을 參考로 計算한 數值임.

이는 1972年을 基準으로 하여 老齡人口數의 增加 趨勢는 1976年에는 12.0%의 上昇率을 1981年에는 32.8%의 높은 上昇을 보여 10年間의 平均 年間 上昇率은 3.2%의 높은 率을 보이고 있어 더욱 老人問題의 對策이 要淸되고 있음이 立証되고 있다.

本調査 結果에 依하면 老後나 扶養責任에 關한 見解는 <表3-36>에서와 같이 本人스스로 責任을 지우는 傾向이 높아 76.0%를 보이고 子女에게 依支한다는 境遇가 6.8%, 政府에게 依存하는 경우가 9.4%로 상당히 높으며 其他가 7.8%를 보이고 있다.

<表3-36> 男女別 扶養責任에 關한 見解

	總 計		男 子		女 子	
	實 數	比 率	實 數	比 率	實 數	比 率
計	2,000	100.0	1,559	100.0	441	100.0
本 人	1,519	76.0	1,286	82.5	223	52.8
子 女	136	6.8	104	6.7	32	7.2
政 府	188	9.4	122	7.8	66	15.1
其 他	157	7.8	47	3.0	110	24.9

또한 이는 男女間의 見解는 相當한 差異를 보이고 있어, 本人이 責任적야 하는 境遇, 男子는 82.5%인 反面 女子는 52.8%를 보이고 政府에 依存한다는 見解가 男子는 7.8%인 反面 女子는 15.1%를 보이고 있어 男子보다는 女子가 他人이나 國家에 依存하는 傾向이 높음을 볼 수 있다.

男女別 退職後 生計에 關한 見解를 보면 <表-37>에서 보는 바와같이 勞動力이 있는데 까지 勞動하겠다는 勤勞者가 78.3%가 가장 높고 貯蓄 退職金에 依存한다는 勤勞者가 15.3%를 보이고 있다.

<表 3 - 37> - 男女別 退職後 生計에 關한 見解

	總 計		男 子		女 子	
	實 數	比 率	實數	比率	實 數	比率
計	2,000	100.0	1,559	100.0	441	100.0
子女에게 依支	70	3.5	38	2.4	32	7.3
勞動力이 있을때까지 勞動	1,566	78.3	1,236	79.3	330	74.8
貯蓄 및 退職金 依存	305	15.3	240	15.4	65	14.7
養老院에 들어간다	59	2.9	45	2.9	14	3.2

養老年金制度樹立에 關한 見解를 보면 <表3 - 38>에서와 같이 必要하다고 하는 경우 76.3%, 男子는 76.2% 女子가 76.6%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率이 높으며 內容的으로 보면 必要없다고 하는 境遇는 Inflation 物價의 變動等을 相當히 意識하고 있었으며 特히 女子의 境遇는 結婚을 하게되면 職場을 그만 두는 데 相當한 意識의 變化를 보이고 있다.

<表3 - 38> 男女別養老年金制度樹立에 關한 見解

	總 計		男 子		女 子	
	實 數	比 率	實 數	比 率	實 數	比 率
計	2,000	100.0	1,559	100.0	441	100.0
必要하다	1,526	76.3	1,188	76.2	338	76.6
必要없다	474	23.7	371	23.8	103	23.4

〈表 3 - 39〉에 依하면 養老年金制度 反對理由別分布는 月給이나 實質受領額이 적어서 反對하는 者가 67.5%, 또한 年金이나 年金制度에 對한 不信이 21.3%로 나타나고 있으며 男女別 見解는 相當한 差異가 있어 月給이나 實質受領額이 적어서라는 理由가 男子는 72.5% 女子는 49.5% 年金保險制度의 不信의 境遇 男子가 14.8% 女子가 44.7%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研究의 結果로 보아 國家責任下에 老齡人口에 對한 積極的인 施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表 3 - 39〉 男女別 養老年金制度樹立의 反對理由別分布

	總 計		男 子		女 子	
	實 數	比 率	實數	比率	實數	比率
計	474	100.0	371	100.0	103	100.0
月給이나 實質受領額이 적어서	320	67.5	269	72.5	51	49.5
年金, 保險制度를 만들수가 없어서	101	21.3	55	14.8	46	44.7
其 他	53	11.2	47	12.7	6	5.8

第4章 各国의 年金保險 制度

第1節 各国의 年金保險 發展動向

社会保障의 各種 制度中 社会保險制度를 實施하고 있는 나라는 125 個國家이다. <表4-1> 그중에서도 所得保障의 基本的 計劃 方案인 年金保險 制度 即 老齡 廢疾 死亡에 따른 遺族 保障計劃을 導入 實施하고 있는 나라는 U.N會員國 133 國中 101 個國에 이르고 있으며 大陸別로 보면 아세아 및 오세아니아 地域이 26 個國에 12 個國만 導入 實施하므로써 46.2%로 <表4-2> 가장 不振한 實態이고 歐州地域 國家는 20世紀 初 半에 거의 導入 立法化 하였으나 1930年 및 1940年代에는 101 個國中 거의 半數에 該當하는 國家가 制度를 導入 實施하고 있다. ¹⁾

<表4-1> 社会保障制度保有國家數現況

区 分 \ 年 度	1940	1949	1958	1969	1971
各種 制度의 總數	57	58	80	123	125
老齡 廢疾 遺族保險	33	44	58	87	101
醫療 出產保險	24	36	59	59	68
產 災 保 險	57	57	77	120	122
失 業 保 險	21	22	26	34	34
家 族 手 當	7	27	38	62	63

<表 4 - 2> 大陸別社会保険制度保有国現況

大 陸 別	U . N 国家数	実 施 国 家	比 率
西 欧	19	19	100 %
北 美	3	3	100 "
中 東	12	9	75 "
美州 및 Caribbean	23	22	95.7 "
아 프 리 카	41	27	65.9 "
아세아 및 오세아니아	26	12	46.2 "
東 欧	9	9	100 "
計	133	101	76 "

資料: Social security programmes throughout the world,
 1971,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P. Xi - Xiii.

또한 1960년에는 많은 新生国 및 開發 途上国들이 導入 實施하고 있으며 <表 4 - 3> 年金保險(老齡 廢疾 遺族) 方案中에서도 公務員 退職 年金 制度等 特定 制度의 制限된 部分만 制度化하거나 全혀 導入하지 않고 있는 國家는 우리나라를 包含하여 26 個国에 達하고 있다. <表 4 - 4>

<表 4 - 3> 1960 年代 制度導入国現況

年 度	制 度 · 導 入 国 名
1960	구이나라, 아이보리코스트, 우과볼타
1961	나이제리아
1962	알제리, 부룬디, 부라자빌콩고, 말리, 사우디아라비아
1963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본, 네바논
1964	탄자니아
1965	나이제리아, 하이티, 쾰냐, 잠비아, 간
1966	바바도스, 베네주엘라
1967	우간다 말리타니아
1968	토고
1969	카메룬 구아테말라 말타카시공화국
1970	다호메이

<表 4 - 4 > 年金保險未導入國現況

韓國, 버마, 차-드, 크메르, 월남, 시에라레온, 소말리아, 모리샤스
西사모아, 라오스, 에치오피아, 수단, 잠비아, 리베리아, 스와지랜드
혼두라스, 말라위, 태국, 인도네시아, 요르단, 파키스탄, 튀니시아
세네갈, 아프가니스탄, 보츠와나, 나우루

資料: U.S.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1,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PP. 1-249

또한 各國의 社會保障을 爲해 投下되는 政府財政 및 總基金은
그나라 社會保障程度를 評價하는 重要한 指標가 되는바 社會保障
制度가 가장 먼저 始作되고 發達한 歐州 및 美州等の 先進
工業國들은 國民所得 對備 社會保障費가 10% 내지 20%를
上廻하고 있는 反面 新生國 및 開發途上의 大部分의 國家들은
4% 내지 1%를 若干 上廻하는 程度이며 <表 4 - 5 > 中進
國 集團에 屬하는 國家들은 3% 내지 8% 内外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의 1970年 社會保障費²⁾ 1.2% 보다는 훨씬
높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表 4 - 6 >

다음은 다섯나라의 年金保險 制度를 調査한것으로 制度의 特性
에 따라 우리制度 樹立에 必要한 要因들을 一瞥해 본다.

<表4 - 5> 各国의 国民所得对比 · 社会保障費

(单位 : 백만各国 通貨单位)

国 (通貨单位)	国民所得		社会保障費		国民所得对比 社会保障費	
	1960	1963	1960	1963	1960	1963
유 럽 주						
스웨덴 (크로네)	57,284	72,490	7,721.7	11,037.0	13.4	15.2
노웨이 (크로네)	24,680	30,872	2,946.1	4,264.5	11.9	13.8
핀란드 (마르크)	12,452	16,408	1,341.9	1,948.9	10.8	11.8
덴마크 (크로네)	30,715	41,304	4,071.0	6,126.2	13.3	14.8
오스트리아 (실링)	125,000	152,600	21,158	31,710	16.9	20.8
스위스 (프랑)	31,285	42,320	2,597.8	3,712.7	8.3	8.8
영국 (파운드)	20,835	24,680	2,883	3,406	13.8	13.8
서독 (마르크)	229,800	288,200	44,309	57,577	19.3	20.0
벨기에 (프랑)	458,300	551,900	77,160.0	96,428.3	16.8	17.5
네델란드 (길다)	35,149	42,560	4,408.5	6,627.4	12.5	15.6
프랑스 (프랑)	227,000	299,600	37,665.8	57,668.2	16.6	19.2
이태리 (리라)	15,62,000	22,193,000	2,390,622	3,630,766	15.2	16.4
스페인 (페세타)	527,300	821,700	20,874	32,850	4.0	4.0
포르투갈 (에스쿠도)	60,345	74,407	3,119.4	3,571.5	5.3	4.7
폴란드 (즈로티)	375,500	460,100	33,288	43,001.1	8.9	9.3
체코 (코로나)	163,000	172,900	24,739	28,901	15.2	16.7

国 (通貨單位)	国民所得		社会 保障 費		国民所得对比 社会保障費	
	1960	1963	1960	1963	1960	1963
유고 (리날)	2,887,000	4,580,000	309,163	481,415	10.7	10.5
북아메리카						
캐나다 (달러)	27,380	30,521	3,404.8	3,963.2	12.4	13.0
미국 (달러)	417,100	484,300	28,975	37,023	6.9	7.7
멕시코 (페소)	147,800	173,800	2,343.97	3,493.19	1.6	2.0
남아메리카						
베네즈엘라 (버리발)	19,294	22,364	584.04	642.25	2.8	2.9
컬럼비아 (페소)	25,102	35,533	434.59	792.48	1.7	2.2
아시아주						
일본 (원)	13,009,100	19,980,800	659,650	1,127,560	5.1	5.6
대만 (대만달러)	48,008	51,544	734.8	1,048.2	1.5	2.0
필리핀 (페소)	10,604	14,776	123.50	130.47	1.2	0.9
인도 (루비)	141,400	154,000	2,054.9	2,507.6	1.8	1.6
터어키 (리라)	44,359	59,056	599.0	938.1	1.5	1.6
이스라엘 (이스라엘파운드)	3,475	6,107	277.1	364.2	8.0	6.0
말레이시아연방 (말레이 리아달러)	4,709	5,423	171.36	187.75	3.6	3.5
아프리카주						
가나 (가나파운드)	473	595	6.14	4.86	1.3	0.8
오세아니아 주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랄 리아달러)	5,794	7,214	548.9	702.6	9.5	9.7
뉴지랜드 (뉴지랜드달러)	1,121	1,253	159.6	173.4	14.2	13.8
소련 (루블)	145,000	168,800	14,729	17,241	10.2	10.2

資料: ILO. The Cost of Social Security(1961-1963)

<表 4 - 6 >

社会保障費의 中進国对比

国家名	G.N.P(1人当)	N.I(1人当)	給与比(消費 에 대한比率)	社会保障比의收 支(G.N.P.에 대한比率)
韩国 1966	130.8	114.3	1.5	1.0
1970	223	198	2.5	1.2
브라질	291	232	6.5	7.5
버마	69	59	0.9 (1964)	1.0
세이론	154	134	3.7	4.4
대만	245	199	1.5	1.2
콜롬비아	307	256	1.4	1.5
파테말라	299	265	2.1	2.0
일본	1,027	820	8.3	8.2
멕시코	493	446	2.9	3.0
파라과이	320	191	2.0	2.8
폴투갈	441	381	5.5	7.3
시리아	-	184	0.9	2.3
터키	147	123	1.7	3.1
우르과이	664	552	7.8	8.1

註 1. G.N.P. N.I 는 經濟企劃院 資料

2. 給与費 및 社会保障費項은 I.L.O. 刊 社会保障費 1972. Geneva.

3. 韓國의 給与費 比率은 社会保障費(公務員 및 軍人年金歲出 + 援護特別會計 + 保健社会部 予算)에 民間消費支出比率로 計算함.

4. 各國은 1966年 資料임.

第 2 節 英國의 年金保險 制度

英國의 現行 社會保障制度는 資本制 社會에 있어서 하나의 典型的인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것은 1942年의 Sir. William Beveridge Report 를 基礎로한 國民保險制度, 家族手当制度, 國民扶助制度와 國民保健 서비스制度로 構成된 抱括적이고 統合인 制度로 이루어 지고 있다. ³⁾ 또한 이들 各制度中 가장 中核을 이루고 있는 것은 National Insurance Act 에 의한 國民保險制度인데 英國 年金保險制度 導入 現況을 살펴 보면 最初 立法으로 1908年의 養老年金法, 1911年의 廢疾保險法, 1925年의 養老 및 遺族保險法을 들수 있고 現行의 國民保險法은 1965年에 制定되어 1966年의 補充給與法과 1969年의 거출 및 給付法에 의하여 補完되는 社會保險 體制로서 實施되고 있다.

그 適用範圍를 보면 英國에 居住하는 모든 國民을 對象으로 하고 있으나 既婚女子, 自營者 그리고 年間 312 파운드(1 Pound 는 美貨 2.42 \$에 해당) 以下の 所得非被傭者에게는 選擇할수 있는 任意 規定을 두고 있으며 料率에 의한 比例年金(Graduated Provision)은 週當 9 파운드 以上 賃金 勤勞者에게만 適用하고 있다.

國民年金 基金은 三要齟出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며 被保險者는 첫째 雇傭者인 경우 週當 男子 0.68 파운드(女子 0.59 파운드)에 週賃金 所得 9~18 파운드의 4.75% 또는 週賃金所得

18~30 파운드의 3.25%를 加算(日雇勤勞者 男子 0.8 파운드, 女子 0.672 파운드에 週賃金 9~18 파운드의 0.5%나 18~30 파운드의 3.25%를 加算)한 金額이며, 둘째 自營者인 경우는 男子 1,073 파운드와 女子 0.897 파운드 셋째 非被傭者는 男子 0.823 파운드, 女子 0.65 파운드의 一定額을 寄與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使用主는 適當 男子 0.75 파운드 女子 0.654 파운드에 9~18 파운드의 週賃金の 3.25%를 負擔한다. (日雇 勤勞者 에게 는 男子 0.87 파운드 女子 0.730 파운드에 9~18 파운드의 週賃金の 0.5% 或은 18~30 파운드의 3.25% 負擔)

또한 政府는 上記한 均一賦出金(Flat Contribution)에 對한 總額의 25%(自營者 및 非被傭者 賦出金の 33 1/3%)와 一時金 補助(Lump-Sum Subsidy) 그리고 所得調査年金(Income-tested Pension)의 全費用을 負擔하고 上記한 均一政府賦出은 均一傷病給與 均一母子給與와 失業給與에 適用된다. 4)

老齡 廢疾 遺族年金의 資格條件은 첫째 養老年金の 경우 年齡이 65歲(女子 60歲)와 156週間の 寄與金を 納入했거나 每年 50週 以上の 賦出이나 賦出義務者(만일 13~49週 賦出時는 減額年金)여야 하며 70歲(女子 65歲)까지는 退職해야 한다.

또한 適當 7.5 파운드 以上 所得時는 年金이 減額되며 海外居住時는 所得의 增加分을 除外한 年金을 支給할수 있도록 하였

다.

둘째 廢疾年金은 完全勤勞無能力者이고 被僱者 또는 自營者 共히 156週 以上の 齎出이나 最終年度內에 50週를 納入 或은 納付 義務者에게 資格을 준다.

셋째 遺族年金은 年齡에 制限없이 養老年金 規定과 同一한 提出履行 被保險者 遺族에게 支給하며 完全遺兒에 對해서는 齎出期間에 制限없이 給與 資格을 賦與한다. 給與內容은 아래와 같다.

(1) 均一養老年金 (Flat Old-Age Pension) 週當 5파운드이며 扶養家族補助金으로 妻 3.1 長子 1.55 次子 0.65 3子次下는 各各 0.55 파운드씩 每週 支給하고 退職延長者 追加金으로는 年金資格年齡次後의 每9週 齎出에 0.05 파운드씩 追加한다. (被保險者가 아닌 60歲 以上の 妻가 있을때는 0.075 파운드씩 加算)

(2) 比例養老年金 (Graduated Old-Age Pension) 完全比例齎出 履行者에게 0.025 파운드를 均一年金에 追加 支給하고 年金補助金 (所得 調査後) 으로 週當 5.2 파운드 또는 夫婦 兩人時 8.5 파운드를 支給한다.

(3) 廢疾年金은 週當 5 파운드에 扶養家族 補助金 (妻 3.1 長子 1.55 次子 0.65 3子次下는 各各 0.55 파운드) 을 支給한다.

(4) 遺族을 爲한 것으로는 臨時寡婦給與⁵⁾ (Temporary Widow's benefit) (26週間) 가 週當 7 파운드의 均一額에 長子 2.45 次子 1.55 3子次外는 1.45 파운드씩을 加算

支給하거나 週當 9~30 파운드의 所得 被保險者의 比例年金 補助額으로 33 1/3 %를 支給하고 寡婦 給與로서는 週當 5 파운드에 長子 1.55 次子以外의 子女에게는 各各 1.45 파운드씩 加算 支給하며 寡婦年金으로 50 歲以上時에는 週當 5 파운드 (40~49 歲는 年 7 %씩 減額) 그리고 完全遺兒에게는 各兒童마다 2.45 파운드씩을 支給한다. 끝으로 行政組織은 社會保障省에서 一般 監督 業務를 管掌하며 地區 및 地方 事務所를 두어 統割 監督하고 있다.

第3節 美國의 年金保險 制度

美國은 1935年 「聯邦 養老手當制度」를 最初로 制定했고 이어서 各州法에 依한 老齡者 盲人 被扶養兒童 不具兒童 母子 福祉 公衆衛生 그리고 失業補償制度를 樹立하였다. ⁶⁾

英, 獨에서는 第1次 世界大戰 以前에 이미 社會保險制度가 發達한것에 比해 美國에서는 1929~1923年의 世界大恐慌前에는 1908年 및 1909年의 聯邦雇傭主 補償法(前者는 大法院 違憲 判決)과 1910年의 州勞動者 災害補償法(1920년까지 36州)을 除外 하고는 社會保險이 全無한 狀態였는데, 이것은 豊富한 自然資源과 封建的 制約에서 解放된 自由主義思想과 自主的 完結性을 갖는 個人主義的 自己責任意識의 美國의 特徵이 ⁷⁾ 作用한데 起因하고 있다.

適用範圍는 臨時的인 農業 및 自家雇傭者 그리고 年間 400 \$ 以下 所得의 制限된 自營者를 除外한 稼得所得의 全被傭者를 對象으로 하고 非營利團體 被傭者 中央 및 地方政府公務員 그리고 牧師는 任意適用토록 하고 있으며 Puerto Rico, Virgin Island Guam, Samoa 에서 美國商事に 雇傭되 있는 美國市民에게도 適用토록 하고 있다.

또한 鐵道局員·聯邦公務員 中央 및 地方政府公務員을 爲한 特別한 年金制度가 마련되고 있어 1965年 現在 이미 經濟活動人口의 約 86% (約 5,800 万名)⁸⁾ 가 適用을 받고 있다.

基金造成은 徹底한 兩者 融出原則을 採択하고 있는데 (1969年 改正된 老齡 廢疾 遺族保險 制度)

(1) 被保險者: 1971年까지는 收入의 4.6% 였던것이 1973年 부터는 5% (自營者는 6.9% 에서 7%) 로 引上되었고,

(2) 使用主: 被保險者 融出額과 同等한 比率로 給料에서 負擔하며

(3) 政府: 1968年以後 72歲以上 老齡者를 爲한 特別月養老給付 費用만을 負擔하고 있다.

또한 美國制度는 融出 및 給付目的을 爲한 最大所得의 限界를 年收 7,800 \$ 로 制限하고 있으며 報告된 賃金額의 1.1% 와 報告된 自營者 所得額의 0.825% 를 廢疾給付에 充當하고 나머지 融出基金으로 養老 및 遺族給與에 充當하고 있다.⁹⁾ 資格條件은 아래와 같다.

(1) 養老年金 : 첫째 65歲 (62 ~ 65歲는 減額) 가 되어야 하며 둘째 1950年以後의 各曆年에 最少限 1分期씩 65歲 (女子는 62歲) 까지 被保險者 (最大 40分期) 여야 하며 셋째 72歲까지 特定 金額以上の 所得者에게는 年金을 減額하고, 넷째 相互協定이 있는 경우에는 海外居住者 및 外國人에게도 支給資格을 賦與한다.

(2) 廢疾年金은 治愈不能 또는 1年間의 予象診後¹⁰⁾ (Prognosis) 負傷으로 말미암아 主要 稼得活動의 機能喪失인때 또한 1950年以後 每年 1分期의 寄與者 (21歲未滿) 이거나 最大 40分期中 20分期 適用者일때 資格을 주며

(3) 遺族年金은 死亡한者가 年金受給者이거나 1950年以後 每年마다 1分期 또는 最終 13分期中 6分期 適用者여야 資格을 주고 있다.

給與內容에 있어서는 :

(1) 養老年金 : 1950年以後의 月平均 收入의 첫번째 110 \$의 81.83 % (最低 5年除外) 두번째 290 \$의 29.76 % 그리고 세번째 150 \$의 27.81 % 네번째 100 \$의 32.69 %를 合算한 額 (最少 月年金額 64 \$ 最大 250,70 \$) 을 支給하며

(2) 廢疾年金은 養老年金과 同一하고

(3) 扶養家族 補助金 (養老 및 廢疾 共히 適用) 으로는 65歲 (62 ~ 65歲는 減額) 의 被扶養妻나 夫 또는 子女를 돌보는 妻 에게는 18歲未滿 (學生 22歲 , 18歲未滿에서의 廢疾

子女는 年金 制限없음) 子女마다 各各 勤勞者 年金의 50%를 支給한다. (最大完全年金 : 月 434.40 \$)

(4) 寡婦年金은 62歲인때 被保險者 基本年金의 82.5%, 廢疾로서 (50歲는 50%) 50~62歲면 減額되고 (被扶養夫도 同一) 62歲以下로서 被保險者의 子女를 돌보아줄때는 75%를 支給한다.

(5) 遺兒年金은 18歲未滿 (學生 22歲 18歲 未滿 廢疾遺兒는 年齡制限없음) 兒童마다 基本年金額의 75% 支給하며 扶養 遺父母에게는 62歲 以上이면 基本年金의 82.5% 또는 兩親인 때는 150%를 支給한다.

(6) 葬祭料 (Funeral grant) 는 被保險者 基本年金의 3個月分으로 最大 255 \$ 을 支給한다.

其外에 寡婦를 爲한 特別 月給共金과 同居人 그리고 孤兒等에 對한 扶助金 支給制度가 있으며 끝으로 行政組織은 保健教育厚生福祉省에서 一般監督業務를 管掌하며 省內의 社會保障庁에서는 地方 地區 支所事務所를 通하여 給與行政을 하고 財務省에서는 內國稅務 機關을 通하여 釀出 및 支給行政과 積立金管理 業務를 統劃한다.

끝으로 行政組織은 聯邦 勞動 및 社會福祉長官이 一般的인 監督으로 業務를 管掌하고 各邦의 保險局에서는 邦內 賃金收入行政을 執行하며 聯邦給料被傭者 保險局에서는 給料 被傭者에 對한

行政을 別途로 取扱하고 있다.

第 4 節 西獨의 年金保險 制度

獨逸 社會保障의 構成原理는 社會保險 公的扶助 및 援護¹¹⁾의 3個原則을 混合한 것으로서 西紀 1,300 年代에 이미 鉉山 勞働者를 中心으로한 共濟組合 金庫制度가 있었으며 1845 年에는 프로이센의 營業條例로서 工場主에 對한 出義務를 規制 하였고 1889 年에는 廢疾老齡保險法이 有名한 「砂糖과 빵」이라는 「비스마르크 社會保險」¹²⁾으로 登場하여 社會保險 制度 確立의 先驅的 役割을 하였으며 1911 年에 保險法으로 改正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適用對象의 範圍는 賃金收入者와 給料 被傭者의 各기 다른 2個 制度로서 運營되며 兩制度에 對하여 共通的인 措置를 하고 있다.¹³⁾

또한 鉉夫 公務員 自營藝術人 自營農民에게는 別度의 特別制度가 마련되 있다.

保險基金은 첫째 被保險者인 경우 收入의 8.5%(最高 限度額의 10%未滿時는 該當없음)이며 1973 年 부터는 9%로 引上토록 規定했으며 둘째 使用主 亦是 給料의 8.5%에서

1973년부터는 9%로 引上適用된다.

그리고 最高 限度額의 10%未滿인 所得 勤勞者를 爲해서는 그들을 爲하여 17%를 負擔토록 되어 있다.

셋째 政府는 制度 運營에 必要한 全体 費用의 約 15%를 每年 補助하고 賦出目的을 爲한 最高收入限度額은 지난 3年間에 對한 國民所得의 2倍 (1971年의 最高 限度額은 月約 1,850 마르크)로 規定하고 있다. (1 DM=美貨 28.3 \$)

資格條件은 첫째 養老年金인 경우에는 65歲 (1年間 就業하지 않았거나 女子가 過去 20年間에 10年을 就業했을 때는 60歲부터 支給資格을 준다) 와 180個月分の 賦出을 履行했을 때 受給資格이 있으며 65歲 以後에 年金이 支給될 때는 退職要件이 不必要하며 海外에 居住하는 者에게는 年金을 支給하지 않는다.

둘째 廢疾年金은 여하한 稼得活動도 할수 없는 機能喪失者 (一般 廢疾)¹⁴⁾ 또는 賃金の 50%를 얻을수 있는 程度의 機能喪失 (職業廢疾) 이거나 60個月의 賦出履行時에 資格을 賦與한다.

셋째 遺族年金資格은 60個月 賦出한 被保險者의 死亡時 또는 死亡當時 年金受給者였을 때 支給토록하고 있다.

給與內容은 養老, 廢疾, 寡婦 遺兒에게 給與하는 年金制度가 있는데 첫째 養老 年金은 勤勞者 査定賃金¹⁵⁾의 1.5%에

被保險年數를 乘하게 된다. (被保險年數는 機能喪失 失業 및 15歲以後 通學中인 學生의 代替期間을 包含) 또한 兒童에 給與하는 加算額으로 各兒童마다 最近 3年의 國民平均賃金의 10% (1971년에는 月 91마르크 였다)를 支給하며 둘째 廢疾年金은 一般廢疾時: 勤勞者 査定賃金의 1.5%에 被保險 年數를 乘한 金額이 되며 職業廢疾時는 査定賃金 1%에 被保險年數를 乘한 額이고 年金은 最近 5年에 36個月分의 引出을 하였으면 勤勞者가 55歲까지 被保險者였던것으로 計算된다.

그리고 兒童을 爲한 加算金이 養老年金의 경우와 同一하게 支給된다.

셋째 寡婦年金은 一般 廢疾年金의 100%가 支給되며 寡婦年金 45歲, 廢疾 或은 아이들을 養育時는 一般廢疾年金의 60% 또는 職業廢疾年金의 60%를 支給하고 扶養홀아비인 경우도 同一하다.

넷째 遺兒年金은 被保險者의 一般廢疾年金의 10%이며 完全遺兒인 경우에는 18歲 未滿(未婚學生은 25歲, 廢疾時는 年齡 無制限)의 遺兒마다 各己 20%씩을 支給한다. 또한 被保險者의 最大遺族年金額을 一般廢疾年金의 100%로 制限하였고 葬祭料는 20~40日分의 一時金이나 年金受給者인 경우는 年金의 3個月分으로 規定하고 있다.

第 5 節 日本의 年金保險 制度

日本은 1905年 부터 私營 企業체의 共濟組合이 發達하기 始作 하다가 1921年의 健康保險法을 最初로 社會保險制度가 導入하기 始作하였으며 1938年 國民健康保險法, 1939年 船員保險法 및 職員 健康保險法을 制定한바 있고 年金保險制度는 第2次 大戰中이던 1941年에야 勤勞者를 中心으로한 生活保障의 勞動者 年金保險法이 成立하였다.¹⁶⁾ 그후 1944년에는 適用範圍를 擴大하여 厚生年金保險法으로 改稱하면서 1936年의 退職 積立金 및 退職手當法을 統合 吸收하였고 1954년에는 內容을 大幅 改正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다. 또한 全國民을 對象으로 하는 國民年金法을 1959年 4月에 制定하므로써 二重社會保險 體制(Dual Social Insurance System)를 形成하고 있다.

그리고 <表 4 - 7>과 같이 厚生年金保險 및 國民年金保險制度 以外에도 船員保險法, 公家公務員共濟組合法, 公共企業체職員等共濟組合法, 地方公務員等共濟組合法, 私立學校教職員共濟組合 그리고 農林漁業 團體職員共濟組合法等 8개의 年金保險制度가 別途로 制度化되어 運營되고 있으므로써 西歐諸國의 統合的인 社會保險 發展 趨勢와는 對照的인 現象을 보여 주고 있다.

<表 4 - 7 >

日本の年金保険制度 一覽

制度의 種類		厚生年金保險		
創 設		1941.3月法 60号(施行42.6月) 1944.2月法 21号 改称現行 1954.5月法 115号 全部改正		
經 营 主 体		政府, 厚生年金基金①		
对 象		一 般 被 傭 者		
对 象 人 員		1,842万 人		
費 用 率	保 險 料 率	事 業 主	(鉦 夫) (一 般 男 子) (一 般 女 子)	
		本 人	3.35 % 2.75 % 1.95 %	
		計	6.7 % 5.5 % 3.9 %	
負 担	国 庫 負 担	給 付 費	25/100 20/100	
		事 務 費	全 額	
事 故 別 給 付	老 齡 · 退 職	老齡年金, 通算老齡年金 脱退手当金		
	障 害	業 務 上	障 害 年 金	
		業 務 外	障 害 年 金 및 手 当 金	
	死 亡	業 務 上	遺 族 年 金	
業 務 外		遺 族 年 金		
福 祉 施 設		病院, 療養所, 老人Home 其他		
所 機 管 関 地	中 央	厚生省年金局, 社会保險庁		
	地 方	都 道 庁 県 民 生 主 管 部 保 險 課, 社会保險事務所		
備 考		① 厚生年金基金에 加入할 경우에는 保險料가 높을 수가 있다.		

資料：松尾均，社会保障読本，東京，東洋經濟新報社，1969年7月，

(1966年9月1日現在)

国 民 年 金	
1959年 4月 法141号(施行)	
1959年 11月 一 福祉年金	
1961年 4月 一 拠出年金을 追加	
政 府	
一 般 国 民	
(拠出者) 2,002万人	
20-34才 月 200円	35-59才 月 250円
(拠出年金) 当該年度 納付된 保險料 總額과 前年度 免除된 保險料 總額의 合算額의 1/2 ① (福祉年金) 全額	
全 額	
老齡年金 ②	通算老齡年金 ③ 老齡福祉年金 ⑤
障害年金 ④	障害福祉年金 ⑤
母子年金 ④ 準母子年金 ④	遺兒年金 ④ 寡婦年金 ④
死亡一時金, 母子福祉年金 ⑤	準母子福祉年金 ⑤
未 設 置	
厚生省年金局, 社会保障庁	
厚生年金保險과 同一	
① 拠出制 年金의 国庫負擔은 他年金制度의 国庫負擔과 같이 給付時 行해치지 않고 毎年度 拠出時 行해짐	
② 減額年金 增加年金制度 有	
③ 減額年金 制度 有	
④ 災害補償과의 調整으로 停止 有	
⑤ 所得制限으로 支給停止 有 (精神薄弱者 包含)	

pp.8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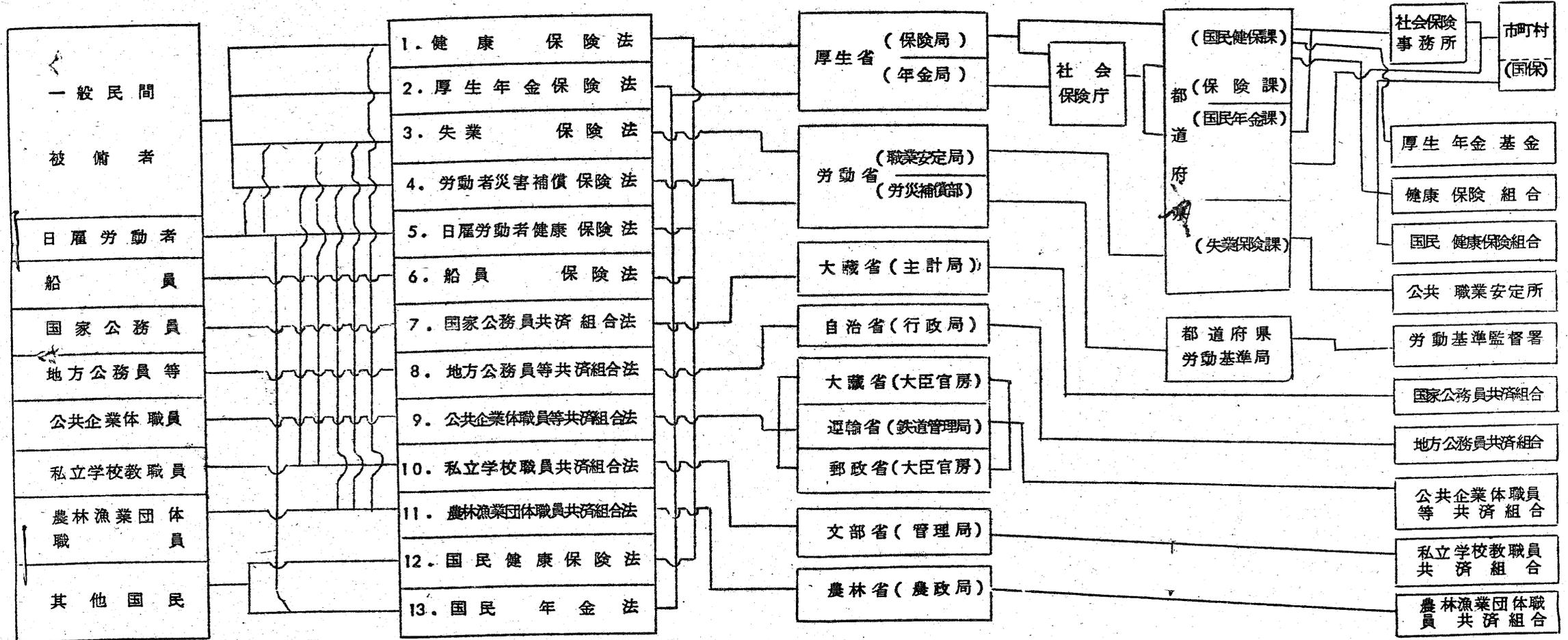
특히 社会保險 全般에 걸쳐 13個 制度를 <表 4 - 8> 運營하고 있는 行政 機構는 8個省이 各各 業務를 管掌한다는 複雜한 体制 現象을 빚고 있어 日本社会保障制度의 問題點¹⁷⁾으로 登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制度樹立에도 重要한 參考點을 提示해 주고 있다. 그러면 日本年金保險制度의 代表的인 厚生年金保險制度와 国民年金保險制度를 中心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厚生年金保險制度 : 勤勞者가 老齡에 達했을 경우 또는 負傷이나 疾病으로 因하여 廢疾이 되었을경우 或은 死亡했을때 年金이나 一時金を 給付하므로써 「勤勞者 및 그들 遺族의 生活安定과 向上에 寄与할것을 目的」¹⁸⁾으로 하고 政府가 管掌하며 一般 被傭者를 對象으로 適用하고 있다. 그러나 日雇勞動者나 零細企業 勞動者는 아직 適用받지 못하고 있다.

1965年 6月 「壹万円 年金」이란 標語를 標榜 全面改正하여 一般男子는 3.5%에서 5.5% (女子 3.9%, 坑内夫 6.7%)로 引上함과 同時에 標準報酬 月額도 最低 3,000円 (1円 = 美貨 0.28 \$)에서 最高 36,000円까지의 20等級으로 区分하였던 것을 最低 7,000円에서 最高 60,000円까지 23等級으로¹⁹⁾ 調整하고 이 基準에 保險料率을 乘하여 算出하던 保險料를 勞使間 折半씩 負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給付의 中心은 養老年金으로서 다음 3개 條件을 要한다. 첫째 被保險者 期間은 齎出 20年 (坑内夫 15年) 以上 일것과 둘째 60才 (坑内夫와 女子는 55才)에 達할 것이며 셋째 被保險者가 退職할 것이다. (但 65才 以上은 不必要하나

<表 4-8>

日本 社会保険制度の 種類と 行政機構



資料：松尾均，社会保障読本，東京，東洋，経済新報社，1969年7月 P.79

健康保険組合連合会，「社会保障年鑑」(1967年版)

이때는 年金의 20%를 減額 支給한다)

위의 3個條件이 充足됐을때 養老年金 支給額 算出方法은 아래와 같다.

가. 基本 年金額(年額)

1) 定額部分 = 250 円 × 被保險者 期間의 月數 (但 6 万円을 最低 保障額으로 하며 9 万円을 最高限度額으로 한다)

2) 比例部分 = 被保險者였던 全期間의 平均 標準報酬 月額 ×

$$\frac{10}{1000} \times \text{被保險者 期間의 月數}$$

나. 加給年金額

被扶養者 1人당 年額 4,800 円 年金額은 基本年金額과 加給年金額을 合算한 것으로 하며 保險料 給付 月數와 平均標準報酬 月額에 依해서 增減되므로 被保險者 期間 20 年間に 平均標準報酬가 25,000 円인 때에야 月 1 萬円の 年金을 받을수 있게 된다.

(2) 国民年金保險制度 : 國家를 保險者로 하고 被傭者 以外の 一般 國民을 對象으로 하여 厚生年金 給付制度和 類似하게 運營되고 있는데 이制度에서는 齎出年金을 基本으로 하고 無齎出의 福祉年金을 經過的 補完的으로 並用하고 있다.²⁰⁾ 給付의 中心은 亦是 養老年金으로 給付額은 1966 年 6 月の 国民年金法 改正에 依해서 2.5 倍가 引上되었으나 保險料 納付期間 1 年에 따라서 2,400 円 程度로서 25 年間 齎出했을때 年金은 年額 6 万円 (月額 5,000 円, 夫婦 年金時 1 萬 2 千 円) 이 되며 年金 支給 開始 年齡은 65 才로 되어 있다. 또한 被保險者는 20 才부터 60 才까지 保險料를 齎出하며

1967年 以前은 35才까지가 月額 100 円, 35才부터는 150 円을 納付해야 되며 1967年 1月부터는 200 円과 250 円, 1969年 1月 부터는 250 円과 300 円으로 引上하도록 規定하고 있는것이 特色 이다.

第 6 節 印度의 準備金 制度

印度는 1923年의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를 始初로 1948年 醫療 保險法을 導入했고 年金保險制度는 1952年에야 立法化 하였으나 準備金으로 給与하는 積立方式(Provident fund System)²¹⁾을 適用 하는 代表的인 나라의 하나이다. 1972年 現在 適用範圍는 20人 以上 常用하는 勤勞 事業場을 對象으로한 被傭者로서 한 勤勞事業場 에서 240日以上을 繼續 勤勞하는 勤勞者가 加入할수 있도록 하였 으며 月 1,000 루피 (1 Rupee 는 美貨 13.1 \$ 과 同一) 以上の 所得勤勞者 (最初 加入時 1,000 Rupee 未滿이면 制限받지 않음) 或은 私的으로 이制度와 同等한 給付를 받는 경우에는 除外된다. 또한 鉉夫나 鐵道從事員 그리고 公務員은 特別한 年金制度로 이 들 을 包括하고 있다.

保險財源은 被保險者인 경우 收入의 6.25% 또는 50人以上の 大工場 勤勞者는 8%를 納付케 하며 使用主는 勤勞者와 同等한 6.25%와 8%를 負擔하고 그외에도 給料總額의 0.37% (50人 以上の 大企業主는 2.4%)를 行政費²²⁾로 負擔하고 政府 釀出給料 額의 1.16%와 遺族給与를 爲한 行政費用을 負擔하고 있다. 年

金 및 手當의 資格 條件은 첫째 養老手當 (Old-age grant) 인 경우 55才 (鉞夫는 50才)에 到達하고 退職을 前提해야 하며 (但 永久的으로 海外에 出國時는 年金制限 없음) 1年以上 保險加入後 脫退時는 返還金을 주며 15年以上 保險加入後 脫退時는 勞使 齎出額을 包含하여 返還支給한다. 둘째 廢疾手當 (Invalidity grant) 의 資格條件은 勤勞期間中 永久的 또는 完全機能 喪失時에 支給토록 되어 있으며 셋째 遺族에 對하여는 年金制度 (Survivor pension) 로 되어 있으며 退職前 被保險者가 死亡할때에만 支給토록 되어 있다.

給與種類는 養老手當 廢疾手當의 一時金 (Lump-sum) 制度와 遺族에 對한 家族年金給付 (Family pension benefit) 의 3種類가 있는데 첫째 養老手當一時金은 被保險者 및 使用主 齎出總額에다가 5.25%의 利子를 加算한 金額이며 最大支給 限度額은 4,000 Rupee 이다. 둘째 廢疾手當一時金은 養老手當一時金과 同一하며 셋째 家族年金給付는 最少 月 40 Rupee 最大 150 Rupee (賃金等級에 따라 差異가 있다) 에 1,000 Rupee 의 死亡 一時金を 追加 支給할수 있다. 또한 遺族年金은 家族中 指命된者 或은 指命者가 없을 때에는 他人일지라도 指命되어 受給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行政組織으로는 勞動長官이 一般監督을 하여 被傭者準備基金庁에서 州事務所를 通하여 行政 및 業務를 執行한다.

끝으로 年金保險制度는 어느나라나 그나라 社會保障의 主要道具로

運營되고 있으며 그나라 國民의 大多數에게 適用되도록 擴充 強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年金保險制度中에서도 老齡 廢疾 遺族에 對한 給付의 種類와 額出 및 給與限度가 漸次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增加되고 있는 現象이며 <表 4 - 9> 保險基金의 運營形態도 各各 그나라의 特色에 따라 다르게 運營되기도 하지만 先進諸國이 賦課方式에 依한 財政運營을 하고 있는데 反하여 開發途上國이나 새로히 制度를 導入하는 나라들은 準備金의 積立方式에 依하고 있는 特徵을 볼 수 있다.

<表 4 - 9 >

社会保障費 收入의 財源別 構成 (1963年)

国 家	社会保障費加入總額 (100万 各國通貨單位)	源 出		社会保 障 稅	公 費 負 担			其 他	備 考
		被保險者	事業主		合 計	国库負擔	他公費 負擔		
歐州									
스웨덴	13,468.1	16.9	22.8	-	57.6	34.9	22.7	2.7	
노르웨이	4,596.5	31.2	30.1	0.1	36.9	16.0	20.9	1.7	
핀란드	2,388.2	7.2	40.5	-	46.8	29.1	17.7	5.5	
덴마크	6,360.4	12.9	9.6	0.8	76.6	58.9	17.2	0.6	
오스트리아	34,323.0	24.4	47.8	-	22.5	22.1	0.4	5.3	
스위스	5,121.4	32.2	24.3	-	28.3	6.9	21.4	15.6	
영국	3,619.2	21.6	20.1	-	53.9	47.1	6.8	4.4	1963-
독일	67,035.0	25.3	41.9	1.5	22.7	27.7	-	8.6	64
프랑스	108,766.3	20.2	44.5	0.3	27.7	27.7	0.0	7.5	
독일	8,295.1	40.5	40.0	-	12.0	5.7	2.3	7.5	
이탈리아	63,374.4	15.9	61.6	2.7	15.7	13.5	2.2	4.1	
스페인	4,562.4	14.3	60.4	0.1	15.4	15.2	0.2	9.8	
그리스	50,780.0	8.2	6.0	0.5	8.1	8.1	0.0	8.8	
포르투갈	5,974.6	19.1	51.8	-	9.2	9.2	-	19.9	
영국	44,587.0	-	62.8	-	36.8	36.8	-	0.8	
미국	28,901.0	1.8	32.6	-	65.1	65.1	-	0.5	
캐나다	591,733.0	-	86.3	-	6.6	6.6	-	7.1	
북미									
북미	4,557.2	7.0	9.9	7.8	56.1	35.7	20.4	9.2	
미국	43,116.0	24.7	38.9	-	30.2	19.4	10.8	6.2	
미국	5,140.5	68.5		-	25.7	25.7	-	5.8	

國家	社會保障費加入總額 (100萬各國通貨單位)	出		社會保 障費	公費負擔			其他	備考
		被保險者	事業主		合計	國庫負擔	他公費 負擔		
南美洲									
베네주엘라	668.9	보리바루	10.3	17.8	-	70.7	70.7	1.2	1962
코롬비아	852.5	페소	7.9	23.2	-	57.6	57.6	1.3	-63
南美洲 詳細									
日本	1,636,308.0	円	26.2	31.3	-	29.4	29.4	9.3	1963
대한	1,077.5	대만달라	10.2	17.5	-	47.7	47.7	3.0	-64
필립핀	275.3	페소	23.1	30.9	-	33.9	33.6	10.0	
인도	3,470.5	루피	26.2	34.7	0.0	29.9	3.0	9.2	
터키	1,891.4	도루코폰드	31.8	47.4	-	6.1	6.1	14.7	1963
이스라엘	591.6	이스라엘 폰드	25.2	26.0	-	30.9	24.6	17.9	-64
마라이지아	337.6	마케달라	18.7	35.8	-	29.2	29.2	16.3	
아후리카洲									
가나	8.1	가나 폰드	1.2	21.9	-	75.0	75.0	1.9	1962
大洋洲									
오스트베리아	776.0	오스트베리아 폰드	9.2	10.7	-	76.9	63.9	3.2	1962
뉴질랜드	186.3	뉴질랜드 폰드	46.9	4.2	-	47.1	47.1	1.8	-63
蘇聯									
소련	17,260	루블	-	26.6	-	73.4	73.4	-	1960
(33 개국)									

資料: ILO, The Cost of Social Security, 1961-1963.

- 註1) I.L.O., The Cost of Social Security 1964-1966, Geneva, 1972.
- 註2) 韓國의 社會保障費 推計는 保健社會部刊 「社會保障・社會開發 研究」資料, 1972年8月, p.51에서 引用.
- 註3) 平田富太郎, 英國의 社會保障, 有信堂, 1959年4月, p.85.
- 註4) U.S.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1, U.S.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72. pp.230-231.
- 註5) Ibid, p.231.
- 註6) A.J.Altmeyer, The Formative year of Social Security, Wisconsin, Univ.of Wisconsin press, 1966. pp.3-5.
- 註7) 平田 富太郎, 今日의 社會保障, 東京, 有信堂, 1957年. pp.51-54.
- 註8) The Cost of Social Security, O.P.Cit, p.390
- 註9)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O.P. Cit, p.232.
- 註10) Ibid, p.231.
- 註11) 援護란 現實의 困窮을 前提하지 않고 一定 事故(Risk)의 存在를 認定하며 劃一的 給付가 行해진다는 特徵으로 社會保險과는 다르고 無酬出原則을 適用한다는 點으로 公的扶助와 비슷하다.
- 註12) 平田 富太郎, 前掲書, p.121.
- 註13) 上掲書, p.125.

註 14)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O P.
Cit, p.78.

註 15) 勤勞者의 査定賃金은 査定の 一般基準에 依拠한 被保險期間의 國民平均賃金에 그의 收入額比率을 곱하여 計算하며 一般基準은 申請直前 3個年間の 國民平均賃金 比率을 말한다. 例를 들면 1971年의 國民平均額은 1969年 1968年 1967年의 平均比率이며 月 約 10,967 마르크에 해당한다)

註 16) 平田 富太郎, 前掲書, pp.26-27.

註 17) 松尾均, 社會保障 說本, 東京, 東洋 經濟新報社, 1969年 7月,
pp.111-115.

註 18) 日本 厚生年金法 第1條, (法律 115號) 1954年 5月.

註 19) 松尾均, 前掲書, p.88.

註 20) 上掲書, p.100.

註 21) 社會保險 給付(Benefit)를 爲한 政府의 制度에는 一定期間 동안 釀出한 歲入을 積立한 準備金으로 給付하는 積立方式 (Provident fund System or Capitalization method) 과 年度마다의 經常歲入에서 當該年度의 所要를 策定하여 給與에 充當하는 賦課方式 (pay-as-you-go method or Assessment method) 이 있다.

註 22)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O P.
Cit, pp.100-101.

第 5 章 우리나라의 社会保險 分析

第 1 節 우리나라의 社会保障

우리나라의 社会保障制度는 日帝下의 救護事業의 扶助制度로 부터 1945年 解放됨으로서 現代的인 意味의 制度가 導入되기 始作 하였는데 1960年 1月1日 法律 第 533 号로 制定된 公務員 年金法을 始初로 1961년에는 生活保護法 兒童福利法 軍事援護補償法 淪落行為防止法이 制定되었으며 1962년에는 船員保險法 災害救護法 国家有功者 및 越南歸順者 特別援護法 等 公的扶助와 社会福祉 部門에서의 重点的인 制度가 樹立되었고 1963년에는 軍人年金法 産業災害補償保險法 医療保險法과 社会保障制度의 基礎를 이루워 나갈 「社会保障에 관한 法律」이 制定 되므로서 西歐諸国 보다는 百余年이 뒤떨어졌다¹⁾ 고 하지만 社会保險 部門과 社会保障体制 導入의 기틀을 마련 하였다고 할수 있다. 그외에도 1965年の 自活指導 事業에 관한 臨時措置法과 1970년에는 社会福祉事業法이 制定되었으며 <表 5 - 1> 国民福祉年金制度와 老人福祉法이 制度化 段階에 있다.²⁾

그러나 우리나라 社会保險의 實態는 아직도 初步的인 段階에 머물러 있는 實情으로 例를 들면 所得(老齡)保障의 根源的 部門인 年金保險에 있어서는 公務員 및 軍人の 特殊 階層만을 適用 對象으로 하고 있을뿐 勤勞者나 自營者는 勿論 一般國民을 爲한 老齡 廢疾 遺族에 對한 制度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醫療保

〈表 5 - 1〉 우리나라 社会保障制度 制定現況

体	制	部	門	法	名	制	定	日	法	令	施	行	日															
社 会 保 障 (社会保障에 関한 法律) 1963.11.5 (法 1437 号)	社会保險	社会保險	公 務 員 船 員 軍 人 産 業 災 害 補 償 保 險 法 医 療 保 險 法	年 金 法 保 險 法 年 金 法 保 險 法	1960. 1. 1 1962. 1.10 1963. 1.28 1963.11. 5 1963.12.16	法 533 号 法 964 号 法 1260 号 法 1438 号 法 1623 号	1960. 2. 6 1963. 2. 6 1964. 6. 9 1964. 6. 5	施 行	日	1960. 2. 6 1963. 2. 6 1964. 6. 9 1964. 6. 5	施 行	日	1960. 2. 6 1963. 2. 6 1964. 6. 9 1964. 6. 5															
														公 的 扶 助	生 活 保 護 法 軍 事 援 護 補 償 法 災 害 救 護 法 国 家 有 功 者 及 越 南 帰 順 者 特 別 援 護 法	1961.12.30 1961.11. 1 1962. 3.30 1962. 4.16	法 913 号 法 758 号 法 1034 号 法 1053 号	1962. 7.23 1962. 3.27 1962.12.12 1962. 5.31	施 行 施 行 施 行 施 行	日	1962. 7.23 1962. 3.27 1962.12.12 1962. 5.31							
																						自 活 指 導 事 業 置 臨 時 措 施	1965. 7.23	法 2039 号	1965. 8.	施 行	日	1965. 8.

資料：總務処，法令集，1971 年

險 制度는 아직도 示範事業段階에 있으며 船員保險制度는 施行令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失業保險 및 兒童手当制度는 計劃方案
조차 없다. 또한 産災保險을 비롯한 公務員年金 및 軍人年金等 既
存制度의 受惠人口를 보더라도 <表 5 - 2 >와 같이 1972年末 現
在 1,494,612 名으로 總人口對 受惠人口比는 不過 4.7 %에 지나
지 않고 있어 全國民을 위한 社會保障目的을 達成하기에는 遼遠한
感이 있다.

<表5-2>

우리나라 社会保險 現況

社会保險体制	現行制度	適用对象	給与内容	受惠人員	受惠人員比	管學
年金保險 (特別制度)	公務員年金法 最初 1960 現行 1969	公務員, 教師 雇傭員判檢事	短期 健康, 診斷, 療養 分曉, 傷病, 葬祭	455,899	30.5 %	總務處
			長期 退職年金 障害年金 遺族年金			
	軍人年金法 最初 1963 現行 1970	將校, 下士官 S.T 下士	退職年金 遺族年金 一時金 一時金	119,000	7.9 %	国防部
產災保險	船員保險法 最初 1962 (不實施)	船員, 海員 警備員 族	疾病, 傷 疾, 脫負 死, 遺族	-	-	交通部
			產災補償保險法 最初 1963 現行 1970	30人以上常時 事業場勤勞者	901,000	60.3 %
医療保險	医療保險法 最初 1963 現行 1970	勤勞者 公務員 自活者 軍人家族	療養・休業・障害 遺族葬祭 (業務上災害)	18,713	1.3 %	保社部
			療養・分曉・葬祭 (業務外災害)			
失業保險 家族手当 計	- -	- -	- -	①1,494,612	- - 100 %	- -

資料: 保健社会部, 社会保障・社会開發研究, 1972年8月, pp.47-48

註: ① 1971年 人口調査 全体人口对 受惠人口比는 4.7 %임.

第 2 節 公 務 員 年 金 制 度

우리나라에서 公務員 階層부터 社會保障制度를 適用할수 있었음은 社會保障 理念上 不合理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社會의 廣範圍한 組織群을 찾아 安全한 保險管理와 波及效果를 거두기 爲해서 는 自然的인 現象이었다.³⁾ 前述한것 처럼 이制度는 1960年에 制定되어 1969年까지 아홉번의 改正 過程을 거쳐 現在에 이르고 있으며 適用對象은 一般職公務員 教育公務員 雇傭員 및 判檢査 <表 5 - 3 >로서 1972年 9月末 現在 455,899 名이 加入하고 있다.

<表 5 - 3 > 職 種 別 公 務 員 現 況

<table border="1" style="margin: 0 auto; width: 80%;"> <tr><td style="padding: 2px;">總 數</td></tr> <tr><td style="padding: 2px;">455,899(100%)</td></tr> </table>				總 數	455,899(100%)																
總 數																					
455,899(1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 style="padding: 2px;">一 般 職</td></tr> <tr><td style="padding: 2px;">208,810(45.8)</td></tr> </table>	一 般 職	208,810(45.8)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 style="padding: 2px;">教育公務員</td></tr> <tr><td style="padding: 2px;">148,922(32.7)</td></tr> </table>	教育公務員	148,922(32.7)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 style="padding: 2px;">雇 傭 員</td></tr> <tr><td style="padding: 2px;">97,284(21.3)</td></tr> </table>	雇 傭 員	97,284(21.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 style="padding: 2px;">判 檢 査</td></tr> <tr><td style="padding: 2px;">883(0.2)</td></tr> </table>	判 檢 査	883(0.2)										
一 般 職																					
208,810(45.8)																					
教育公務員																					
148,922(32.7)																					
雇 傭 員																					
97,284(21.3)																					
判 檢 査																					
883(0.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 style="padding: 2px;">國家公務員</td></tr> <tr><td style="padding: 2px;">81,340(17.8)</td></tr> <tr><td style="padding: 2px;">地方公務員</td></tr> <tr><td style="padding: 2px;">62,101(13.6)</td></tr> <tr><td style="padding: 2px;">警察公務員</td></tr> <tr><td style="padding: 2px;">45,852(10.1)</td></tr> <tr><td style="padding: 2px;">軍 屬</td></tr> <tr><td style="padding: 2px;">19,517(4.3)</td></tr> </table>	國家公務員	81,340(17.8)	地方公務員	62,101(13.6)	警察公務員	45,852(10.1)	軍 屬	19,517(4.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 style="padding: 2px;">大 學 校</td></tr> <tr><td style="padding: 2px;">4,896(1.1)</td></tr> <tr><td style="padding: 2px;">中 高 校</td></tr> <tr><td style="padding: 2px;">36,966(8.1)</td></tr> <tr><td style="padding: 2px;">國 民 校</td></tr> <tr><td style="padding: 2px;">107,060(23.5)</td></tr> </table>	大 學 校	4,896(1.1)	中 高 校	36,966(8.1)	國 民 校	107,060(23.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 style="padding: 2px;">技 能 職</td></tr> <tr><td style="padding: 2px;">69,193(15.2)</td></tr> <tr><td style="padding: 2px;">雇 傭 員</td></tr> <tr><td style="padding: 2px;">28,091(6.1)</td></tr> </table>	技 能 職	69,193(15.2)	雇 傭 員	28,091(6.1)	
國家公務員																					
81,340(17.8)																					
地方公務員																					
62,101(13.6)																					
警察公務員																					
45,852(10.1)																					
軍 屬																					
19,517(4.3)																					
大 學 校																					
4,896(1.1)																					
中 高 校																					
36,966(8.1)																					
國 民 校																					
107,060(23.5)																					
技 能 職																					
69,193(15.2)																					
雇 傭 員																					
28,091(6.1)																					

資料：總務處，1972年 9月30日 現在

基金運營現況은 <表 5 - 4 >와 같이 1960年 부터 1972年 9月 30日 現在 總 589億 8,000萬圓에 이르고 있으며 其中 年金給與 額은 457億 8,000萬圓으로 歲出의 78%에 達하고 있다.

給與의 種類는 <表 5 - 5 >와 같이 16種이며 加入者는 給料의 55/1,000를 齎出하고 政府는 同額의 負擔金과 事務費를 負擔한다.

〈表 5 - 4〉

公務員年金基金運營現況

(1972.9.30 現在) (單位：百万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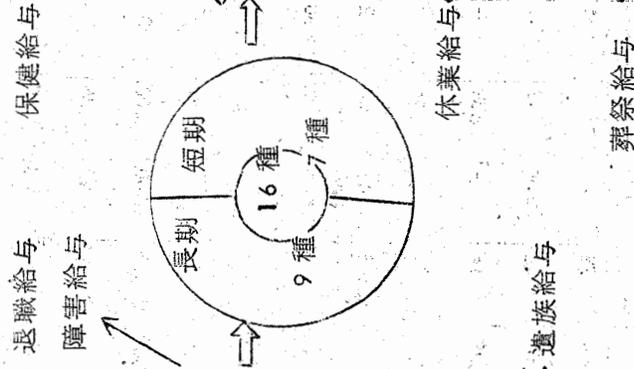
區分	年度別												計	比率 (%)	
	19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寄与金	457	350	443	673	850	660	868	1,079	1,552	2,719	5,720	6,620	8,036	29,994	50.86
負担金	153	205	420	559	459	463	691	889	1,245	2,525	4,983	6,231	7,290	26,113	44.29
災害負担金	-	-	-	18	18	64	72	97	113	138	135	171	213	1,039	1.76
雑収入	-	-	6	0.0001	0.001	0.001	0.2	0.2	0.2	0.1	0.1	0.1	0.1	7.0	0.02
利子収入	6	25	96	139	263	338	14	-	838	-	-	-	-	1,719	2.92
其他収入	14	13	12	12	11	11	16	-	-	-	-	-	-	89	0.15
計	632	595	976	1,403	1,602	1,539	1,663	2,066	3,720	5,382	10,838	13,024	15,539	58,979	100.00
年金給与	64	160	160	434	537	662	864	1,481	3,152	4,830	9,467	11,235	12,734	45,780	77.63
還付金	-	-	-	0.6	1	1	1	1	1	1	1.5	5	2.0	15.1	0.04
福祉費	-	-	-	-	-	4	1	1	0.9	0.9	0.9	-	-	8.7	0.02
積立金	552	421	802	900	970	800	663	400	200	30	360	560	1,400	8,058	13.67
事務費	14	12	11	10	10	12	16	20	25	32	52	65	81	360	0.62
予備費	0.5	1	1	57	83	58	116	160	340	487	957	1,159	1,303	4,722.5	8.02
計	632	595	976	1,403	1,602	1,539	1,663	2,066	3,720	5,382	10,838	13,024	15,539	58,979	100.00

資料：総務処 1972年

〈表 5 - 5〉

給与の 種類と 会計管理

俸給年額の $\frac{50}{100} \sim \frac{70}{100}$	退職年金
俸給 X 在職年数 X $\frac{150}{100}$	退職年金一時金
"	退職一時金
俸給年額の $\frac{40}{100} \sim \frac{80}{100}$	障害年金
年金額の 5 倍	障害補償金
退職年金額の $\frac{50}{100} \sim \frac{60}{100}$	遺族年金
年金額の 5 倍	遺族扶助金
退職一時金と 同額	遺族一時金
退職年金 一時金と 同額	遺族年金 一時金



健康診断費	金額
療養費	公務上 ~ 全額 公務外 ~ 2万円
療養一時金	一年分
療養一時金	一年分
分鏡費	俸給の 1/3 (最低 2,000円)
傷病手当	俸給日額の $\frac{3}{10} \sim \frac{6}{10}$
分鏡手当	俸給日額の $\frac{3}{10}$
葬祭費	月俸給額の 3 倍

資料：総務処，1972

第 3 節 軍人年金 制度

軍人年金 制度는 軍人이 相當한 期間 服務하고 退職 또는 心身의 장애로 因하여 退職 하거나 死亡할때에 本人이나 그 遺族에게 年金 및 補償金을 支給하여 軍人들의 所得 및 生活 保障을 目的으로 1963年 1月 28日 法律 1260号로 制定되었고

1970年 1月 1日의 改正法으로 現在 運營되고 있다. 그 適用 對象은 長期服務⁴⁾ 希望 下士以上 中·上士 및 將校를 網羅하며 約 119,000 名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年金基金은 <表 5 - 6> 과 같이 被保險者의 寄與金으로 俸給의 55/1,000 를 納付 하고 政府는 이에 相応하는 全俸給額의 55/1,000 와 事務費 및 欠損金 (不足額) 을 負擔한다. 特히 1968年 부터의 派越 期間은 海外駐屯將兵에게 對하여 22%의 負擔金이 援助되고 있다.

<表 5 - 6> 軍人 年金 基金 展望 (單位: 億圓)

年度 区分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寄 與 金	19	25	28	29	25	29
政府負擔金	28	35	39	37	40	33
計	47	60	67	66	66	62

資料: 國防部, 軍人年金現況 1972年 12月

給与内容은 <表 5 - 7 >과 같이 退職年金을 비롯하여 6個種目이 있으며 年金과 一時金이 各各 切半씩 支出되고 있다.

<表 5 - 7 > 軍人年金歲出現況 (單位：100 萬圓)

區 分		1970	1971	1972	(72년도) 比率
年 金	退 役	1,327	1,743	2,665	46 %
	傷 病	6	7	5	
	遺 族	267	320	414	
小 計		1,600	2,070	3,084	
一 時 金	退 職	1,305	2,428	3,381	52 %
	遺 族	25	30	36	
	小 計	1,330	2,458	3,417	
寄 与 金 返 還		175	210	129	2 %
年 金 管 理 費		14	17	36	
總 計		3,119	4,755	6,666	100 %

資料：國防部·軍人年金歲出現況，1972年 12月

또한 退職年金 支給은 20年 以上 寄与해야 하고 最大年金은 俸給의 70% (最小年金 50%) 까지 이고 5年 以上 20年 未滿 者에게는 一時金을 支給하고 있으며 그 算出基礎는 아래와 같다.

$$\text{退職一時金} = (\text{俸給額} \times \text{服務年數}) \times \left[1 + \left(\frac{\text{服務年數} - 5}{100} \right) \right] \times 2$$

第 4 節 産災保險 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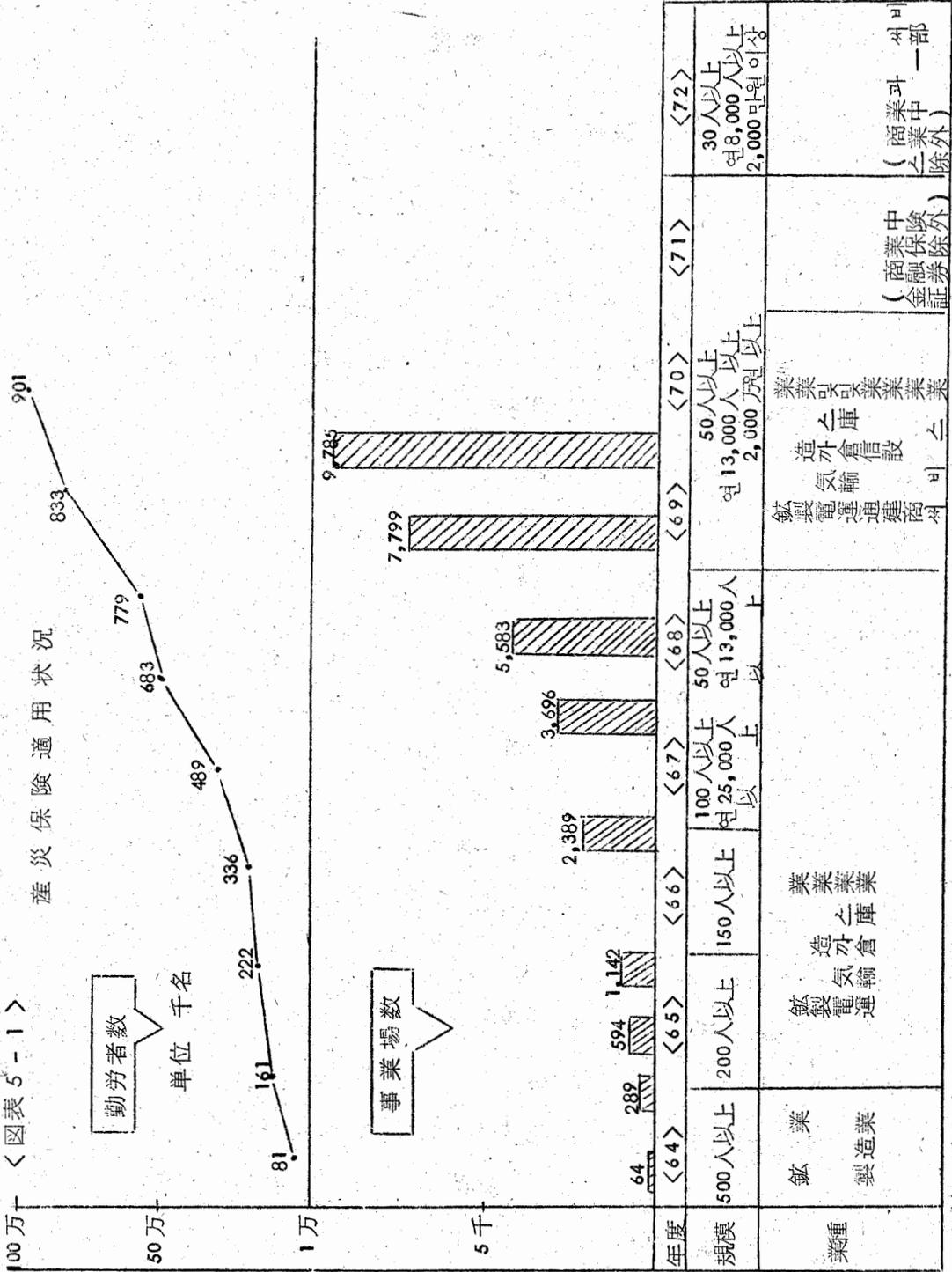
産災保險은 産業災害로 因하여 負傷 疾病 廢疾 死亡한 勤勞者에 對하여 業務上 災害 保障과 産業災害로 因한 事業主들의 危險 負擔을 分散하여 企業의 安全成長을 支援하며 勞動力을 保存하고 再生케 하므로서 國民經濟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1963年 11月 5日 制定 되었다. 그리고 適用對象은 強制適用 對象 部門으로 鈷業 製造業 建設業 電氣GAS業 運輸保管 및 通信業 서비스業으로 限定하여 常用 30人 以上 事業場 勤勞者와 建設業에는 工事金額 2,000 萬圓 以上인 企業에 對하여 適用하고 있으며 任意 適用部門으로는 強制適用 事業場이 아닌 企業에 對하여 申請에 依하여 適用시키고 있다. <圖表 5 - 1> 이 制度는 漸次 擴大하여 窮極的으로는 全勤勞者에게 擴大할 計劃으로 있다. 5)

給與內容은 對象 事業場的 擴大와 함께 年度別로 增加되어 왔으며 아래와 같이 7 種의 給與를 한다.

- (1) 療養給與 : 療養期間 8 日以上の 災害者를 完治까지 治療
- (2) 休業給與 : 療養으로 因하여 就業하지 못한 期間에 平均 賃金の 60% 支給
- (3) 障害給與 : 災害者가 完治後에 身體障害가 있을때에는 障害 等級에 따라 一時金 또는 希望에 依拠 年金 支給
- (4) 遺族給與 : 勤勞者가 業務上 死亡 하였을때 그 遺族의 選擇에 따라 平均 賃金の 1,000 日分에 相當하는 一時金 또는 所定의 年金支給

< 図表 5 - 1 >

産災保険適用状況



資料：労働庁，FY73 予算 実 事業計画，1972 年

(5) 遺族特別給与：事業主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災害가 發生하여 勤勞者가 死亡하였을때 遺族이 民法에 따라 損害賠償請求 때에는 遺族特別給与로서 平均賃金의 1,000 日分 相当額 支給

(6) 葬儀費：平均賃金의 90 日分 支給

(7) 一時給与：療養給与를 받는 勤勞者가 療養開時後 2年을 經過하여도 完治되지 않는 경우 労働庁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때 平均賃金의 1,340 日分에 相当하는 金額을 支給

또한 年度別 予算規模 및 保險料率은 産業別로 아래와 같다.

<表 5 - 8 >

(1) 年度別 産災予算規模 및 積立金

<表 5 - 8 >

(單位：千圓)

区 年 分	1969 年	1970 年	1971 年
歲 入	1,976,769	3,104,020	3,119,060
歲 出	1,538,916	2,217,104	3,104,062
積 立 金	442,853	886,916	483,157

(2) 産業別 料率 (1972年 現在)

가. 석탄·鎔業 甲 13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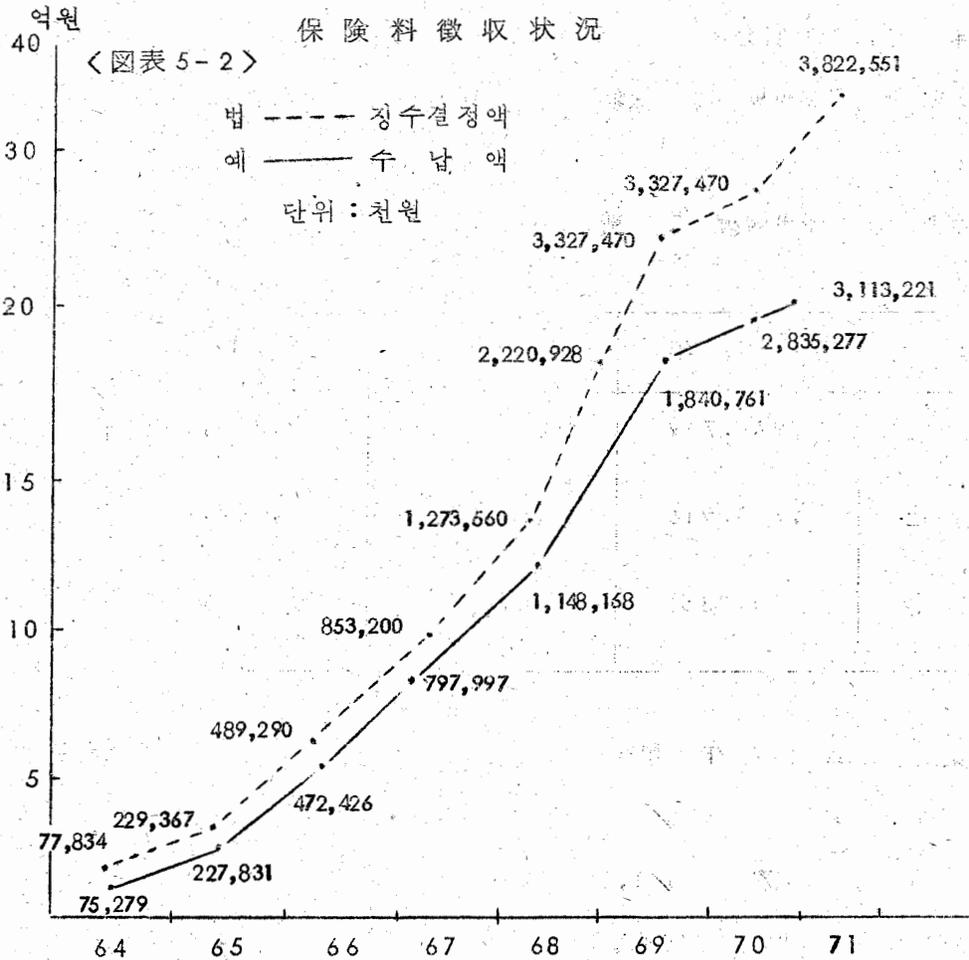
乙 58/1,000

나. 重建設業 50/1,000

다. 金屬 및 非金屬 46/1,000

- 라. 버스·道路運輸業 14/1,000
- 마. 機械業 16.5/1,000
- 바. 電氣業 7/1,000
- 사. 纖維製造業 3/1,000
- 아. 서비스·商業 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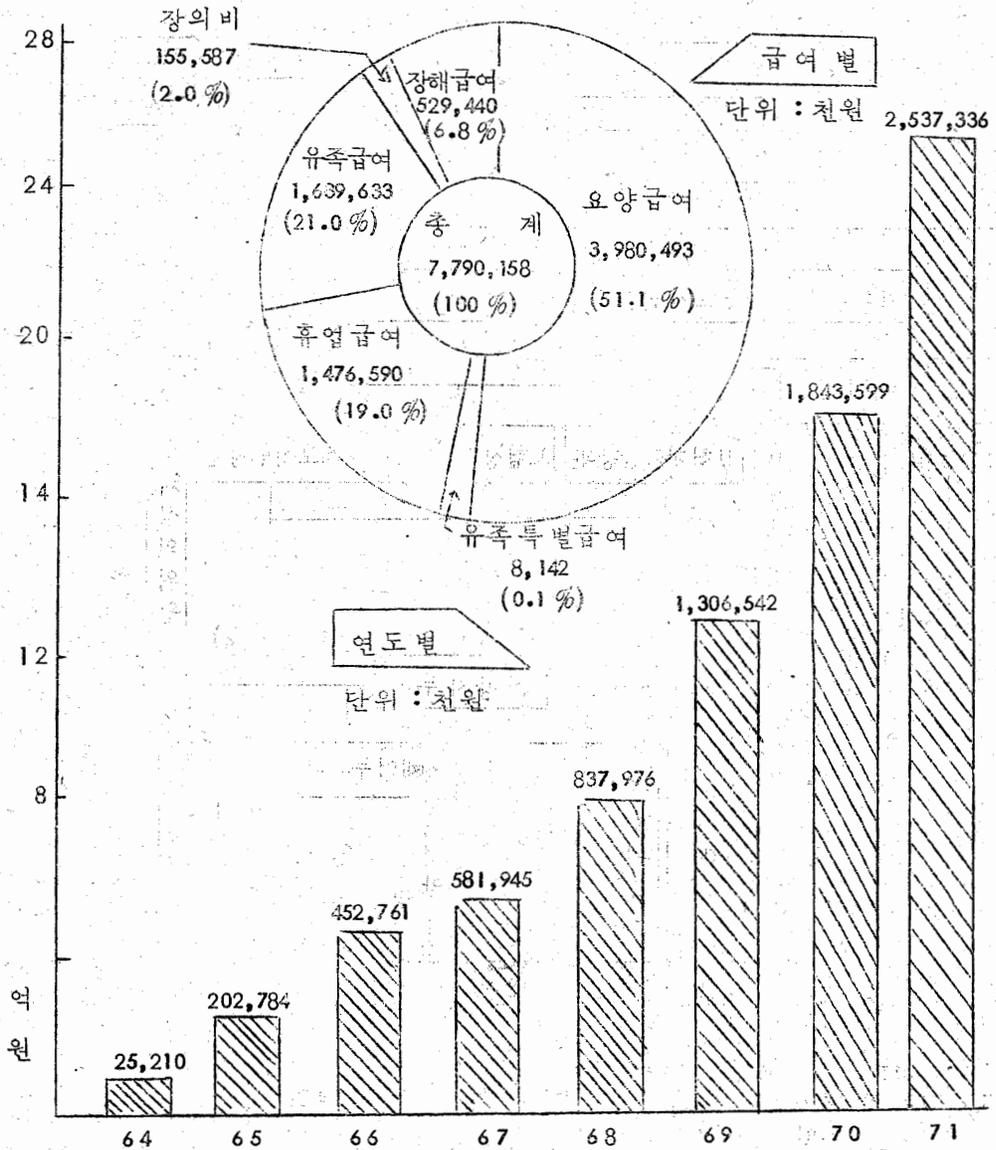
한편 年度別 保險料 徵收狀況은 <圖表 5-2>와 같다.



資料: 勞動庁, 産災保險現況, 1972

産災保險 給与 支給은 < 図表 5 - 3 > 療養給与가 全体の 51.1% 이며 遺族給与 및 休業給与가 約 20% 線을 維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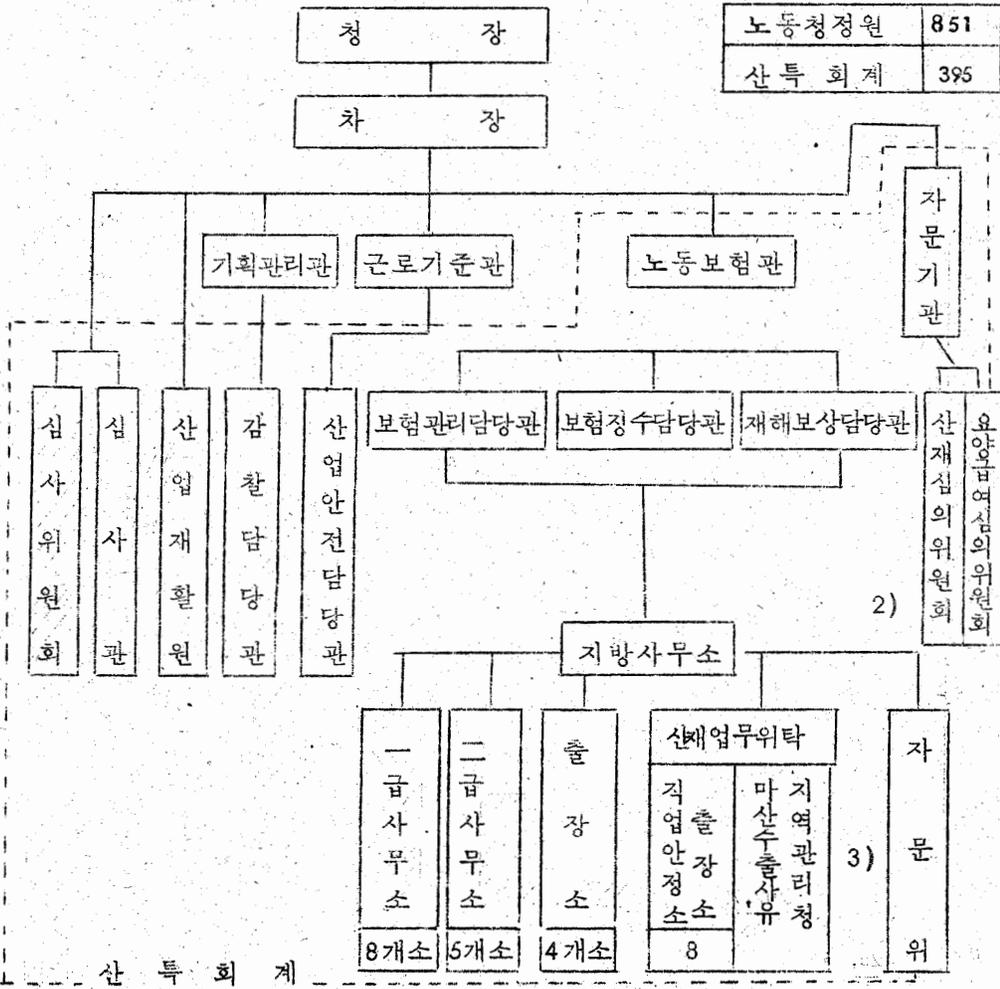
< 図表 5 - 3 > 保險 給与 支給 狀況



資料 : 勞働庁, 産災保險現況, 1972

그리고 全國的 範圍로 擴大되어 있는 産災保險 機構는 <表 5-9>과 같이 中央機關으로서 勞動厅과 1級 事務所 8個所 2級

<表 5-9> 機構編制 및 業務體系



資料: 勞動厅, 業務現況, 1972年

註: 1) 요양급여심의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 4428호)

2) 산재보험법 제 5조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7조 6항

第 5 節 医療保險 制度

医療保險은 勤勞者 公務員 및 그들의 扶養家族과 軍人扶養家族들의 業務外 事由로 因한 疾病·負傷·死亡 또는 分娩에 對하여 保險給与를 行함으로서 國民醫療保障을 目的으로 1963年 11月 5日 制定되어 1970年 12月 31日 現行法으로 改正되었다. 또한 改正法으로는 適用範圍를 自營者까지 包含하도록 擴大하였으나 <表 5-10>과 같이 約 18,000名 程度로서 아직 示範段階에 불과하다.

<表 5 - 10 > 医療保險 適用者 現況

區 分 \ 年 度	1969	1970	1971
被 保 險 者	4,436	4,109	3,672
扶 養 家 族	15,486	14,604	13,169
計	19,992	18,713	16,841

資料：保健社會部醫政局現況，1972年

給与內容은 療養給与 分娩給与 葬祭給与의 3種類로 되어 있다.
 또한 保險料率은： (1) 被保險者：月給与額의 2/100 ~ 8/100
 (2) 使用主：給料의 2/100 ~ 8/100
 (3) 政 府：給与費의 10% + 事務費
 로서 基金을 運營한다. <表 5 - 11 >

<表 5 - 11 >

医療保險財政 (1971年現在)

計	保險料	國庫補助			雜收入
		小計	事務費	給与費	
49,141,792	38,844,483	6,676,000	2,716,400	3,959,600	276,841

資料：保社部医政局現況，1972年

管掌機構는 保健社会部 長官 医療制度担当官・医療保險組合 (青十字組合・鳳鳴鉞業所・湖南肥料) 등으로 되어 있으나 1981년까지는 全体國民의 80%를 포함⁶⁾한다는 政府의 方針에 부응하기 爲해서는 行政組織의 再檢討와 拡大가 隨伴되어야 하겠다.

註 1) 尹仁植, 韓國社会福祉年鑑, 서울, 農園文化社, 1972年 1月, p.169

註 2) 韓國日報, 1972年 11月 15日字

註 3) 尹仁植, 前掲書, p.183

註 4) "長期服務"란 軍人事法에 依한 義務 服務期間을 超過하여 職業軍人生活을 希望하는것을 意味한다.

註 5) 中央日報, 1972年 12月 19日字 및 韓國日報, 1972年 11月 15日字

註 6) 新西日報, 1972年 6月 27日字 및 1972年 10月 12日字

第 6 章 老齡·廢疾 遺族을 為한 年金保險 制度의 한 試圖

年金保險制度의 수립을 論議하기 위하여 내세울수 있는 假說로는 다음 세가지가 있다. 즉

- (1) 年齡保險 制度는 經濟開發 計劃을 直接 間接的으로 支援 할수 있다.
- (2) 年齡保險 制度는 社會保障 制度 確立의 基礎가 될수 있다.
- (3) 年金保險 制度는 所得 再分配 機能으로 社會問題를 廻方하기 為한 予防的 社會政策이다.

위와같은 假說을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年金保險 適用、對象者와 年金 基金推計를 산출하고 이를 土台로 制度의 試案을 제시하려 한다.

第 1 節 年金保險 對象者 推計

(1) 우리나라의 年金保險 適用 可能年齡인 20세로부터 59세 까지의 1973년부터 1981年間的 總人口는 <表 6 - 1>과 같이 1,464 萬名으로 부터 1,918 萬名으로 增加될 것이다.

同期間中の 公務員年金 適用對象者는 <表 6 - 2>와 같이 1973 年の 706,277 名으로부터 1981 년에는 948,089 名으로 增加될 것이다.

<表6-1> 20~59歳人口推計(1973~81)

年度 区分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人口	14,641,102	15,100,890	15,570,377	16,020,465	16,653,005	17,285,543	17,918,081	18,550,618	19,183,158

資料：韓国統計年鑑(EFPB)1971年

<表6-2> 公務員推計(1973~81)

区 分	年度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計		706,277	737,116	767,255	797,394	827,533	857,699	887,847	917,950	948,089
国家及地方公務員		481,152	502,909	523,966	545,023	566,080	587,137	608,194	629,251	650,308
教育及教育行政		173,949	181,119	188,289	195,459	202,629	209,826	216,969	224,139	231,309
警察及消防		51,176	53,088	55,000	56,912	58,824	60,736	62,684	64,560	66,472

資料：韓国統計年鑑 過去5年間 統計推定

同期間中の 軍人年金 適用 対象者は 急激한 政治的 軍事的 狀況의 變動이 없는 限 現水準의 編制者 (T/O)¹⁾를 維持할 것이다.

<表 6 - 3 >

<表 6 - 3 > 職業軍人 (下士以上 准士 및 將校) (1973~81)

年度 区分	1973	1974	1975	1976
職業軍人	119,000	119,000	119,000	119,000

年度 職業軍人	1977	1978	1979	1980	1981
職業軍人	119,000	119,000	119,000	119,000	119,000

1973년부터 1981年間の 公務員 및 軍人の 合計는 <表 6 - 4 >와 같다.

<表 6 - 4 > 公務員 및 軍人 總合計 (1973~81)

年度 区分	1973	1974	1975	1976
公務員, 軍人	825,277	856,116	886,255	916,394

年度 区分	1977	1978	1979	1980	1981
公務員, 軍人	946,533	976,699	1,006,847	1,036,950	1,067,089

上記 人員을 基準으로 하고 韓国統計年鑑의 該当人口를 抽出하여 算定한 公務員 및 軍人の 人口增加 算出指數는 0.744²⁾이므로 有配偶者는 <表 6 - 5>와 같이 1973 年の 614,006 名으로 부터 1981 년에는 793,914 名으로 増加될 것이다.

<表 6 - 5> 有配偶者 推計 (1973 ~ 81)

年 度 区 分	1973	1974	1975	1976
公務員軍人 有配偶者	614,006	636,950	659,374	681,797

年 度 区 分	1977	1978	1979	1980	1981
公務員軍人 有配偶者	704,221	726,664	749,094	771,491	793,914

資料：韓国統計年鑑 適用人口(公務員, 軍人) 算出指數(0.744) 로 推計

年金保險 加入 年齡에 到達하거나 到達할수 있는 初給大學生 및 大學生의 同期間中 推計는 <表 6 - 6>과 같이 176,400 名에서 337,200 名으로 推計된다.

< 表 6 - 6 >

学生数 推計 (1973 ~ 81)

(单位 : 千名)

区 分 \ 年 度	1973	1974	1975	1976
計	176.4	197.4	226.7	251.4
大 学 校	137.7	151.0	168.7	184.0
初 級 大 学 校	38.7	46.4	58.0	67.4

区 分 \ 年 度	1977	1978	1979	1980	1981
計	274.7	296.0	316.8	334.7	337.2
大 学 校	201.0	214.2	228.7	239.5	242.4
初 級 大 学 校	73.7	81.8	88.1	95.2	94.8

資料 : 文教部 長期計劃 審議委員會刊, 長期綜合教育計劃案 (最小推定)

1971 年

年金保險에서 除外될 수 있는 同期間中の 公務員 職業軍人 이들의 配偶者 学生の 統計는 < 表 6 - 7 > 과 같다.

<表 6 - 7> 年金保險對象人口中 除外되는 人口推計(1973~81)

年 度 区 分	1973	1974	1975	1976
計	1,615,683	1,690,466	1,772,329	1,849,591
公 務 員	706,277	737,116	767,255	797,394
職 業 軍 人	119,000	119,000	119,000	119,000
公務員·軍人 配 偶 者	614,006	636,950	659,374	681,797
学 生 (初 級 및 大 学)	176,400	197,400	226,700	251,400

年 度 区 分	1977	1978	1979	1980	1981
計	1,925,454	1,999,563	2,072,741	2,143,141	2,198,203
公 務 員	827,533	857,699	887,847	917,950	948,089
職 業 軍 人	119,000	119,000	119,000	119,000	119,000
公務員·軍人 配 偶 者	704,221	726,664	749,094	771,491	793,914
学 生 (初 級 및 大 学)	274,700	296,000	316,800	334,700	337,200

우리나라 勤勞基準法上 適用할수 있는 勤勞者를 對象으로 한 10
人 以上 事業場 勤勞者는 <表 6 - 8> 과 같다.

〈表 6 - 8〉 10 人以上 事業場勤労者推計 (1973~81)

年度 規模別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0 人以上	1,696,308	1,910,916	2,125,524	2,340,132	2,554,740	2,769,348	2,983,956	3,198,564	3,413,172
16 "	1,596,085	1,716,597	1,966,110	2,164,622	2,363,135	2,561,647	2,760,159	2,958,672	3,157,184
30 "	1,440,165	1,622,368	1,804,570	1,986,772	2,168,974	2,351,176	2,533,379	2,715,531	2,897,783
50 "	1,295,979	1,459,940	1,623,900	1,787,861	1,951,821	2,115,782	2,279,742	2,443,703	2,607,663
100 "	1,060,193	1,194,323	1,328,453	1,462,583	1,596,713	1,730,843	1,864,973	1,999,103	2,133,233
200 "	839,672	945,903	1,052,134	1,158,365	1,264,596	1,376,827	1,477,058	1,583,289	1,689,320
500 "	515,678	580,918	646,159	711,400	776,641	841,882	907,123	972,363	1,037,604
1,000 "	291,765	328,678	365,590	402,503	439,415	476,328	513,240	550,153	587,066

資料：労働庁，事業体労働実態調査報告書，1971年

또한 10인 이상 사업장推計는 <表6-9>와 같다.

<表6-9>

10인 이상 事業

年 度 規模別	1973	1974	1975	1976
10人以上	34,064	39,547	44,967	50,387
16 "	21,198	24,610	27,983	31,356
30 "	13,571	15,756	17,915	20,074
50 "	8,669	10,065	11,444	12,823
100 "	4,020	4,667	5,306	5,946
200 "	1,972	2,287	2,603	2,917
500 "	582	676	768	861
1,000 "	187	217	247	277

資料：1971年度 労働庁刊 事業体 実態調査 基準 点数配分推計

場所 推計 (1973~81)

1977	1978	1979	1980	1981
55,087	61,227	66,647	72,067	77,487
34,729	38,102	41,474	44,847	48,220
22,234	24,393	26,552	28,711	30,871
14,203	15,582	16,962	18,341	19,720
6,585	7,225	7,864	8,504	9,143
3,231	3,545	3,858	4,172	4,486
954	1,047	1,139	1,232	1,325
306	336	366	396	426

우리나라의 年金保險制度는 社会集團間的 組織된 對象이 必要하며 年金保險의 安全性은 年金保險 對象者를 適用하는데 不可欠한 要素이다. 그러므로 1973年을 立法 制度化 하는 段階로 1974年을 最大의 保險組織을 保障할수 있는 安定된 企業인 1,000人 以上の 事業場에 適用하므로서 示範事業을 實施하고 1975年부터 1976年 (第3次 經濟開發計劃이 完了 年度)까지는 漸次的인 擴大로 100人 以上 事業場에 適用하며 第4次 經濟開發計劃 期間인 1980年부터 1981年까지는 100人에서 30人까지의 事業場으로 擴大해 나간다면 <表 6 - 10 >과 같이 實質 年金保險 對象者를 推計할수 있으며 1981년에는 10人 以上 事業場 總勤勞者의 約 85%를 포괄하게 된다.

〈表 6 - 10 〉

適用対象 勤労者 推計 (1973~81)

区分	年 度									
	1973 (1)	1974 (1)	1975 (2)	1976 (2)	1977 (3)	1978 (3)	1979 (3)	1980 (4)	1981 (4)	
総人口 (20~59 歳)	14,641,102	15,100,890	15,570,677	16,020,465	16,653,005	17,285,543	17,918,081	18,550,618	19,183,158	
除 外 人 口	1,615,683	1,690,466	1,772,329	1,849,591	1,925,454	1,999,363	2,072,741	2,143,141	2,198,203	
実質年金保険対象人口	13,025,419	13,410,424	13,796,348	14,170,874	14,727,551	15,286,180	15,845,340	16,407,477	16,984,955	
被 保 險 対 象	勤 勞 者 数	-	328,678	646,159	711,400	1,596,713	1,730,843	1,864,973	2,715,581	2,897,793
	事 業 場 数	-	217	768	861	6,585	7,225	7,864	28,711	30,871
	適 用 事 業 場	-	1,000 人 以 上 事 業 体	500 人 以 上	500 人 以 上	100 人 以 上	30 人 以 上			
総人口被保護率 (%)	-	2.45	4.68	5.02	10.84	11.32	11.76	16.55	17.06	
1981年10人以上事業体被保護率 (%) (5)	-	9.62	18.93	20.84	46.78	50.71	54.64	79.56	84.89	

- 註：(1) 1974年 示範事業年度 1,000人以上 事業場 適用
 (2) 1975-76年 3次 5個年 経済計劃間 500人以上適用
 (3) 1977-79年 4" " (1次) 100人 "
 (4) 1980-81年 4" " (2次) 30人 "
 (5) 1981年以後 政策目標 10人以上 事業場 適用時 比率

第2節 年金保險 基金 推計

1972年 10月 15日 經濟企劃院에서 發表한 1981年度의 推計 賃金 81,540 원을 基準으로 1972年의 韓國統計年鑑에 表示된 勤 勞者 平均 賃金과를 補查 推定 하면 <表6-11>과 같이 1973 년에는 26,751 원으로부터 1981년에는 81,540 원이 된다. 또한 各國의 年金保險 釀出方法의 共通的인 適用 方法과 우리나라 公務 員年金 및 軍人年金 制度와 同一한 適用方法으로 勞·使 兩者 釀 出에 政府 負擔 原則을 適用하고 釀出料率(保險料)을 最少限으로³⁾ 制限하여 3%에서 2%로 假定한다면 被保險者 및 使用主 釀出金 은 計劃 方案 初年度인 1,974년에는 70億원이 되고 1976년에 는 440億원이 造成되며 1981년에는 總 3,849億원이 釀出된다.

〈表 6 - 11 〉

年金保險基金推計 (1973 ~ 81)

区 分	年 度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被保險対象 勤勞者	-	328,678	646,159	711,400	1,596,713	1,730,843	1,864,973	2,715,581	2,877,783		
月平均賃金 (勤勞者) (1)	26,751	30,472	35,073	40,369	46,463	53,478	61,552	70,841	81,540		
年度別 (百万円) 計 (2)	-	7,014	16,316	20,675	35,610	44,430	55,098	92,340	113,420		
保 累 計 (百万円) (3)	-	7,014	23,330	44,006	79,616	124,046	179,144	271,484	384,904		
險 勤勞者寄与金 (") (4)	-	3,507	8,158	10,338	17,805	22,215	27,549	46,170	56,710		
料 事業主負担 (") (5)	-	3,507	8,158	10,338	17,805	22,215	27,549	46,170	56,710		
適 用 料 率 (") (6)	-	3 %	3 %	3 %	2 %	2 %	2 %	2 %	2 %		

註 (1) EPB 1972.10.15 発表 1981 年推計賃金 81,540 基準 韓國統計年鑑 平均賃金으로 推計

(2) 勤勞者 寄与金 累 事業主負担 当該年度 計 ((4) + (5))

(3) 前年度 基金 累計 + 当該年度計 ((3) + (2))

(4) 勤勞者 月平均 賃金 × 12 月 × 適用料率 (3 ~ 2 %)

(5) 事業主負担 × 12 月 × 適用料率 (3 ~ 2 %)

(6) 3 次計劃期間 3 % 4 次計劃期間 2 % 適用料率

또한 政府負擔은 <表 6 - 12>와 같이 被保險者 2,000人당 1人의 4) 事務要員과 管理組織을 最大限으로 活用할 것을 前提로 하고 各國 事務支援費 比率의 最少 數值인 2%~5%를 一般 經常費比率로 推計 하면 1974년에는 3億 54萬원 1976년에는 6億 24萬원이 되며 1981년까지의 總累計는 62億 2,200萬원으로 總 融出 推定 基金 3,911億 2,600萬원의 1.6%에 該當된다.

<表 6 - 12> 政府負擔金 推計 (1973 ~ 81)

区 分 \ 年 度	1973	1974	1975	1976
被保險對象 勤勞者	-	328,678	646,159	711,400
要 員 1)	-	154	323	355
政府負擔事務費推計 (百萬元) 2)	-	351 (5%)	553 (4%)	620 (3%)

区 分 \ 年 度	1977	1978	1979	1980	1981
被保險對象 勤勞者	1,596,713	1,730,843	1,864,973	2,715,581	2,897,783
要 員 1)	798	855	932	1,357	1,448
政府負擔事務費推計 (百萬元) 2)	712 (2%)	1,000 (2%)	1,102 (2%)	1,947 (2%)	2,269 (總 6,222) (2%)

註 1) 事務要員은 被保險者 2,000人당 1人으로

2) 事務費所要額은 最初 5%~最後 2%로 人件費 維持費 建物 雜費

(補助 및 不足分은 別度計定)

第3節 年金保險制度의 考慮要素

第1項 適用對象

全國民을 一時에 그對象으로 適用하기란 財政面에서나 行政技術面에서 極히 어려운 實情이다. 또한 社會保障의 窮極의 目的面에서 脆弱階層이나 低所得層을 適用하는것은 바람직한 問題이나 우리나라의 國家財政의 形便으로는 扶助的인 過大한 支出이나 補助가 어렵기 때문에 問題가 된다. 따라서 적은 國家財源으로 支援하여도 制度 樹立이 可能하고 安定性이 保障되는 社會組織群에 漸進的인 擴大가 要求된다. 5)

이미 우리나라의 年金保險 制度中 公務員 및 軍人은 適用을 받고 있다. 그러나 勤勞者 및 被傭者가 가장 많이 構成되 있는 勤勞 事業場에는 業務上의 災害時를 爲한 産災保險外에 老齡이나 退職 廢疾 遺族問題는 惠沢이 없다. 따라서 最初段階에서의 適用對象은 當然히 大企業體 勤勞集團으로부터 小規模 勤勞集團에게 適用하는 制度가 樹立되어야 하며 勤勞事業場에서 自營者集團으로 또는 農民의 順으로 適用擴大 되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이制度의 試圖로서는 1974年을 始發年度로 假定하여 1000人 以上の 事業場에 1976년에는 500人以上 事業場에 그리고 1981년에는 30人以上 事業場으로 擴大하여 計劃을 試圖하였다.

第2項 資格 條件

年金保險의 資格條件에는 通常3個의 要件이 要求된다. 그 첫째

는 年金 受給 年齡을 몇살 부터 認定하느냐 하는 問題인데 英國 西獨 美國 佛루갈 東獨等 西歐北쪽 國家들은 65 才를 規定하고 있고 日本 仏蘭西 니카라과 루마니아等 比較的 溫帶 및 亞細亞 國家들은 60 才를 規定한 反面 印度 . 콩고 . 마레이지아 . 말라 等 熱帶 및 後進國들은 55 才를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初創期의 年金保險 制度 樹立國에서는 반드시 높은 年齡限度를 規定할 理由는 없다. 即 國民들에 對한 迎合性과 且 將來에 受給해야 한다는 不安要素를 심어주기 보다는 보다 密接된 制度임을 認識 시킴으로서 年金保險의 必要性을 注入 하는것은 初期段階의 制度運營에 重要한 要素로 作用할 수가 있기때문에 60 才以下로 制定 되는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資格要件은 釀出期間의 制限要件인데 最少限 몇年을 釀出하면 受給資格을 받을수 있느냐 하는 問題인데 이것 亦是 各國마다 制度가 다르나 通常은 短期 5~10 年과 長期 15~20 年을 要件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被保險者에게 惠沢을 줄수 있는 短期 5 年과 長期 15 年에서 制定되어야 한다. 이것은 短期 支出外에 長期性 支出은 向後 20 年 以上이나 基金 備蓄期間이 있기때문에 基金運營에는 支障이 없다.

廢疾年金의 受給資格 條件은 永久的인 機能 喪失時를 原則으로 하고 80 % 以上の 機能 不能時는 減額年金資格을 두어야 하며 死亡者로 因한 遺族 資格은 年金受給者의 死亡時와 被保險者의 死亡時에 따라서 支給方法이 均衡있게 編成 되어야 한다.

第3項 給与内容

年金保險은 所得中斷時의 傷病 負傷 出產 및 一時的 廢疾과 永久的 喪失時의 老齡 完全廢疾 死亡의 危險을 保障해야 하기 때문에 長期的 給与内容으로는 老齡年金·廢疾年金·遺族年金(孤兒年金 및 手當·寡婦年金 및 手當)과 短期的 給与内容으로는 療養 休業 出產 手當 等이 考慮 되어야 하며 其外에 脫退者에 對한 還付金 및 年金無資格者에 對한 減額年金 및 退職一時金 制度가 制度化 되어야 하며 또한 備蓄되는 資金의 가장 威脅의 하나인 인플레이손에 對한 對策이 반드시 마련되어 被保險者가 安心하고 加入하여 保險金을 給与 받을수 있는 制度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第4項 行政組織과 要員訓練

年金保險의 한 試圖로서 最少基準值에 依한 推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것 처럼 強制社會保險은 尙大한 基金과 予算이 造成 運營되며 適用人員의 廣範圍한 分布 等은 行政組織의 複雜性을 더욱 加重化 시킬뿐만 아니라 많은 財政을 必要하게 된다. 그러므로 最初段階에서는 다음 2 가지 點이 考慮되어야 할것이다.

(1) 全國的인 地域 보다는 交通 通信 行政機關을 考慮한 實施容易한 地域別로 始作하여 漸次的인 擴張을 期할것

(2) 既存 施設이나 組織 또는 行政體系를 活用할것

또한 人的要因의 重要한것은 要員 訓練의 問題인데 아무리 좋은 制度와 法規가 마련되고 많은 財政과 施設이 確保 된다고 하더라도 運營 管理者의 未熟과 腐敗 및 無能으로 因하여 計劃을 그르

친다면 社會保障計劃은水泡로 돌아가고 말것이다. 그러므로 要員
訓練 및 專門家の 養成計劃은 時急히 마련되어야 할것이며. 그 方
法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들수 있다.

- (1) 海外에 先進 技術을 習得
- (2) 專門家 및 顧問을 招請 訓練
- (3) 国内 教育計劃으로 訓練

第四節 波及 效果

(1) 年金保險 基金造成 推計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最少限의 可用
性과 負擔能力 그리고 適用範圍를 考慮하여도 1974年부터 1981年
까지 造成된 基金은 總 3,911億원의 龐大한 保險貯蓄性資本이 造
成되므로서 印度와 英國을 비롯한 各國에서는 投資方法問題가 社會
經濟·政策의 重要한 課題의 하나로 되어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国内貯蓄이 必要한 現實情에서는 經濟政策的 考慮에서도 이
制度는 바람직하며

(2) 年金保險 制度는 社會保險의 5個計劃方案中 政府負擔을 가장
적게 하면서도 模索될수 있다는 利点이 있다. 예를들면 美國의
老齡 廢疾 遺族 年金制度는 전혀 政府負擔을 하지않고 있으며 醫
療保險은 長期的으로 많은 施設과 補助金이 所要되고 失業保險 및
兒童手当制度는 扶助的 性質을 많이 內包하고 있다고 할때 社會保
險 全般은 물론 社會保險 全般的 側面에서 보더라도 年金保險制度
는 基礎的인 制度로서 他計劃方案을 育成 支援할수 있는 기틀이

될수있다.

(3) 年金保險制度는 垂直的 내지는 水平的 所得 再分配 機能을 갖고있어 經濟計劃 主導的 遂行過程에서 生길수 있는 所得 格차를 縮少해 주며 社会福祉 均霑의 한 方案으로 提示 될수있다. 또한 不運으로 因하여 생기는 社会的 問題를 処方하고 国民의 보다 나은 生活의 터전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

參 考 文 獻

- 註 1) T/O :는 Table of Organization 으로 軍隊人員 編成表를
指稱하는 略語
- 註 2) 有配偶者 指數 0.744 는 韓國統計年鑑 (EPB) 1971 年의 人
口構成比에서 算出함.
- 註 3) 公務員 및 軍人年金 適用率은 5.5 %이며 產災保險은 0.8
~ 8.6 % 임.
- 註 4) ILO. 年金保險行政組織 事務要員 推計基準을 適用한것 임.
- 註 5) 保健社會部, 第 3 次 5 個年計劃, 1972 年

양로 연금 기초 자료 조사표 (사업장)

본조사는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게될 양로연금제도
 입안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오니 적극 협조바라오며
 기재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 건 사 회 부 { 6 2 4 5
 사 회 보 장 심 의 위 원 회 { 9 4 7 8

조사지역 _____ 조사일 1972년 _____ 월 _____ 일 조사원 _____ 성명 _____
 조사일 1972년 _____ 월 _____ 일 조사원 _____ 성명 _____
 응답자 (기록자) _____ (기록자) _____

[1] 기본표

1. 사업체 이름 _____ 소재지 _____ 본사 _____
 _____ 사업장 _____ 전 화 _____
 조 직 _____ ① 주식회사 설립 _____ 주요제품 ① _____
 ② 기타법인 3. 연도 _____ ② (상 품) ② _____
 ③ 개인 _____ 4. (출자액) _____ 5. 이름 _____

[2] 질문 사항

1. 종업원수 및 총급여액 (1972. 6. 30현재)

구분	총 계	직 계	종 별
① 계	_____	_____	_____
② 계	_____	_____	_____
③ 계	_____	_____	_____
④ 계	_____	_____	_____
⑤ 계	_____	_____	_____
⑥ 계	_____	_____	_____
⑦ 계	_____	_____	_____
⑧ 계	_____	_____	_____
⑨ 계	_____	_____	_____
⑩ 계	_____	_____	_____

※ 급여액은 1972. 6월분으로 기입

2. 급여제도 (해당란에○표하시오)
- ① 급여계산기준
 _____ 1. 시간급
 _____ 2. 능률급
 _____ 3. 생활급
 _____ 4. 능력 및 직무급
 _____ 5. 기타
3. 연령계층별 종업원수 (1972. 6. 30현재)

연령별 계	총 계	남	여
① 14세이하	_____	_____	_____
② 15~19	_____	_____	_____
③ 20~29	_____	_____	_____
④ 30~39	_____	_____	_____
⑤ 40~49	_____	_____	_____
⑥ 50~59	_____	_____	_____
⑦ 60세이상	_____	_____	_____

4. 근속연수별 종업원수 (1972. 6. 30현재)

근속연수별 계	총 계	관리 직	사무 직	기술 직	기타
① 1년미만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② 1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③ 2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④ 3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⑤ 4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⑥ 5~9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⑦ 10~14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⑧ 15~19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⑨ 20년이상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교육정도별 종업원수 (1972. 6. 30현재)

교육정도별	총 계	남	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6. 이취업 상황 (각연도12월말현재)

항목별	연도별	1969	1970	1971
① 재직자수	_____	_____	_____	_____
② 취업자수	_____	_____	_____	_____
③ 이직자수	_____	_____	_____	_____
④ 퇴직자수	_____	_____	_____	_____
⑤ 해고자수	_____	_____	_____	_____
⑥ 기타	_____	_____	_____	_____
⑦ 장해퇴직자수	_____	_____	_____	_____
⑧ 장해휴직자수	_____	_____	_____	_____

7. 퇴직금제도에 관한 사항
- ① 최초실시연도 1. 9 _____ 년 _____ 월 _____ 세
 규정된정년 2. _____ 남 _____ 세
 퇴직연령 3. _____ 여 _____ 세
 퇴직처립금액 4. _____ 원
- ④ 퇴직금여의 종류 및 금액 (실시초부터~72. 6. 30 현재)

급여의종류 계	진 수	금 액
① 정년퇴직	_____	_____
② 사망	_____	_____
③ 상병	_____	_____
④ 폐질	_____	_____
⑤ 기타	_____	_____

⑤ 근속연수별 퇴직상황 (실시초부터~72. 6. 30 현재)

근속연수별 계	총퇴직자 수	퇴직금 수급자 수	총수급액
① 1년미만	_____	_____	_____
② 1	_____	_____	_____
③ 2	_____	_____	_____
④ 3	_____	_____	_____
⑤ 4	_____	_____	_____
⑥ 5~9	_____	_____	_____
⑦ 10~14	_____	_____	_____
⑧ 15~19	_____	_____	_____
⑨ 20년이상	_____	_____	_____

8. 공제조합에 관한 사항 (있는 회사만 기입하시오)

① 최초실시연도 1. 9 _____ 년 _____ 월 _____

② 가입자격 (조건) 및 가입자수

1. 가입자격 (조건) _____ 명
 2. 가입자수 _____ 명

9. 재정각출방법

구분	분	울 (또는금액)
1. 사용자	_____	_____
2. 가업자	_____	_____
3. 기타	_____	_____
※ 참고사항	_____	_____

④ 적립금총액 _____ 원

- ⑤ 공제금여의 종류 및 금액 (실시초부터~72. 6. 30 현재)
- | 항목 | 진 수 | 금 액 |
|--------|-------|-------|
| ① 정년퇴직 | _____ | _____ |
| ② 사망 | _____ | _____ |
| ③ 상병 | _____ | _____ |
| ④ 폐질 | _____ | _____ |
| ⑤ 정 조 | _____ | _____ |

9. 연도별 납세실적 (각연도12월말현재)

연도별	1969	1970	1971
간접공제금	_____	_____	_____
① 근로공제금	_____	_____	_____
② 소액공제금	_____	_____	_____
③ 사업소득공제금	_____	_____	_____
④ 영업소득공제금	_____	_____	_____
⑤ 기타공제금	_____	_____	_____

10. 복지시설 상황 (해당란에○표하시오) (1972. 6. 30 현재)

항목	있	다	없	다	특기사항
① 합숙소 (기숙사)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② 사택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③ 통근버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④ 의료시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⑤ 운동시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⑥ 목욕탕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⑦ 오락시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⑧ 기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1. 경영자의 태도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동부담으로 근로자의 노령, 퇴직, 폐질 유족급여를 정부책임하에 실시하게되는 양로연금 제도에 대하여 경영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필요하다
 _____ ② 필요없다
 _____ ③ 기타 (이유를쓰시오)

양로 연금 기초 자료 조사표 (개인)

본조사는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될 양로연금 제도
입안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오니 적극협조 바랍니다. 기
재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 건 사 회 부 9 4 7 8
사 회 보 장 심 의 위 원 회 6 2 4 5

조 사 지 역	조 사 년 월 일 1972년 9월	일 조 사 원 성 명	①
[1] 기 본 표			
1. 사업체	① 이름 _____ ② 소재지 _____	2. 성 별	① 남 _____ ② 여 _____ 3. 년 령 _____ 만 () 세
4. 혼인관계	① 미혼 _____ ④ 사별 _____ ② 기혼 _____ ⑤ 기타 _____ ③ 이혼 _____	5. 교 육 정 도	① 대졸 _____ ④ 국 출 _____ ② 고졸 _____ ⑤ 미취학 _____ ③ 중졸 _____
[2] 질 문 사 항			
1. 귀하의 최초 취업년령은 몇살이십니까? 만 _____ 세			
2. 귀하의 직장생활은 총몇년 하셨습니까? 만 _____ 년			
3. 귀하의 현직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1) 현재의 직위는? _____ 원 (2) 현재의 임금은? _____ 원 (3) 취업최초의 임금은? _____ 원 (4) 이 직장에 오신지 몇년이나 되셨습니까? _____ 년			
4. 귀하는 현직장에 오기전에 다른 직장에 _____ (가) 있다 _____ (나) 없다 (1) 있으시다면? ① 몇년이나 근무하셨습니까? 만 _____ 년 ② 퇴직 최종월의 임금은? _____ 원 ③ 전직하시는 이유는? _____ 1. 임금이 적어서 _____ _____ 2. 작업량이 과중하고 위험해서 _____ _____ 3. 퇴직후 생활보장이 없어서 _____ _____ 4. 복지시설이 불충분해서 _____ _____ 5. 기타 _____ ④ 전직하실때 퇴직금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_____ 1. 받은일이없다 _____ _____ 2. 받았다(받은금액은 _____ 원)			
5. 귀하는 장해로 휴직한일이 있으십니까? _____ (가) 있다 _____ (나) 없다 (1) 있으시다면? ① 휴직회수는 몇회나 됩니까? _____ 회 ② 휴직 총일수는 얼마나 됩니까? _____ 일 ③ 총보상관계 (금전환산) _____ 원 는 얼마나 됩니까? _____ 원			
6. 귀하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1) 총 가구원수는 몇사람입니까? _____ 명 (2) 직장에나가고 있는 사람은 몇사람입니까? _____ 명			
7. 귀하의 기계수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1) 총가구 수입은? _____ 원 (2) 총가구 지출은? _____ 원 (3) 저 축 은? _____ 원 ① 저축은 주로 어떤방법을 이용하십니까? (해당란에 O표) _____ 1. 은행적금 _____ _____ 2. 각종보험 _____ _____ 3. 계 _____ _____ 4. 기타 _____			
8. 임금이나 월급을 못 받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_____ (가) 있다 _____ (나) 없다 (1) 있으시다면? _____ 1. 한 달 치 _____ _____ 2. 두 달 치 _____ _____ 3. 석 달 치 _____ _____ 4. 그 이 상 _____			
9. 귀하는 퇴직후의 부양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본 인 _____ _____ 2. 자 녀 _____ _____ 3. 정 부 _____ _____ 4. 기 타 _____			
10. 귀하는 퇴직후 생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_____ 1. 자녀에게 의지한다. _____ 2. 노동력이 있을때까지 노동한다. _____ 3. 저축, 퇴직금 및 기존재산에 의지한다. _____ 4. 양로원에 들어간다.			
11. 귀하는 재직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동부담으로 정부책임하에 노령, 퇴직, 폐질, 유족급여를 지급하게되는 양로 연금 제도가? _____ (가) 필요하다 _____ (나) 필요없다 (1) 필요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_____ ① 월급의 실질 수령액이 적어서 _____ _____ ② 연금 및 보험제도를 만들수 없어서 _____ _____ ③ 기타 (이유를 쓰시오) _____			
12. 귀하는 우리나라 현시점에 노동할수 있는 연령은 몇세까지로 보시는지 각 직종별로 빈칸에 적어 넣으십시오.			
직종별 성별	관 타 직	사 무 직	기 술 직
남	세	세	세
여	세	세	세

비

